


의정활동보고서



제211회 정례회(2006. 11. 13 ~ 12. 22)



경 상 북 도 의 회

개 원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대 의회를 개원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신년도를 설계하기 위하여 오늘
부터 40일간의 일정으로 제211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 의회에
보내주신 3백만 도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원 당시의 초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
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정과 교육
행정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 동안도 「한·미 FTA 협상」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북한 핵개발」등 나라 안팎으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만, 지난달 김천을 비롯한 15개 시·군에서 전국체전사상 처음으로 중소도시에서 개최한 「제87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음은 물론, 종합 2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온 도민이 힘을 합하여 노력한 결과이며, 또한 용도 경북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하는 쾌거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북도정도 금년 한 해 동안 큰 대과없이 한 해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도 새로운 도정과 교육행정을 설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사 등 매우 중요하고도 바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동안 의원님들이 수집·분석한 자료와 축적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의정활동 중에 지적된 사항과 도정 전반에 대한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하는 등, 도민을 대표하여 평가하고 검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회성 행사나 전례답습적인 경상경비는 가급적 자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균형 발전과 도민의 복리가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건실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지혜를 한데모아

도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얼마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알차고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
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2
1. 소 집	12
2. 회 기	12
3. 활 동	13
가. 본회의	13
나. 위원회	15
III. 의안 처리	24
1. 본회의	24
2. 위원회	25
IV. 민원 처리	27
1. 청 원	27
2. 진 정	27
가. 접 수	27
나. 처 리	28

V. 본회의 보고사항 29

 1.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29

 2. 조례 공포사항 30

 3. 위원회 활동사항 31

VI. 기타 의정활동사항 32

VII. 5분 자유발언 40

VIII. 도정질문 56

부 록

□	조례안	157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8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68
	3.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71
	4.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212
	5.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217
	6.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23
	7.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226
	8.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48
	9.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276
	10.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279
	11.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85
	12.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88
	13.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94
	1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2
	15.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37
	16.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41

□ 예산안	351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52
2.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59
3.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0
4.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61
□ 결의안	362
1.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363
2.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지 결의안	367
□ 승인·동의안	371
1.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372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76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80
4.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389
□ 기타안	392
1.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93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0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1회 정례회는 2006년 11월 13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12월 22일까지 40일간의 회기동안 5차의 본회의와 연73회의 상임 및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11월 13일(월)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1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07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산회했다.

11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권영만·장세현·박노욱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1월 28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질문(이상효·김영택·나규택 의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12월 15일 오전 11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개정 조례안 14건, 2007년도 예산안 2건,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의 건, 2006년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7년도 학교 노후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대구 유치」 지지 결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12월 22일(금)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처리 후 폐회했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정례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6-19호(2006년 11월 1일)

라. 집회일시 : 2006년 11월 13일(월)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6년 11월 13일 ~ 12월 22일 (40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5회 (누계 15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10회 까지	53	5	7	9	7	6	6	6	7
211회	73	3	11	11	11	10	9	10	8
누 계	126	8	18	20	18	16	15	16	15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11. 13(월) 11:00 (제1차)	1. 제211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 설명 3.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4.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5.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보 고 원안가결
2006. 11. 27(월) 11:00 (제2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① 권영만 (봉화, 행정보건복지) ② 장세현 (포항, 교육환경) ③ 박노옥 (봉화, 농수산)	
2006. 11. 28(화) 11:00 (제3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① 이상호 (경주, 통상문화) ② 김영택 (구미, 건설소방) ③ 나규택 (고령, 기획경제)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12. 15(금) 11:00 (제4차)	1.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3.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4.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원안가결
	5.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6.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수정가결
	7.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8.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9.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10.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1.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2.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3.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4.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가결
	15.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6.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18.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원안가결
	19.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지 결의안	원안가결
	20.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2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가결
	22.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가결
	23.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안설명
	24.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제안설명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6. 12. 22(금) 11:00 (제5차)	1.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2.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가결
	3.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수정가결
	4.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1. 23(목) 11:00	1. 의회사무처소관 행정사무감사	원안가결
2006. 12. 1(금) 11:00 (제1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의회사무처소관	수정가결
2006. 12. 18(월) 16:00 (제2차)	1. 제212회 임시회 회기협의를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의회사무처소관	원안가결 유 보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사 안 건 (내 용)	비 고
2006. 11. 13(월) 10:30 (제1차)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4(화) ~ 11. 22(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조정본부 (11. 14), 경북개발공사 (11. 15) ○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11. 16) ○ 공무원교육원 (11. 17) ○ 경제과학진흥본부 (11. 20 ~ 11. 21) 2. 현지방문활동 (11. 22) ○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천문과학문화센터, 예천재래시장	
2006. 11. 29(수) 11:00 (제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기획조정본부 2.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11. 30(목) 11:00 (제3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경제과학진흥본부 2.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질의답변 원안가결
2006.12. 1(금) 11:00 (제4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공보관실 ○ 새경북기획단 ○ 공무원교육원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6.12. 18(월) 11:00 (제5차)	1.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기획조정본부, 공보관실, 새경북기획단,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 2.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3.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의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4(화) ~11.22(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지원국 (11. 14) ○ 보건복지여성국, 감사관실 (11. 15) ○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11. 16) ○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11. 17) ○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11. 20) ○ 자연환경연수원 (11. 21) ○ 도립경도대학 (11. 22)	
2006. 11. 29(수) 11:00 (제1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경도대학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자연환경연수원 포함)	수정가결 수정가결
2006. 11. 30(목) 11:00 (제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감사관실 소관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6. 12. 1(금) 11:00 (제3차)	1.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6. 12. 18(월) 11:00 (제4차)	1.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경도대학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자연환경연수원 포함) ○ 감사관실 소관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교육환경위원회>

개요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4(화) ~11. 23 (목)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11. 14) ○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소득개발원, 팔공산도립 공원관리사무소, 보건환경연구원 (11. 15) 현지확인 : 구미 구평남부·상모초등학교 (11. 15) ○ 교육청 본청 및 직속기관 (11. 17, 11. 23) ○ 포항·영덕·울진·울릉교육청 (11. 20) ○ 영주·청송·영양·봉화교육청 (11. 21) ○ 군위·고령·성주·칠곡교육청 (11. 22)	
2006. 11. 29(수) 11:00 (제1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소관 ○ 2007 경상북도 포플라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2.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6. 11. 30(금) 11:00 (제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개요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2. 4(월) 11:00 (제3차)	1.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2. 2007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청)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6. 12. 18(월) 11:00 (제4차)	1. 2006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환경해양산림국 및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 2. 2006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교육청) 3.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농수산위원회>

개요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4(화) ~11. 22(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소관 업무보고 (11. 14) ○ 농산물원종장, 성주과채류시험장 (11. 15) ○ 가족위생시험소 서부지소, 성주감시험장 (11. 16) ○ 축산기술연구소 (11. 17) ○ 수산자원개발연구소 (11. 20) ○ 농수산국 (11. 21) ○ 농업기술원 (11. 22)	
2006. 11. 29(수) 11: 00 (제1차) ~ 11. 30(목) 11:00 (제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수산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2006. 12. 1(금) 11:00 (제3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농수산국 소관 ○ 농업기술원 소관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6. 12. 18(월) 11:00 (제4차)	1.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원안가결

〈통상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3(월) 10:00 (제1차)	1. 「세계역사문화도시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2006. 11. 14(화) ~11. 17 (금)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투자통상본부, 경북통상(주) (11. 14) ○ 문화체육관광국 (11. 15) ○ 경북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1. 16) ○ 한국국학진흥원 (11. 17)	
2006. 11. 29(수) 11:00 (제2차)	1.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2.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투자통상본부	부결 질의답변
2006. 11. 30(목) 11:00 (제3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문화체육관광국	질의답변
2006. 12. 1(금) 11:00 (제4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투자통상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수정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2006. 12. 18(월) 11:00 (제5차)	1.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투자통상본부 ○ 문화체육관광국	수정가결 원안가결

〈건설소방위원회〉

개요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1. 14(화) ~11. 22 (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안동소방서, 현지확인 : 청로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 14)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현지확인 : 효령~신녕간 도로 재포장공사 (11. 15) ○포항북부소방서, 현지확인 : 안강~청령, 청령~현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11. 16) ○경산소방서, 현지확인 : 청도~경산간 도로 확포장공사 (11. 17) ○칠곡소방서 (11. 20) ○소방본부 소관 (11. 21)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11. 22)	
2006. 12. 1(금) 11:00 (제1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원안가결
2006. 12. 4(월) 11:00 (제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소방본부소관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6. 12. 18(월) 11:00 (제3차)	1.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2.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원안가결 유 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요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2. 6(수) 10:30 (제8차)	1. 200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청) ○ 총괄제안 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06. 12. 7(목) 10:30 (제9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총괄제안 설명, 전문위원검토보고, 질의답변 ○ 기획조정본부 소관 ○ 공보관실 소관 ○ 새경북기획단 소관 ○ 경제과학진흥본부 소관 ○ 공무원교육원 소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06. 12. 8(금) 10:30 (제10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감사관실 소관 ○ 경도대학 소관 ○ 의회사무처 소관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 행정지원국 소관 ○ 소방본부 소관	질의답변
2006. 12. 11(월) 10:30 (제11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본청) ○ 투자통상본부 소관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 농수산국 소관	질의답변
2006. 12. 12(화) 10:30 (제12차)	1.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도본청) ○ 농업기술원 소관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질의답변

개일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6. 12. 13(수) 11:00	1. 계수조정 소위원회 활동	
2006. 12. 14(목) 11:00 (제13차)	1. 2007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토론 및 의결 2.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토론 및 의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2006. 12. 20(수) 10:30 (제14차)	1.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제안 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기획조정본부, 경제과학진흥본부, 공무원교육원 -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경도대학 -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 농수산국, 농업기술원 - 투자통상본부, 문화체육관광국 -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 의회사무처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06. 12. 21(목) 10:30 (제15차)	1.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총괄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교육청) (토론 및 의결) 1. 2006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0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가결 수정가결

Ⅲ. 의안 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28 (57)	28 (57)	18 (42)	10 (15)				
조 례 안	소 계	16 (34)	16 (34)	10 (25)	6 (9)			
	의 회 제 안	2 (6)	2 (6)	1 (5)	1 (1)			
	도지사 제 출	7 (17)	7 (17)	5 (13)	2 (4)			
	교육감 제 출	7 (11)	7 (11)	4 (7)	3 (4)			
예산·결산	4 (8)	4 (8)	(2)	4 (6)				
동의·승인	4 (6)	4 (6)	4 (6)					
건 의 안	(2)	(2)	(2)					
결 의 안	2 (4)	2 (4)	2 (4)					
기 타 안	2 (3)	2 (3)	2 (3)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철회	계류
		가 결							부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33 (62)	28 (57)	16 (34)	4 (8)	4 (6)	(2)	2 (4)	2 (3)	2 (2)		3 (3)
의 회 운 영	(7)	(7)	(3)		(1)		(2)	(1)			
기 획 경 제	8 (11)	6 (9)	5 (8)		1 (1)						2 (2)
행 정 보 건 복 지	5 (9)	5 (9)	3 (7)		2 (2)						
교 육 환 경	10 (16)	9 (15)	8 (13)		1 (2)				1 (1)		
농수산	(2)	(2)	(1)			(1)					
통 상 문 화	3 (4)	2 (3)				(1)	2 (2)		1 (1)		
건 설 소 방	1 (3)	(2)	(2)								1 (1)
특 별	4 (8)	4 (8)		4 (8)							
본회의	2 (2)	2 (2)						2 (2)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건 >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06. 12. 18 교육감제출, 부결)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 11. 29 도지사제출, 부결)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3건 >

- ①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도지사)
- ② 경상북도청 이전을 위한 조례안 (김기홍의원 외 32)
- ③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도지사)

IV. 민원 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1 (10)		(1)	(1)	(2)	(1)		1 (3)	(2)	
의 회 운 영										
기 획 경제학										
행 정 보건복지	(1)		(1)							
교 육 환 경	1 (3)					(1)		1 (2)		
농수산	(2)								(2)	
통 상 문 화	(2)			(1)				(1)		
건 설 소 방	(2)				(2)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 (10)	1 (10)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 정 보건복지	(1)	(1)				
교육환경	1 (3)	1 (3)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2)				
건설소방	(2)	(2)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및 회부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2)	경상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3)	2007년도 노후 PC 교체 지방채 발행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교육감 (2006. 11. 3)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교육환경 (2006. 11. 6)
경상북도지사 (2006. 11. 6)	경상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06. 11. 7)
경상북도지사 (2006. 11. 6)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06. 11. 7)
경상북도지사 (2006. 11. 6)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기획경제 (2006. 11. 7)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06. 11. 6)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기획경제 (2006. 11. 7)
전찬걸의원외 16인 (2006. 11. 8)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 (2006. 11. 9)
경상북도지사 (2006. 11. 8)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06. 11. 9)
경상북도지사 (2006. 11. 8)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통상문화 (2006. 11. 9)
경상북도지사 (2006. 11. 10)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각 상임위 (2006. 11. 10)
경상북도지사 (2006. 11. 10)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본 회의 (2006. 11. 13)

2. 조례 공포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06. 10. 12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독도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2006. 11. 2 (제2941호)
2006. 10. 23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6. 11. 6 (제2942호)
2006. 10. 23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2006. 11. 9 (제2943호)
2006. 10. 23	"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2006. 11. 9 (제2944호)
2006. 10. 23	"	경상북도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2006. 11. 9 (제2945호)
2006. 10. 23	"	경상북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2006. 11. 9 (제2946호)
2006. 10. 23	"	경상북도 119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조례	2006. 11. 9 (제2947호)

3. 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기획경제 위 원 회	2006. 11. 8 16:00	기획경제 위 원 실	· 의사일정 협의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검토 등
행정보건복지 위 원 회	2006. 11. 8 14:00	도청 강당	·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통상문화 위 원 회	2006. 10. 30 10:00	통상문화 위 원 실	·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관련 광주시의회 의 반대결의안 채택에 따른 성명 서 발표 및 향후대책 논의
통상문화 위 원 회	2006. 10. 31	광주시의회	· 세계역사문화도시 반대결의안 채택에 관한 유감표명 및 해명 요구를 위한 항의방문

VI. 기타 의정활동사항

○ 전국체전 도 선수단 결단식

- 일 시 : 2006. 10. 12(목) 15:00
- 장 소 : 김천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6 경북종합예술제

- 일 시 : 2006. 10. 12(목) 17: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전국체전 성화 합화행사

- 일 시 : 2006. 10. 13(금) 10:00
- 장 소 : 도청 전정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006 한우경진대회

- 일 시 : 2006. 10. 13(금) 16:00

- 장 소 : 구미 시민운동장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제5회 경북일보사장기 직장인 축구대회

- 일 시 : 2006. 10. 14(토) 13:00
- 장 소 : 포항스틸러스 송라구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한국체육박물관 개막행사

- 일 시 : 2006. 10. 17(화) 14:3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혁신도시 기본구상보고회

- 일 시 : 2006. 10. 17(화) 16:00
- 장 소 : 김천시청 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87회 전국체전 개회식

- 일 시 : 2006. 10. 17(화) 18:00

- 장 소 : 김천 종합운동장
- 참 석 : 도의원

○ 제4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 일 시 : 2006. 10. 19(목) 14:00
- 장 소 : 광주시의회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 일 시 : 2006. 10. 20(금) 14:3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응규 의회운영위원장,
박순범 의회운영위 간사, 이종원 의원

○ 2006 자연사랑 늘푸른 한마당 행사

- 일 시 : 2006. 10. 22(일) 10:30
- 장 소 : 구미 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 도민의 날 행사 및 전국체전 폐회식

- 일 시 : 2006. 10. 23(월) 15:30, 18:00
- 장 소 : 김천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 참 석 : 도의원

○ 의원 해외연수

- 일 시 : 2006. 10. 24 ~ 11. 6
- 장 소 : 미국, 캐나다
- 참 석 : 이상천 의장의외 14명

○ 제6회 경상북도 환경노래부르기 경연대회

- 일 시 : 2006. 10. 24(화) 14:00
- 장 소 : 예천 군민회관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김영기 의원

○ 2006 소방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 일 시 : 2006. 10. 25(수) 09:30
- 장 소 : 경산 시민운동장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

- 일 시 : 2006. 10. 25(수) 11:00
- 장 소 : 안동생명과학고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 제2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6. 10. 26(목)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경북능금 홍보행사

- 일 시 : 2006. 10. 26(목) 16:00
- 장 소 : 서울 명동
- 참 석 : 이종원 농수산위 간사, 남종식·박노욱 의원

○ 북핵실험 규탄 및 전적지순례 행진대회

- 일 시 : 2006. 10. 27(금) 11:00
- 장 소 : 다부동전적기념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2006 경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일 시 : 2006. 11. 1(수)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제45회 경상북도 4-H경진대회 시상식

- 일 시 : 2006. 11. 2(목) 10:00
- 장 소 : 농업인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남종식·박노욱 의원

○ 제8회 경북학생축제

- 일 시 : 2006. 11. 3(금) 13:30
- 장 소 : 영주 국민체육센터
- 참 석 : 장대진 교육환경위원장, 김영기·송필각·전찬걸 의원

○ 경상북도 재난안전 네트워크 창립대회

- 일 시 : 2006. 11. 3(금) 15:00
- 장 소 : 구미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새마을 한마음 합창경연대회

- 일 시 : 2006. 11. 7(화) 13:00
- 장 소 : 포항 문화예술회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개관행사

- 일 시 : 2006. 11. 8(수) 14:00
- 장 소 : 울진 민물고기연구센터
- 참 석 : 방유봉 농수산위원장, 이종원 농수산위 간사, 박병훈 · 조동만 의원

○ 중국 하남성 인민대표회의 상무부주임 일행 내방

- 일 시 : 2006. 11. 8(수) 16: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 경북장학회 이사회

- 일 시 : 2006. 11. 9(목) 11:00
- 장 소 :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11회 농업인의 날 행사

- 일 시 : 2006. 11. 9(목) 14:00
- 장 소 :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방유봉 농수산위원장의 농수산위원 5명

○ 의정연구회 세미나

- 일 시 : 2006. 11. 9 ~ 11. 10
- 장 소 : 영주 옥녀봉휴양림
- 참 석 : 이상천 의장, 방대선 부의장, 손진영 회장의 의정연구
회원 20명

○ 2006 경상북도 여성대회

- 일 시 : 2006. 11. 10(금) 10:30
- 장 소 : 예천 문화회관
- 참 석 : 방대선 부의장

VII. 5분 자유발언

□ 2006년 11월 13일(월) 제211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 김숙향 의원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도의원 김숙향입니다.

지난번 정례회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의원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10일 금요일 구미 코오롱 회사 앞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백주대낮에 천인공로 할 공권력에 의한 테러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630일째 농성 중이던 해고자들을 해산하고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 남유진 구미시장은 수백명의 공무원과 경찰을 동원해서 노동자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농성장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크레인과 지게차 전기톱까지 동원해서 찍어 내렸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에 입각하여 본의원은 그 날의 만행을 온 천하에 폭로하고 더 이상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셨습니다.

2004년 8월 전직 구미시장이셨던 김관용 지사님께서 직접 참여하신 가운데 회사와 노동조합은 앞으로 인적구조조정은 없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4개월 만에 약속을 파기했고 1,000명의 노동자들을 강제 퇴직시켰습니다.

2005년 2월 노동조합은 정리해고만은 안 된다는 심정에서 1인당 800만원을 자진 삭감했고, 회사는 정리해고를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조차도 17일 만에 깨어졌고 78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켰습니다.

오직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는 절절한 심정으로 정리해고 반대를 외치면서 15만 볼트의 고압송전탑에서 32일을 매달려 지냈고 수십 미터의 청와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노무현 대통령께 호소도 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11월 10일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느냐고 항의하는 노동자들에게 남유진 구미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더 양산하고 노동자의 눈물과 피를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핵심적 내용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포크레인과 전기톱으로 위협하면서 농성장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본의원은 기꺼이 노동자들과 함께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노동자의 일방적 고통과 눈물만을 강요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기업은 물론 노동자와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발전하고 그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은 지역사회의 모든 갈등과 문제를 대화와 타협과 조정과 중재로 원만히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의 미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무원은 주민들의 공복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나 서비스를 위해 복무해야 할 수백 명의 공무원들이 자리를 비운 채 노동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동원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차라리 할 말이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망치고 있는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남유진 구미시장입니다. 정리해고 된지 633일이 된 코오롱의 해고자들은 차라리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장애아를 포함한 다섯 아이의 아버지로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된 가장도 있고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착실하게 직장에 다니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던 이들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눈물과 아픔이 있는 곳에 행정이 있고 의회가 있어야 한다는 절대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는 경상북도와 도의회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조정과 중재 협력과 상생의 대원칙 하에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모든 갈등과 아픔들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선 이번 정례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함께 더 이상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오신 인생의 선배들이신 동료 의원들에게 의회의 막내로서 감히 호소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양심과 상식에 입각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고통과 억울한 사정에 대해 귀와 눈을 닫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막 지방정치에 발을 디딘 38살짜리 여성의원이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동당 의원이기 이전에 함께 손 맞잡고 걸어갈 동료 도의원이 드리는 눈물 어린 절규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6년 12월 22일(금) 제211회(정례회) 제5차 본회의

◎ 박순열 의원 (교육환경위원회) ◎

청도군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간사 박순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7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철주야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전인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제211회 최종 정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청도군 새마을지회 이준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방청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70년대 초, 민족의 찌든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고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신념에서 시작되어 조국 근대화의 원동력이 된 국민정신운동이요, 근면·자조·협동의 생활실천운동으로서의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실증적 고찰입니다. 이미 지난 11월 27일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새마을운동 발상지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피력하는 바는 새마을운동 발상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두면서 ‘왜 경북 청도군 신도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가’에 대해 규명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주장에 대해 본의원의 반론입니다.

포항시의 문성리는 새마을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던 당시, 새마을운동을 태동시킨 모범마을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국무위원을 대동하시고 문성리를 방문하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체의 지나친 비약으로 사실적 오류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차 본회의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높이 평가합니다. 속기록을 보면 지사께서는 “문성리도 초창기에 새마을운동의 모범마을이었음은 많은 자료가 말해주고 있어 발상지에 버금가는 기념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난 '71년 새마을운동이 본격화되기 이전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도 문성리를 보고 “모든 농촌이 이 마을처럼 했으면 좋겠다”라고 칭찬했듯이 구미시의 사곡동에 새마을역사관을 설립한 것처럼 포항시 문성리를 새마을운동의 홍보마을로 지정하여 육성할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음은 청도군 신도리가 ‘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인가’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9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경남지역 수해복구현장

방문차 부산방면으로 내려가시다가 청도군 신도리를 목격하시고 전용열차를 정차시켜서 마을 현황을 확인하시고, '70년 4월 22일 전국 지방장관회의 시 새마을운동으로 점화시킨 잘살기운동 방향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으로 청도군 신도리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인 '70년 7월 24일 대통령비서실은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지붕개량 200동, 농로개설 등 총 2,350만원의 소요예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북 청도읍 경부연선 단위지역 개발계획을 보고하고 신도리에 전적으로 지원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새마을사업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운동 초창기인 '70년 9월 28일부터 '72년 4월 2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전국 각지의 지도자급 4,000여 명의 인사가 신도리를 방문, 견학하였습니다. 이중 '70년 10월 17일 영일군 지도자 150명, '71년 2월 28일 영일군 농협관계자 58명, '71년 3월 1일 영일군청 공무원 40명 등 포항지역 관련인사 다수가 무려 세 차례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신도리를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근 동향의 문성리를 두고 왜 신도리를 방문하였겠습니까? 본 의원은 청도군의 신도리가 새마을운동의 효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역사적 문헌에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70년 9월 문화공보부와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발간한 국토보존이라는 책자를 보면 전국에서 가장 잘 가꾸어진 9개 마을 중 청도 신도리가 선정되어 소개되어 있는 반면 문성리는 선정되지 못하였

습니다. 이는 각 시·도별로 선정기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상북도에서는 문성리보다는 신도리가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도군 신도리는 이미 '57년 농로개설 '59년 가정가꾸기, '61년 부업장려알선, 공동구판장 등, '64년 부락면도바꾸기, '67년 통장갓기운동, 경부선 신도 간이역설치, 담장개수, 지붕개량 등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이전부터 새마을운동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7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신도리아말로 명실상부한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임에 분명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청도 신도리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부지기수가 있으나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가 새마을 종주도로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을 제시하고 이를 세계화시킬 것을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05년도부터 국비 10억원 등 총 41억원을 투자하여 새마을기념관 등 새마을발상지 가꾸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시점부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매듭짓고 보다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새마을운동을 승화시켜 나갈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상용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영양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상용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21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자치 4기를 맞아 일자리가 있는 경북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의 교육지표 구현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이며, 향후 신경북 건설을 위해 추진될 7대 전략 과제 중 최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대안입니다.

집행부는 글로벌 인재양성, 공교육 보완, 사교육비 절감 등을 통해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사업비 300억원을 들여 부지 3만 평, 건물 3,000평 규모의 영어마을 1개소를 설립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2007년도 예산에 100억원을 편성하여 우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전액 삭감되고 대신 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해 놓았으며, 또한 도교육청의 경우도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영어체험학습원 조성비 5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어마을 조성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집행부는 본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31지방선거 시 자치단체장에 출마한 후보들이 유권들의 표를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일단 만들고 보자는 막무가내식 공약으로 인해 경상북도를 포함하여 전국에서 50여 개의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경북도의 영어마을 조성은 사업의 타당성, 구체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운영 선례를 볼 때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본 의원이 소속된 기획경제위원회가 지난 11월 23일과 24일 이틀 동안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으로서 경기도 안산, 파주의 2개 영어마을의 경우 올해 입교생의 연 3만 9,700명으로 운영비만 해도 270억원이 들어갔으나 수익은 고작 64억원에 그쳐 약 206억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더구나 전체 운영비 즉, 원어민강사, 자체 관리직원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등을 합하면 매년 680억원을 예산에서 지원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이용도 전체 대상학생 중 불과 3.6%에 해당하여 이용률도 대단히 저조하였습니다. 더욱이 지난 2004년 수용인원 200명에 84억원의 예산으로 개원한 안산 영어마을과 수용인원 500명에 무려 841억원을 투입하여 올 4월에 문을 연 파주 영어마을은 투자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교육기회

균등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우리 도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경기도도 만성적 적자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원본부와 안산, 과주 사무처의 통합 등 조직을 개편하고 입교생의 교육비를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도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부지 3,000평에 수용인원 약 200명 규모의 영어체험마을 건립을 계획한 대전광역시도 영어마을 조성사업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별반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명백히 예견되는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막연히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처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이 단일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북도교육청 역시 교육감의 선거공약사항으로 100억원의 예산으로 대지 3,000평, 건물 약 1,600여 평, 10학급 100명 수용인원의 규모로 2009년도에 개원 예정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원을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영어마을이나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영어체험학습원은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집행부와 교육청이 경쟁의식을 버리고 거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이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교육청은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의 단일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둘째, 운영비를 공동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운영 중인 타 시·도의 영어마을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대구시는 영진전문대를 사업자로 선정하고 350억원의 예산으로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일대 약 3만 7,000평 부지에 영어마을을 건립하여 내년 7월에 개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및 영진전문대 관계자와 공동 활용에 합의만 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본 의원의 제안을 수용하여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또 다른 방안 중의 하나로 구미시가 시행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강사 협동수업 제도의 도입입니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교육 시장의 우수한 원어민 강사를 공교육 현장에 활용하는 제도를 확대해서 도입한다면 비용절감은 물론 학부모의 높은 교육열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은 새경북 7대 주요전략과제의 하나인 영어마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여 보았습니다.

금번 제211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여 이제는 진부할 정도입니다만 본 의원이 또 다시 거론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수백억 원의 막대한 예

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에서는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수립한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또한 도민의 혈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겠다는 각오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시하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경 출신 이시하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 지방선거, 노사분규, 농산물개방반대 등 갈등과 혼란 속에 도민의 생활이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연말연시 어려운 삶의 고통을 우리 의원님들은 알아야 합니다. 노숙자가 늘어나고 점심을 굶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의원님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5·31 선거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대선을 비롯하여 각종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특종으로 TV,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거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큰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은 정말 어느 때보다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망년회도 그렇습니다. 또 신년회도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은 모든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흐트러져서는 아니 됩니다. 경상북도의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쓴 소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윤리가 흐트러지면 세상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공동생활의 근본이 바로 윤리, 도덕입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것이 어디에 있다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되고 퇴폐향락, 청소년 탈선, 사행성 오락, 이혼율이 세계에 2위, 낙태, 자살, 청소년 흡연, 술 소비가 세계에서 1위라는 가장 높은 오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는 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안과 갈등과 혼란 속에서 목표가 흐려있는 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어느 때보다 청렴하고 근면 성실한 자세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떤 사건으로 징계를 하기 이전에 기강과 윤리 도덕적 경각심을 가지게 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윤리위원회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연시는 물론 항상 몸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투철한 국가관과 공인정신으로 일거수일투족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고루 청취하셔서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을 잘 준수하여 의원님의 품위, 의회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년 12월 22일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이 시 하

VIII. 도정질문

□ 2006년 11월 27(월) 제211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권영만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봉화군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무소속 권영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지난 7월 초, 역사적 민선의정 제5기 출범과 함께 300만 도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미래 인재양성에 열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불황, 가계소득의 양극화, 청년실업률,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 작금 우리 사회현실의 총체적 위기를 직시할 때 본 의원은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한 개인적 소회는 영광보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제211회 정례회는 민선의정 제5기와 민선자치 제4기의 첫 해를 매듭짓는 중요한 회기이며, 이번 도정질문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미리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인사·행정분야의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근무, 승진, 복지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증진을 위해 총무·인사·후생·복지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기진작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 공무원의 승진소요연수는 9급에서 8급이 2.2년, 8급에서 7급이 5년, 7급에서 6급이 8.5년, 6급에서 5급이 9.1년으로 전국광역자치단체 평균 소요연수와 비교하면 9급에서 8급이 0.3년, 8급에서 7급이 0.2년, 7급에서 6급이 0.3년, 6급에서 5급이 1.4년이 각각 빠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 2일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평균승진 소요연수 분석에 의하면 우리 도의 경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데 전국 평균보다 1년 9개월이 더 소요되는 12년 3개월, 6급에서 5급이 12년 5개월이 소요되고 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와 행정자치부의 분석 자료를 비교하면 승진소요 연수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최근 집행부가 실시한 도내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에 대해 필요하다가 63%로

필요하지 않다 20.5%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공기업 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공기업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1997년 7월 1일자로 경북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방산업단지, 임대주택건설 등 도내 각종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광지, 체육시설 조성 및 임대관리 사업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오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5일자로 경북도가 100% 출자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 사장에 경영마인드를 가진 대표자가 임명되어야 함에도 5·31지방선거에서 경북지사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Y모씨가 임명되자 세간에서는 전형적인 낙하산식 코드 인사로 보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북개발공사 내부 경영진 역시, 상임이사를 포함해 팀장급 10명 중 7명이 전직 경북도 공무원 출신이며, 그 외 2명은 전직 공무원과 공기업 출신이고 나머지 1명만이 사기업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자들의 인적구성은 공기업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그 폐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최대의 이익창출을 위해서 사장선임을 기존의 밀실인사,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 등 파행인사를 전격적

으로 시정하고, 경영조직의 전문성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기준으로 사장선임을 하는 획기적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답변자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경북개발공사를 비롯한 도산하 지방공기업 인사에 대한 제도개선 대안 책으로 공정성과 적법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로 지방공기업 대표 선임 의회에 가칭 지방공기업대표후보자 인사청문회도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수용할 의향은 있으신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오는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로 그리고 2026년에는 23.1%로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06년 6월 현재 노인인구가 도 전체인구 269만 1,640명 중 13.7%인 36만 7,721명으로 전체인구 약 4,850만명 9.5%인 전국 평균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의성, 군위, 예천, 영양은 노인인구가 30%가 넘고 있고, 청도, 봉화, 영덕, 청송, 성주, 고령, 울진 및 상주시, 문경시 등이 20%가 넘어 도내 무려 13개 시·군이 초고령사회화 되어 있어 노인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 복지시설 확충, 노인 취업대책 등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시급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도 노인복지예산 현황을 보면 2004년도는 전체 예산 2조 4,291억원의 3.8%인 924억 7,000만원, 2005년도는 전체예산 2조 7,938억 9,800만원의 2.4%인 673억 4,800만원,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3조 635억 6,300만원의 2.4%인 756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체예산의 약 2~3%의 예산으로는 선진 노인복지 수준을 실현하기에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수준 높은 노인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해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폭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우리 도 노인복지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경로 연금지급, 노인인력지원기관 운영,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노인일자리 창출 및 박람회 개최, 경로당 운영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고령사회에 대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사안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시방편적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인 노인일자리 창출방안과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선, 공적 노인요양 체계구축,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방안의 구체적 추진계획과 그 실적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사업은 경북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과 충북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강원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의 3개 도, 11개 시·군, 8,641km²의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향후 20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의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사업계획은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의 4개 시·군, 2,480km²의 면적에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의 기간에 총 예산 2조 6,900억원을 투입하여 관광개발 12개 사업, 사회문화 4개 사업, 사회간접자본 10개 사업 등 계 2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계획은 장기간의 사업계획으로 사업장, 사업규모, 민자유치 등 최초 계획에 많은 변화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사업근거 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에 따른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과다하여 사업진척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비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사업은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도 차원의 규제완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봉화군의 2006년도 당초 예산규모는 1,520억원으로 이 같이 열악한 재정력으로는 청량산 웰빙타운 조성, 희귀식물 학습원 조성, 버섯박물관 건립, 국가지원 지방도 88호선 확·포장, 지방도

915호선 확·포장, 속리~월악~소백관광 순환도로 건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극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사업 등 국·도비 관련 사업은 시·군에서 추진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위계획에 반영하여 국가지행 사업, 도시행 사업, 시·군시행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를 도차원에서 검토하여 건의·협조 하에 시행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사업은 3도 공동사업 5개 사업 예산 9,720억원 우리 도 사업 26개 사업 2조 6,901억원 등 총 31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내역과 사업예산 확보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7일, 강원도 영월군청 대회의실에서 경북, 충북, 강원의 3도 도지사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중부내륙권의 균형발전을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결과는 무엇인지 중부내륙 광역개발권 개발과 연계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화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개읍 9개면, 인구 3만 5,000명, 면적 약 1,200km²로 아직까지 지방자치 실시의 목적인 지역 간 균형발전과는 동 떨어져 경북 북부 지역의 대표적 낙후지역으로 남아 있는 봉화군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봉화~법전간 4차선 확·포장공사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97년 착공 이래 10년째인 현재 전체 대비 85%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는 봉화~법전간 국도 36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는 2005년 12월에 1단계 3.4km가 개통되었으나 2단계 이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은 물론 생산물류의 유통에 차질을 가져와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도에 102억원, 2008년도에 147억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선투입된 공사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배정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국비확보와 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화~법전 4차선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개통하기 위한 국비확보 및 도비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모두에서 본 의원이 밝혔듯이 연 2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미래 우리 사회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를 양성할 책임이 있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의 직원들이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정책결정 심의·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집단행동을 보인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편 지난 11월 8일,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개최한 제2회 지방교육혁신경진대회 시·도교육청 부문에서 학교급식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축하하면서 교육

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내 학교보건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도내 보건교사 배치율은 중학교 32%, 고등학교 53% 등 평균 60%대로 10개 학교 중 네 곳은 보건교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5년간 경상북도교육청은 단 한 명의 신규 보건교사도 임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주, 영덕, 예천, 울릉, 의성, 청도지역의 중학교는 보건교사가 아예 없고 울릉의 경우 초등학교 5개교 중 단 1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 학교 보건정책이 성의 없는 책임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지역 학교들이 학교보건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응급처치, 보건교육 등을 가르치고 건강과 안전을 철저히 대비해야 할 보건교사로 하여금 환경미화, 화장실 관리, 물탱크 청소담당 등 시설 및 행정업무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와 같이 학교보건정책의 실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학교보건정책의 정상화 추진 계획 및 추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원평가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입법 예고 등 법제화 수순을 거친 뒤 현재 67개교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를 2008년부터 3년 주기로 준비된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확정·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을 발표하자, 지난 번 시범실시 발표 때 사안에 따라 찬·반 양론으로 갈렸던 반응이 이번에는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실시 목적이 교원의 능력개발지원과 전문성 신장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에도 관련 교육단체, 학부모 모두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제가 평가내용, 평가주기 등 모든 면에서 졸속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원평가제의 전면 도입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향후, 교원평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개인적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거액의 연봉을 내놓고도 투자통상본부장 자리가 지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석이 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차는 언제 정도 공개모집 합니까?

2차에도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인사자료에 요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차이점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청에 보면 일반 신문하고 보도에 보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에 보면 경상북도 도청 내에 근무하시는 분만 경상북도 공무원이고, 도내 23개 시·군에 근무하시는 분은 경상북도 공무원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사교류 자료가 미비합니다. 서면으로 미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기를 4·5급 인사교류가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럼 하위직 6급에서 9급 인사교류의 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좀 미비합니다. 미비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조정본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 15일자 Y모씨 경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낙하산코드 인사라고 규명했습니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가 100여 개 공기업 중에 142명

정치권 인사를 대표로 임명했을 때 우리 경북지구를 대표하고 있는 모 정당 낙하산코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의 회의 절대 다수당으로 군림하고 있는 당의 도당 사무처장 출신인 5월 31일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사를 경북도에 공기업 대표로 임명한 데 대해 3백만 도민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바랍니다.

공모 당시에 두 사람만 접수를 했다는데, 공모방식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본 의원이 11월 15일자 이모씨와... 그것을 검증했을 때 한 분은 들러리를 세웠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개발공사가 사장 임명을 전면 취소하고 본 의원이 질문에서 제안한 가칭 지방공기업대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적용하여 다시 임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검토가 아닌 수용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투명성, 적법성, 합법성이 전부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공기업을 경상북도를 대변하는데 확실한 사람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밝혔듯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의 답변자료에 보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고도 도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노인복지예산을 늘리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선 전시행정 측면의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고 노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예산이 충분하게 할당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노인일자리 6만 7,505개를 99억원의 돈으로 포항, 구미지역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포항, 구미의 노인 인구가 지금 몇%인지 압니까?

지금 포항 쪽의 노인 인구가 8.2%, 구미가 5.4%이고, 군위가 27.2%, 의성 27.1%, 예천이 20.9%, 봉화가 24.9%입니다. 그러니 노인 지원센터를 노인이 많은 곳에 센터를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노인이 많은 곳에 센터를 차려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데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가까운 쪽에 센터를 차려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화 현안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화 지역 현안에는 봉화 법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 내년도에 102억원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공사가 반드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장세현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포항시 북구 장세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병인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도의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나온 역사의 한 장인 새마을운동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36년전인 1970년대 당시 본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의 새마을사업 전경과 기록들, 그리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하고 문공부에서 제작한 새마을 영상물을 보면서 지나간 그 시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1970년대 당시 자조의 마을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 마을에 관한 것으로써 어렵고 힘들었던 농촌이었으나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인 1967년도부터 이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 길을 넓히고 빨래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하고 지게 대신 온 마을에 리어카를 4,000대나 공동으로 제작하여 전체 기계면에 공급하는 등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며 운동대가 하나로 뭉치고자 노력하였던 생생한 자료들을 당시 정부가 대한뉴스로 극장에서 홍보한 영상자료입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새마을의 첫 발상지인 기계면 문성리에서 새마을의 정신과 운동을 전국에 보급하게 되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지금부터 사진과 기록, 그리고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14시 25분 슬라이드설명 및 상영개시)

(14시 37분 슬라이드설명 및 상영종료)

.....
(참조)

새마을운동 발상지(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슬라이드 자료

(끝에 실음)

.....
36년 전의 기록영화라서 좀 희미했습니다. 보시기가 힘들었습니다마는, 영상이 아니고는 본 의원이 새마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다소 소란스럽게 본 회의장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당시 문화공보부가 제공하고 국립영화제작소에서 제작한 당시 새마을에 대한 국정홍보 영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새마을에 관한 영상물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당시의 영일군 기계면 문성동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옛 새마을의 새로운 역사에 대하여 김관용 지사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경북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 현지에서 전 국무위원을 대동하고 전국 시·도지사, 시장·군수회의를 주재하시고, 기계면 문성리 마을을 답사하신 후에 전국 시장·군수는 임지로 돌아가서 기계면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박대통령께서 이곳이 새마을의 초석이요, 새마을사업의 시작이요, 원초적인 발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 4월 22일 한해 대책 관계로 전국 지방장관회의를 주재하신 유사에서 가뭄대책과 아울러 넓은 의미의 농촌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자조·자립정신을 바탕으로 마을 가꾸기 사업을 제창하였고, 이것을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지사들도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유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새마을운동의 마을의 효시이자 발상지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관용 지사님께서서는 새마을운동을 세계화로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과 추진 계획에 보면 새마을운동 발상지 마을을 새마을의 메카로 개발하고 새마을운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수집한 당시의 자료와 기록에 의하여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가 새마을의 메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70년 4월22일 이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시 및 청와대 회의자료에서는 새마을운동이라는 말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박대통령의 육성을 다시 한 번 낭독하겠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길이 있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 영일군의 문성동 홍이장 지도 하에 1967년부터 불과 3, 4년 동안에 어수선한 마을이 오늘날 이렇게 부흥되었고, 그 부락이 전 군에 있는 농민들이 전부 꺾기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 새마을 가꾸기 운동에 한 부락이 시멘트 10만원 되는 것을 쥐 가지고 480만원 어치의 일을 단 몇 달 동안에 해치웠다. 정부가 지원해 준 데의 약 48배의 일을 단 몇 달 동안에 해치웠다 하니 이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고, 농민들의 머릿속에 이러한 정신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농촌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러한 육성에서 혁명이 일어났다고 할 만큼 새마을운동의 시작과 발상지는 바로 여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지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971년 9월 17일 박대통령께서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군수가 모인 자리에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주민들에게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도 기적을 이룩한 노고를 치하하시며 가히 혁명적이라고 앞서 보신 영상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67년부터 약 3~4년 동안에 우리 농촌이 이렇게 부흥된 것은 농촌 부흥의 시작이요, 새마을의 첫 발상지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중흥의 역사인 새마을사업의 창시자이신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문성리를 보시고 “이것은 기적이요, 농민의 머릿속에 이런 정신이 일어난다는 건 우리 농촌에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신 이 곳에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혼과 새마을정신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이나 건축물을 지어서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관을 심으실 의향은 없으신 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국장님, 이 책자 있으면 가지고 나오시오. 시간이 조금 걸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새마을운동 발상지 한 번 펴 보십시오. 위에서 넷째 줄입니다. 대통령께서 뉴스에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는 말은 아직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봅니다. 그리

고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모범적인 부락도 여러 군데 있는데 특히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빨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같은 농촌인데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라고 대통령이 뉴스에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범적인 부락이 경산, 청도입니까? 새마을 발상지가 경산, 청도입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넘어갑시다.

30페이지입니다. “전국 시장·군수는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고 3번에 나와 있습니다. 30페이지 3번입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대통령께서 “문성동과 같은 새마을을 만들어라” 하는 말은 이 마을이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표본이요.

그렇습니까? 다음 83페이지입니다. 책 내용에 다 있는 거라 답변하기가 쉽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다짐에 보면 “새마을 발상지의 긍지와 용기를 갖고 서로 믿고 도와가며 알찬 번영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자”라는 이 말은, 이 내용은 새마을 발상지 전의 내용 문구입니다.

그런데 왜 새마을 발상지가 여기에서 나왔는지 본 의원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 당시에 새마을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주, 자조, 협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고 새마을 발상지라는 말이 앞에 나왔습니다.

답변 못하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 87, 88, 89페이지입니다. 이 기계면 문성동에 상장과 상패, 그리고 표창과 훈장은 새마을에 관한 전국 최초로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급하신 상장과 상패입니다. 이 앞에 그것이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됐습니다.

국장님, 잠시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지난 '70년 본의원은 발상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69년 수해지역 방문시 대통령께서 착안한 발상이 아니라 새마을의 창시자이고 발상자인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여서 '67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육성에 의한 본인의 생생한 영상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문헌이나 유례보다 새마을의 시작은 역사의 기준이 무려 2년이나 앞당겨진 사실을 우리는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새마을의 발상지와 이에 따른 새마을 역사의 기록은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위대한 역사의 재조명은 박정희 대통령의 고향이요, 창시지역인 경상북도가 직접

나서서 잘못 기록되고 오류된 역사를 정립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방 본 의원이 했던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는 새마을운동의 수출과 브랜드 가치 향상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강화, 베트남새마을시범마을조성에 도비 3억 2,500만 원을 투입하였고, 2006년 6월 1일 중국 중경시 새마을운동 특강 및 교류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길림성 새마을전수여건조사를 2006년 8월에 하였고, 또한 조선족 자치주 새마을문고 설치를 다음 달인 12월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하남성, 봉골 등 개발도상국가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운동을 보급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새마을운동을 배우기 위해 오는 해외연수생, 그리고 신농촌운동과 연계하는 중국, 이 시점에 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줘야 하는 것은 새마을운동의 본고장인 경상북도의 의무이자 도지사의 권리인 것입니다.

또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님께서 구미시장으로 재임 중이시던 지난 2000년 11월 14일 고 박정희 대통령 생가 입구에 새마을운동 준공 표석을 세우셨습니다.

이거 지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의장님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전달)

교육감님도 받으시고...

(자료 전달)

장수가 많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지사님, 2000년 11월 14일이면 구미시장 재임 중이실 때입니까?
맞습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답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면서)

여기 새마을운동의 유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건립
취지문입니다. 건립취지문에 보면 “시대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환
기를 맞은 새마을 정신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되살려서 21세기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서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자고 이 표석을
세운다” 고 지사님께서서는 당시 새기셨습니다. 또한 “고 박정희대통령
의 새마을운동을 유시... 우리 새마을운동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을은 우리 손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자조 자립정신을 불러일으켜
땀 흘려 일을 한다면 모든 마을이 머지않아 잘 살고 아담한 마을로
바꾸어지리라 확신한다. 이 운동을 새마을운동이라 해도 좋을 것
이다” 라고 당시 박대통령의 말씀을 표석에다 새기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1971년 9월 17일 기계면 문성리를 방문하셨을 당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국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본 의원이 제시한 새마을에 관한 일련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에 대한 새마을의 역사를 재조명하여야 한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경상북도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대통령께서는 '70년 지방장관 회의 시 “『새마을 가꾸기 운동』이라 해도 좋고 『알뜰한 마을 만들기』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모범적인 부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 같은 데를 한 번 보십시오. 그리고 천안, 대전 부근에 있는 빨건 농촌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서는 경산, 청도가 모범적인 부락인지 발상지를… 좀 전에 모범적인 부락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들쭉입니다.

기계면 문성리는 경산, 청도와 같은 모범부락이 아니라 새마을정신의 첫째, 자조마을로서 당시 정부가 인정하여 문화공보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뉴스를 방영한 사실은 생생하게 지금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새마을의 발상지가 아니고 무엇인지 국장님은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면 문성리가 어떤 마을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는 썼습니까?

그런데 왜 발상지가 청도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안 정했는데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았습니까?

셋째 물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에서 “1967년부터 불과 3~4년 동안 꺾기를 할 수 있는 계기와 농민들 머리 속에 이러한 정신은 하나의 혁명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새마을 역사의 기준이 2년이나 당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재조명해야 한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재조명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넷째, 물겠습니다.

새마을 발상지와 관련된 답변에 “지역에 따라 약간의 시각차이가 있겠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 운동이 우리 국민의 역사

적인 사관으로 객관적으로 조명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답변을 낸다는 것은 그런 생각이 아닌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0년이요?

'70년도에는 뉴스에 보면 대통령께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들도 한 번 생각해 보라고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범적인 마을도 여러 군데 있는데 경산, 청도도 한 번 보아라! 대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잘 지어진 마을 같다” 이 내용 아십니까? 맞죠?

예, 됐습니다.

다섯째입니다. 새마을 발생지에 관한 지역은 새마을중앙회와 학계, 연구소 등의 고증과 검토를 받겠다고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지난 1970년에서 지금 2006년까지 36년이 지나는 동안 고증되지 않은 사관을 전 국민에게 공포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역사의 왜곡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36년이 되었는데 경상북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발상지의 근원도 없고 경산, 청도가 발상지라고 해서 도비가 지급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왜 되었습니까?

발상지가 경산, 청도는 아닙니까?

어떤 역사적인 장소입니까? 대통령이 차타고 지나가다가 본 장소입니까?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온 지역은 무엇입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이 있고...

다녀가셨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바르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도에 질문한 자료에 의하면 청도군을 지나가시면서 보시고 했지 내려왔다는 얘기는 자료에도 없습니다.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왜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고증된 게 아닌 역사를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유구한 당시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과 같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도의회가 얼마 전에 동해 최동단 독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갔겠습니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가서 만세 불렀습니다. 차라리 대마도에 가서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땅에서 우리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기 땅이라고 합니다. 역사왜곡 아닙니까? 우리가 보는 역사왜곡 맞죠?

그래서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한 것입니다.

자, 새마을 발상지에 대한 명확한 규명도 없이 청도군 청도읍 신도리를 새마을 발상지라고 규정하고 새마을발상지기념관 건립에 도비가 책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지급한 도비는 누가 변상할 것인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곤란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그 정립을 잘 하십시오. 또 도지사님 조금 전에 말씀대로 역사관을 새롭게 정립하시겠다 하니까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곳이 경상북도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였고 또 장시간 이렇게 본회의장을 소란 끼친 이유가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박노옥 의원(농수산위원회) ◎

봉화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에게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살기 좋은 경북을 이룩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하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미래의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많은 조언과 발전적인 의사를 제시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최근 우리 주변여건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부동산 가격의 폭등 등으로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를 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 현상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또한 끝이 어디인지 마음 놓고 기지개 펼 날이 언제쯤인지 기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난 또한 심각해 20대 태반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취업한 20~30대의 경우도 40% 이상이 일용 등 임시직이라는 통계를 접하면서 자녀를 둔 부모로서 이들의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은 시장개방과 한·미FTA 체결 분위기에 따른

쌀값 폭락,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 초고령화 및 저출산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뚜렷한 대책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 어려운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기에서 결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할 수도 없으며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11대 무역국으로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온 강인한 민족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전 민족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뜻과 지혜를 모아 경북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는데 더욱 더 매진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무한경쟁에서 보다 나은 경쟁력을 갖춘 부강한 나라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2만 4,000여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이 고군분투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북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기 위한 원동력은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300만 도민들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발전과 우리 도민을 위하여 보다

열정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도정이 안고 있는 몇몇 가지의 주요 사안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농촌 총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 지역구인 봉화군 관내에서 생활하는 어느 결혼 이민자 가정의 어려움을 한 방송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태국출신 한 여성이 한국으로 출가하여 자녀 4명을 두었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경제적 고통으로 다시 본국으로 출국하여 자녀 2명을 아이들의 외가인 태국에서 기르고, 나머지 2명은 한국에서 엄마 없는 아이를 아빠가 기르고 있다는 어이없는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신부는 태국에서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가난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본 의원이 속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사님께서도 복지의 사각지대인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미리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우리 도가 중앙정부보다 앞서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현장확인과 실태 파악을 통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잘된 일이라 생각하며 기대하는 바 큼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결해야 할 의무가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공동의 책임이라는 생각과

함께 격려와 협력의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성이 국제결혼을 통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그의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전 지구적인 자본주의 체계,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와 정부,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야 어떻든 지난해 우리나라 국제결혼은 4만 3천여 건이며 전체결혼 31만 6천여 건 중 1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는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친정과 시댁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이면서 아내, 어머니라는 가족 내의 지위를 가짐과 아울러, 두 나라의 시민 자격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심한 빈곤과 실업에 시달리는 저개발국의 여성들은 계층상승의 꿈을 갖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로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으며, 그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는 근본적 이유는 가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시장의 현실은 그 사회 전체의 고학력화 추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그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만혼화(晩婚化) 현상이 두드러지고, 독신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명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의 국제결혼에 대한 태도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찬성한다.”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국제결혼은 가파른 증가추세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준비 또한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다문화 공생을 위하여 외국인에 대해 행해지는 가족구조, 가치관, 자녀교육, 빈곤실태, 복지욕구 수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결혼 이민자 문제에 대한 지사님의 남다른 대책 수립에 많은 기대가 되는 바, 우리 도의 결혼 이민자 생활 실태와 앞으로 지원방안의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국제결혼은 농촌총각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농촌총각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기에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감도 없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국제결혼으로 중개료 얼마내고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지금의 시점에서 그들에 대한 우리 도의 정책은 무엇인지,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 특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전국적으로 비교우위를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는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하면서 지금까지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이벤트성으로 많은 실적과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만, 이들의 사후실태 등에 대해 가정사 문제라는 생각으로 또는 개인의 능력문제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지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지금까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종합실적은 무엇이며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북부권 지역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도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림부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도시민의 대부분이 앞으로 직장이나 사업장을 그만 둔 후에는 농촌에 가서 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인 50대 도시민의 경우 60% 이상이 향후 농촌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수도권 주민 중 약 40만 가구 이상이 미래에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며 살겠다고 조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같이 전원생활을 즐기고자 하는 생활 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오직 내세울 것이라고는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것 밖에 없는 우리 도 북부지방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동력사업으로 전원마을촌을 차별화 되게, 집중 조성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도 북부 지역의 대부분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원마을 하면 대도시나 중·소도시 근교 15,000~30,000㎡의 면적에 20~30세대가 입주하는 작은 규모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12억~16억 정도의 국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규모의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많지 않은 이웃 없는 펜션단지나 별장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전원생활을 시작한 도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성한 시·군에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금번 본 의원 관내에서 기존의 전원마을의 틀을 완전히 깨고 400,000㎡의 대규모 부지에 561가구가 입주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지 내에 9홀의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목욕시설, 헬스시설, 텃밭, 과수원, 보건진료소, 한방웰빙센터 등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고품격 체류형 전원마을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를 접수한 지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전체 모집세대의 85%인 477세대가 입주를 신청하는 등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강남의 돈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가슴 설렘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경우 1,000명 이상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늘어난 인구 수만큼 교부세액도 늘어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교부세를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 개군이래 최초로 인구가 늘어나는 대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입주자의 자녀와 친척들이 봉화군을 찾게 되어 이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1천억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이로 인한 지역 관련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우리 도가 추구하는 「일자리가 있는 경북」건설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같이 엄청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사업비 지원규모는 50세대 이상인 경우 총 20억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중 80%는 국비로 나머지 20% 중 4%는 도비, 16%는 시·군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화군과 같이 500여세대 이상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반시설만 약 200~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지원금으로는 단지 내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을 하지 못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도비를 합한 지원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상북도도세감면조례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에 건축되는 전원주택의 규모가 대부분 165㎡(50평) 이상임을 감안할 때 현실에 적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입요인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도 농어촌 주택은 대지 660㎡, 주택연면적 150㎡ 기준으로 시가 7,000만원 이하의 규모만 2008년까지 한시적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 기준면에서 전혀 현실성이 없고, 기한 또한 한시적이어서 기존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입주하는 도시민들은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어있어 농촌생활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 밖에도 본 사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반응이 기대 이상으로 나타나자 인근 시·군에서도 앞다투어 전원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차별화되지 않고 특색없는 사업으로 인한 시·군간의 과다경쟁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특정 지역을 육성·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법률과 의제처리가 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및 애로사항이 내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점에 대하여 도는 소관부처인 농림부 등 중앙 부처에 제도적 문제점의 보완과 현실적인 사업비 지원확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반시설 부분의 도비지원 확대, 세제혜택을 위한 조례개정, 시·군간 과다경쟁의 조정 등에 대하여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체류형 전원마을촌은 자연환경이 전국에서 어느 지역보다 잘 보존된 우리 도 북부지역의 몇몇 자치단체들이 추진할 만한 몇 안 되는 경쟁력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대규모 공장 3~4개 이상의 유치효과가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부족한 사업비를 도비라도 지원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개발에 있어 앞으로 도차원의 시·군간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적정한 지역인 북부권을 체류형 대단위 전원마을촌으로 집중 육성할 의향과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신선농산물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통한 수출 물류비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우수농특산물의 해외수출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최근 농산물 수출동향 자료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총 26,603t 수출에 3만 8,581달러로 전년대비 물량은 10%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78%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실적을 올리기까지 우리 농민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수출에 임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12월의 경우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수출부진에 이르자 농림부에서는 수출물류비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로 표준물류비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수출농가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수출의 최고 변수인 환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달러 당 1,041원이었으나, 올해 11월 15일 기준 1달러 당 973원으로 약 104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환율하락으로 수출부진에 빠진 우리도의 농산물수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도에서는 현행 수출농가에 주는 수출보조금을 5%에서 10%로,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현행 2%에서 7%로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인상해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농수산위원으로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농업도 현업으로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서 피부로 느끼는 바는 지역농업을 포함한 현재의 우리나라 농업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점철된 개방화의 가속화로 대변되는 WTO체제와 DDA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과정 속에서 우리의 농업현실은 그야말로 진실한 가치부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넘어 고사상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경북농업만 보더라도 최근 50여만 명에 겨우 이르는 농업인구, 농가평균소득 2,700만원대로 전국 6위, 농가 당 평균 부채 2,200만원이라는 수치가 옹도 경북농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 31 민선 4기 출범 시 지사님께서는 농업분야 주요 공약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과 농업CEO 양성 등의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해주시고, 취임 6개월여에 접어든 지금 지사님이 파악하신 경상북도 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경북농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경북한우 사육 농가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금지한 미국산 소고기가 지난 9월 수입재개 확정으로 지난달 30일을 기점으로 현재 시중유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그동안 축산단체 등이 광우병 인자 유입 가능성에 따른 소비자 인식전환을 다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경북 관내 연간 소고기 소비량은 이미 지난해부터 수입산 소고기 소비가 160t으로 국내산을 넘어섰고, 현재 45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우리 경북은 전국 최대 사육지로서 한우농가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산지 소 값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 한우사육농가의 안정성 확보와 한우 농가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과 쌀 수입개방에 대비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비지원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 WTO, DDA 협상과정에서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지역 농업인의 고충해결을 위해 2005년까지 도 자체적으로 쌀 개방에 대비한 직불제 보조금 지원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기준의 경우 국고보조 외에 도비 보조분을 ha당 12만원과 산물벼 포대 당 5,000원의 지원은 그나마 어려움에 처한 관내 농가 위안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의 경우 순수 도비지원 직불제 사업의 중단으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수입쌀의 시중유통과 시장대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도 도비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사업을 다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농업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WTO 농업협상 등으로 우리 경북농업인들은 큰 위기에 처해 있으며 미래 생명산업인 농업을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포기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1회성 로터리 작업만으로 벼를 심고 있어 수확량이 줄고 미질이 떨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명성이 높은 경기미는 토질이 우수하고 농토 배양을 잘 하여 고품질의 쌀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도 쌀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고품질 쌀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논 깊이갈이를 통한 농토배양이 시급합니다. 논을 20cm 이상 깊게 갈면 수확량이 10% 정도 증가하고 미질 또한 우수해진다고 합니다.

논 깊이갈이에는 300평 당 4만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수확량 증가와 미질 향상을 고려해 본다면 10만원 이상의 농가 실질소득 증가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 도에서도 청송군은 2000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 당 3만원을 논 깊이갈이 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봉화군 또한 내년부터 관내 전체 논에 대해 300평 당 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송군, 봉화군의 경우 매우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쌀이 무너지면 농업은 물론 지역경제 전체가 어렵게 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쌀농업에 대한 인식전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논 깊이갈이 사업이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사료되며, 이 사업의 파급을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건강한 청소년의 육성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조병인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쫓기는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질문의 요지만 우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때까지 대학진학을 통해 사무직에 종사할 것인가 실업계고교로 진학이 되어서 기업취직의 실무를 배울 것인가 하는 이런 결정을 하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그냥 가정형편과 중학교 성적으로 지금 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원임용기준과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민선 4기 출범 후 지사님께서 주안점을 두시고 추진하시는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도민에게 가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지금 지금의 교육현실을 보면 이공계와 실업계의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이공계대학은 물론이거니와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청년실업을 양산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때 “대학진학을 통해 사무직에 종사할 것인가?” 혹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여 기업취직을 위한 실무를 배울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미국에서는 직업교육 차원에서 중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현장체험)을 하게 하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 선택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학생 개개인의 적성이나 진로에 대한 고려없이 가정형편이나 중학교의 성적을 기준으로 인문계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결정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인의 적성이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진학한 결과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여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례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중학생 때부터 향후

진로의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 교육청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상황과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 임용기준과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고교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 달리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하므로 실습교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습교사의 임용기준은 무엇이며, 임용전형에서 실무능력에 대한 어떤 검증이 있는지? 그리고 산업체 겸임교사의 현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에서도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경상북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시행되는 맞춤형 직업교육 특성화 사업의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보충 질의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지사님 내지 담당국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관련하여 지사님께서서는 앞으로 도정의 주요 프로젝트로 채택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며 어려운 사회문제에 대한 추진의지와 대책수립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현재의 대책은 교육위주의 정책, 시·군지원이 배분성 사업 중심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결혼이전에 농촌총각 문제부터 결혼이후에 생활지원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교육·복지·경제생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군지원이 관행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도가 선도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의지와 성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대책 수립은 좀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집행부의 선도적인 해결의지와 노력에 그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북 북부권을 체류형 전원마을촌으로 집중육성에 관하여 국장님의 답변에 전반적인 공감을 표시합니다. 표시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에 아주 중요한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도차원에서도 많은 지원과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일선의 애로사항을 도 차원에서 잘 수렴하여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재정지원은 사업규모가 일단은

50호 이상이면 100호가 되든 500호가 되든 공히 20억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 중에는 국비가 16억원, 자체 도비가 8,000만원, 그리고 시·군비가 3억 2,0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개발지역 내의 기반시설에도 이 돈은 턱없이 부족한 그런 돈입니다. 아울러서 이 같은 전원마을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벌써부터 경북 내에 6개 내지 7개 단체가 봉화군에 사업문의 및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도가 되면 많은 자치단체들이 본 사업을 더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만큼 국장님께서서는 전원마을사업을 경상북도 주요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할 그런 의향에 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이나 기타 등등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전원마을 사업을 주요프로젝트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북도에는 2001~2002년도까지 ha당 10만원, 그리고 2003~2004년도에 ha당 15만원, 그리고 2005년도에는 ha당 12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회 추경 예산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니 반드시 지원되어 우리 농민들이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내년 부터는 소득보전직불금을 본 예산에 투입시켜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살림살이를 살고 나서 매년 정리추경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불안감만 더해 주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만큼 내년부터는 본 예산에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은 어떠한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으면 지원해 주고 모자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농민들이 천덕꾸러기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이 예산 자체는 일단 경북도 전체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가 알차게 꾸려나 가야 되겠습니까마는 타도라든가 상황을 보면 절대적으로 소득보전을 WTO 자체 내에서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꼭 본 예산에 투입시켜서 지원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품질쌀생산을 위한 논 깊이같이 도비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요지에 보면 친환경쌀생산사업으로 지금 3,000ha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답변했는데, 이게 경상북도 전체 논 면적의 약 2%도 채 안 되는 그런 작은 규모입니다. 이 부족물량은 또 요지에 보시면 시·군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만 시·군의 재정상태가

넉넉하면 무엇 하러 도비지원을 요청하겠습니까?

본 의원의 지역인 우리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약 9%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 시·군을 놓고 봤을 경우에도 재정자립도가 아주 열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도비 지원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우리 전체 논 면적이 매년 통계조사에 따르면 들쭉날쭉합니다만, 지금 올해 통계자료에 보면 17만 2,800ha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 전체 논 면적 17만 2,800ha에 ha당 30만원씩 도비 30%를 지원한다고 하면 약 155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 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만 타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약 400억원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지원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43%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보전직불금을 ha당 15만원으로 지원하면 우리 순수도비는 약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약 100억원하고 우리 논 깊이같이 지원에 약 155억원, 도합 약 255억원 정도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장님께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질의도 했습니다만 특히 보충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담당국장님께서 좀더 접근해 주시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현재 우리 50만 농업인들이 그만큼 어려움에 처해있고 하니까 좀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의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2006년 11월 28(화) 제211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

◎ 이상효 의원 (통상문화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평소 경상북도의회 고유의 임수수행을 위해서 또 위상강화와 역할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질문에 앞서 문화 경북의 위상을 세계인에게 알리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문화 수출인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2006을 준비과정의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극복하시고 성공적으로 성대하게 개최한 현장을 목격한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함을 느꼈으며,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하 엑스포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찬탄과 격려를 보냅니다.

본 의원은 민선4기 300만 도민의 도백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경상북도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임무와 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의회는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 하나로서 헌법 제118조에 규정한 헌법기관으로서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실시의 목적인 30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3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양대 중심축입니다.

또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의기능을 수행하고 집행부의 정책

을 심의·의결하며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감시·감독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는 의회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의 동반자로서 자치 실시의 목적구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도의회에 대한 역할과 시각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발 좀 먹고살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경상북도 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정의 제1과제로 선정하고 참여행정을 통한 수요자 중심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활동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전제로 한 7만개 일자리 창출 등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개편과 인사혁신을 단행하였고 대내외적으로는 새 경북건설을 위해서 도청이전, 낙동강 프로젝트, 영어마을조성, 21C 새마을운동, 농민사관학교 설치, 경북투자펀드조성, 동해안해양개발 등 7대 프로젝트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7대 프로젝트 하나하나 면면을 볼 때 아직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구체성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론수렴도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도정과제를 도의회와 유기적인 협조가 도정발전의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평소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지사, 지사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도의회와 도의원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광역단체인 경상북도와 도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 조직개편 및 인사운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 4기에 즈음하여 집행부는 새 경북 발전 구상에 따라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두고 경제부서와 정책부서의 기능 강화, 유사기능 통폐합, 지원부서 축소 및 현업부서 확대 등을 골자로 지난 8월 18일 입법 예고하고 23일 의회의 제출을 거쳐 9월 7일 기존의 13개 실·원·국을 4본부 6국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화한 뒤 인사혁신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지난 40여 년간 지속하여져 온 연공서열 관행중심의 인사에서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라는 인사혁신안을 마련하고 9월 20일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난 9월의 인사가 과연 혁신이었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9월 20일자 4급 인사 후에 직협의 자유게시판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인사기준은 젊고 유능한 간부를 발탁하여 현장 경험을 쌓게 하고 도정에 기여토록 하였으나 일부 핵심과장의 부군수 발탁은 종전의 인사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소위 핵심팀장 과장들을 초임으로 인사한 것은 과연 인사가 만사라는 금언에 부합하는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연봉 2억원대를 제시하면서 공모한 개방형 직위인 투자통상 본부장을 아직 외부에서 영입 못하고 있어 업무공백 등 조직관리상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7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경북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도 13.7% 증가한 약 3조 9,086억원입니다. 분야별 예산 증감내용의 특징은 동해안개발에 대비한 해양 분야에 18.8%가 늘었고, 보건복지여성분야에는 30.7%가 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분야는 오히려 7.2%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투자예산내역을 보면 보건복지분야에는 1조 629억원을, SOC지역균형개발, 재난예방분야에 6,677억원, 농림수산분야에 5,376억원, 환경해양분야에 4,342억원, 경제통상분야에 1,557억원 등이며, 주요 단위사업별 예산은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이 100억원, 영어마을조성사업이 100억원, 경북투자펀드조성사업비가 100억원, 7대 전략사업에 430억원, 성장동력산업 육성과 투자유치 등 일자리 창출에 1,557억원 등으로 의견상으로 볼 때는 매우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새경북 건설을 위한 전략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연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인 편성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550억원의 기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공약사업으로 투자펀드 조성에 100억원, 낙동강프로젝트사업에 100억원, 인재육성을 위한 영어마을 및 명문고육성 등 430억원을 세부 사업내용 없이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편성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고, 그 외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위반하여 편성한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방채 발행 시에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아울러 예산편성권자인 도지사로서 예산 승인권자인 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주의 방폐장 건설 관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일 국책사업인 방폐장이 경주, 포항, 영덕, 군산 등 4개 시·군의 주민투표에서 경주가 89.5%의 압도적 찬성률로 전북의 군산시를 제치고 경북도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경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방폐장의 경주지역 건설로 경주는 지난 2005년 3월에 제정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한수원 본사 이전 등을 보장받았는가 하면 경북도의 포상지원금 300억까지 확보하여 피폐한

경주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방폐장 유치에 따라 경주지역으로 이전하게 될 한수원 본사 이전지 선정문제를 놓고 경주지역 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폐장 인근지역인 양북면 양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양북면 일대 주민들과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경주시내 주민들 간의 주장과 한수원 본사와 경주시의 입장이 겹쳐서 한수원 본사 이전지 선정은 난마처럼 얽혀있어 도무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8월말까지 완료기로 한 한수원 본사 이전지 선정도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어 모처럼 지역발전을 위한 경주지역 주민의 단결이 와해되어 경주지역의 심각한 사회적 상처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첫째, 한수원 본사 이전은 방폐장 유치시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 한수원 본사를 방폐장 유치지역으로 이전해서 에너지클러스터화해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약속하였으므로 당연히 한수원 본사 이전은 원자력발전소와 방폐장이 있는 지역으로 이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작년 방폐장 유치 신청 시에 이의근 전 도지사는 지사직을 걸만큼 유치과정에서 열의를 보였습시다라는 정작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였을 때 조정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는 현 집행부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만시지탄이나 지금이라도 경주 내 유치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당 지역주민과 경주시, 한수원을 조정하여 해결할 대책은 있는지, 해결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임 지사는 방폐장 유치지역에 도차원의 추가 포상지원으로 2006년부터 도비 60억씩 5년에 걸쳐 300억을 약속하였습니다. 정작 내년도 예산편성액은 그 절반인 30억원만이 편성돼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0억원을 미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주의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광주광역시의회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광주광역시의회는 본 회의에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위상이 약화되고 차별성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경주역사문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광주시의회가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10월 30일 광주광역시의회에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결의안을 통과시킨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튿날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해 강력히 항의하고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경주종합개발계획사업 이후에 30년간 장기침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활력을 찾고자 시도하는 국책 사업으로서 세계문화유산 두 곳과 전국의 국보 10.1%를 보유하고

있는 경주로서 명분과 실리 면에서 모두 갖추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회가 경주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의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사업규모가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 점은 매우 광주광역시의회에 이기적 발상이며 또 다른 지역감정을 기반한 치졸한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향후 우리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가 납득할만 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광주광역시가 개최하는 전국체전 불참과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모든 행사협조 거부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지사께서는 이번 문제를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 국한되는 문제로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광역시의회에 경주세계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반대결의안 채택 이후 도지사로서 경주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대책과 추진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셋째는 양 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 노력을 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지사께서는 도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김용대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께 사실 어렵게 질문 안 드리고 쉽게쉽게 대답해 주시고 쉬운 걸로 질문을 할테니까 부담을 안 가져도 되겠습니다. 우리 김용대 행정부지사님께서 정말 겸손하시고 또 도덕적으로 청렴하시고 소신있는 행정가로 의회에서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부지사의 능력 있는 부지사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해도 되겠지요?

역시 겸손한 말씀입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인사가 잘못이 되면 말들이 많지요. 시끄러워지고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인정을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도청 인사 후에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보셨지요?

인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인사도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인사하는 것이, 인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한두 사람을 끼우려고 연구하다 보면 전체를 흔들려서 업무의 적성과 또 그 업무 맞는, 능력에 맞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한두 사람 때문에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탕평의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이 핵심이라고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인정 하십니까? 설명만 하시지 말고 맞다, 안 맞다만 이야기 하세요.

그 다음에 투자통상본부장의 적격자를 개방형으로 공모하고 있지요. 연봉 2억원으로 유능한 CEO 출신을 영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봉이 낮아서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높일 생각은 없습니까?

2억원이 아니고 9,000만원이다 제가 말하는 것은 2억원도 적는데 9,000만원 가지고 유능한 CEO을 영입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연봉이 낮아서 유능한 CEO 출신을 영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추상적인

데 특정인을 대기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끌다가 어찌하자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가령 이 얘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인과 머슴이 말이죠, 돈 보따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돈 보따리 주인은, 돈이 주인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머슴이 주인 허락없이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말이지, 물론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사용하려고 자기가 가져가는 것을 주인이 그것을 봤습니다. 보고 나니까 주인이 이 돈 보따리를 보고 나도 필요하니까 돈 보따리를 풀라고 했는데 머슴이 돈 보따리를 보여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어요. 당연히 이 돈 보따리를 주인한테 물어보고 의논하고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십니까?

맞지요. 머슴이 주인허락 없이 돈 보따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이것은 정말 머슴으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이후에 선거에 의한 선출직을 사실 구분해 왔습니다. 우리 도의 주인은 경북도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주인인 경북도민이 두 머슴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일꾼으로 머슴으로서 도지사를 뽑았고, 또 한 사람은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심부름 할 수 있는 일꾼 머슴 도지사가 일 잘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뽑았습니다. 감시와 견제를 하라고 뽑은 일꾼이 즉 다시 말하면 도의회이고 도의원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맞지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이라는 책하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2006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세 책자에서 나오는 법령과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 맞지요.

이 책들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면 행정부에 참고를 해서 지켜라고 만든 책이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부지사님께 이 문제를 확인하고 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을 답변대에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돈 보따리를 갖고 있는 기획조정본부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협력계가 기획조정본부 소속인데 이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기획조정본부장님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본부장 임무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본부장 산하에 의회협력계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의회협력계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

인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의회와 협력하는 그런 기구이지요. 저는 의회협력계가 의회내 정보를 캐내는 기구인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본부장 말씀대로 하면 의회 분위기를 전달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해서 의회의 협력을 위해서 있는 기구인데 이것이 정보만 빼내 간다고 해서 우리 의회 협력계장을 우리 의회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KGB라고 합니다. KGB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러시아 정부의 첩보원인데 첩보업무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KGB라는 소리를 왜 듣느냐 하면 기획조정본부가 의회하고 전혀 협력이 안 되기 때문에 KGB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까 답변에 잘못이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의장께서 여러 가지 빨리 진행하라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선4기 출범 100일 도정의 변화 성과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까?

봤지요. 이 책이 뭐하는 책입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지사 취임 100일 이후에 성과에 관한 책이지요.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직 전에 만들었어요.

100일 안 되었는데 왜 만듭니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 부지사님 이것 보셨습니까? 이 책자를 봤다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안 봤다고 해야 되는데 말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은 아마 도지사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안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책 안에 보면 재미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100일 성과 안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4쪽만 말씀드릴게요. 한수원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 울진하고 경주 월성원전이 있는데 그쪽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새로 부임한 도지사가 신입사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쪽 지역민들이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요청하셨다, 한수원에서 신입사원 모집할 때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준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도지사의 취임 100일 성과입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이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 것을 말씀드리면 맨 끝장을 보면 도지사님께서 61개 현장을 방문 하여 3만 4,876km를 다니고 50만 명과 만났다고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수행했다, 이것을 계산해 보니 얼마나 하면 하루에 350km 하루에 5,000명을 만났습니다. 이것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이것 홍보용 책자로 만들면 오히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욕보이는 것입니다. 100일 성과 이 안에는 내용자체가 도민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의원이 이해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엉터리 내용을 성과라고 내어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언제 정합니까?

총체적인 당해연도 예산규모는 언제 정합니까?

처음 예산규모를 안 정합니까? 우리 도의 예산규모, 살림을 어느 정도 살아야 되겠다하는 것을...

몽땅거리 예산 소리를 들어 봤습니까?

그렇지요. 상세하게 안 나오면 의회에서 승인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책 이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보고한 게 지난 의회 첫 보고를 했지 그 전에 안 했잖아요. 5개년 계획하는데 매년 바뀌잖습니까?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습니까?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지난 번에 보고를 했지요. 도에서 나오는 책들이 많습시다. 또 한 책자가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 책자가 있지요.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과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지침 책자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이것이 법령이라든가 지침이 일치하지요.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방재정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해서 재정분석 진단으로서 시스템화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난 한 후에 도의회에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융자심사결과를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투융자 2008년도 예산안 편성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전부 위법입니까?

투용자심사의 지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편성 매뉴얼에 투용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법이고 지시인데 이것을 마음 대로 편법적으로 운영하면 됩니까?

잘라 말씀드리기에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시죠. 쉽게 말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고 약간의 기형적인 문제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기채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기채를 사전에 받는 것이 맞지요, 의회에 요청해서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기채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전에 승인 결과를 표결승인이라는 얘기인데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아까 답변에 협의를 안 한 부분 상당히 사과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왜 사전에 왜 안하셨느냐 말입니다. 사전에 하게 되면 사업규모상이나 사업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지요.

SOC 사업을 갖다가 추진하면서까지 추진하는데 사업비가 없다, 투용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비 자체가 뭐뭐다, 이 자리에서 말이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돈을 몇백억 원씩 뭉텅이 예산을 갖다 주면서 말이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가 해양산업 이런데 기채를 내어서 꼭 해야 된다, 의원들이 생각할 때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은데 본부장님, 기획본부장 자리가 골치 아프고 솔직히 말해서 적성이 안 맞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제약이 있다 보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많이 해 왔는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김영택 의원 (건설소방위원회) ◎

오전에 본 의원이 오후로 연기시켜 달라고 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준비를 많이 했는 것은 아닙니다. 마는 오늘 방송 3사도 안 왔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웃음소리) ...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3백만 도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경북의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우리의 최대 현안이 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증유의 청년 실업률과 대책 없는 농산물 개방 등은 우리 지역의 활력마저 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앞서는 듯한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우리네 이웃에게 내일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실천과 행동도 함께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물론 2만여 경북도의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성찰에서 우러나오는 혁신적인 사고와 노력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도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람사협약 등록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습지는 모든 생명체의 근원인 물을 머금고 있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환경보전에 있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지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사라짐을 의미하기에 최근 국제적으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람사협약을 비롯하여 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습지 보전을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습지보호지역이 16곳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에만 유일하게 지정된 습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습지보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먼저 세계적인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구미 해평습지를 람사협약에 등록시켜 적극적인 보전 노력과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람사협약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보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습지를 매립하거나 오염시켜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71년 이란의 람사에서 조인된 국제협약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등록된 람사습지는 160여 곳, 약 7,500만ha로 국내에는 경남 창녕 우포늪을 비롯하여 4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람사협약에 등록되려면 국제적인 보호생물종이 전세계 개체수의

1% 이상 이용해야 하고 독특한 습지경관과 문화적 배경이 있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의 구미 해평습지는 그러한 조건을 이미 충분히 충족시키고도 남습니다. 현재 구미 해평습지는 전세계 개체수가 1만여 마리인 흑두루미가 2,000~7,000마리가 찾아와 전세계 개체군의 20~70%에 이르며, 멸종위기에 놓여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된 재두루미의 경우 전세계 5,600마리 중 500~700마리가 도래해 약 10%에 이르고, 1만여 마리의 쇠기러기와 큰고니가 떼지어 다니는 전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더욱이 450년 전에 조상들이 두루미를 인공 사육하던 매학정 등이 있어 문화·역사적인 가치가 그 어느 곳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해평습지가 람사습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현 시대에 사는 우리의 신성하고도 자랑스러운 의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구미 해평습지가 람사협약에 등록된다면 국제적 명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투자 유발효과와 함께 가장 환경친화적 지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구미의 전자산업 등을 비롯한 경상북도지역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데도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람사협약에 등록된 경남 창녕 우포늪의 경우 이미 1997년에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의 환경관련 전문가와 운동가들이 한 번씩은 가 봐야 하는 곳이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우포늪 탐방이 중요한 생태학습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상남도는 2008년 램사총회와 램사습지 자원화를 위해 정부에 2,700억원을 요청한 상태이며 제주도 및 기타 전국에서 램사습지 지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이러한 우포늪 70만 평보다 더없이 훌륭한 생태계의 보고인 220만 평의 해평습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평습지의 램사습지 및 국가습지로의 지정을 통하여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얻어내는데 주저없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형마트와 세 번째 재래시장 문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또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참조)

둘째, 대형마트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유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형 할인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들이 그 선두에 서 있으며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그 변화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할인점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국내외 업체가 전국을

분할하는 양상을 띠면서 과점화가 심각한 상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형할인점들은 지방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부지확보가 쉽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점포개설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대형할인점들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인 바 재래시장이나 중소형 유통점포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으며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상인들은 생존의 위기감이 팽배해질 대로 팽배해져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지방경제가 날로 침체해가는 현실에서 대형할인점들은 지역의 자본을 하나도 남김없이 서울로 흡수해가는 거대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농축산물의 일정비율 이상 의무구입 수익금 일부에 대한 지역 환원 등의 요구에도 전혀 끄덕도 하지 않고 대형할인점들은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대형할인점의 무분별한 입지를 막아야 합니다. 대형할인점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논리를 철회하도록 해야 합니다.

혹자는 글로벌시대의 자유시장경제에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대형할인점의 무차별적인 입지는 지역경제를 몰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야 말 것이며 지금도 지역경제의 숨통을 하나하나 끊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지역에서는 이미 대형할인점이 3개가 들어서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모 대형할인업체가 다시 구미3공단 지원시설 부지에 할인점 개설을 추진하는 등 아예 지역의 재래시장과 중소점포 상인의 씨를 말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연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역자금의 수도권 유출을 가져옴은 물론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선 할인점 수는 심각한 교통난과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져와 결국은 지역경제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 것입니다.

더욱이 신규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곳은 구미공단의 미래를 좌우할 최첨단 핵심부품 및 연구단지가 집중된 곳으로서 기업우선정책을 펼쳐야 할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여 기업체의 물류수송과 생산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엄격히 실시하고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국가산업단지로서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부지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할인점과 중소규모의 점포, 재래시장간의 갈등은 이제 당사자들에게 맡겨놓을 단계를 지났습니다. 서로 공생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형할인점의 입지에 있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미 입지한 대형할인점에 대하여는 지역상품의 판매를 의무화하고 지역 유통업체로 법인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지역에 입지한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 지역상공인,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 등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재래시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추진방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쇠퇴는 지역유통기능의 약화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종사자의 생활불안, 서민경제에의 악영향 등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지역의 가장 큰 정책적 현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지원의 대부분은 당장 눈에 드러날 수 있는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이나 환경개선사업 등 물리적 부분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재래시장의 운영과 관련된 비물리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것이 그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재래시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마케팅 투어, 재래시장과 1사 1단체 자매결연 확대, 1시장 1특화 그리고 마케팅 능력의 향상과 관련한 상인대학 운영, 상품권 발행 등을 확대해 나가는 것 외에도 가칭 재래시장활성화특별대책협의회를 구성, 재래시장에 의한 공동할인행사, 공동광고, 마케팅 관련한 각종 이벤트, 재래시장 홈페이지 개설, 통일된 포장지, 공동택배, 재래시장 소식지 등을 발간

하는 등의 다양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지사님께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기구 확대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 및 지방도 유지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건설사업소의 북부지소를 설치하여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보수, 수해복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먼저 관할 시·군을 살펴보면 본 소는 7개 시 6개 군을, 북부지소는 3개 시 7개 군의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본 소는 35개 노선 1,462km의 지방도와 341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해 북부지소는 28개 노선 1,555km의 지방도와 450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면에서도 본 소는 1소장 4과 10담당, 총 65명의 정원인 반면 북부지소에서는 1지소장 6담당, 총 44명의 정원으로 양적·조직적 측면에서 본 소와 비교할 때 월등히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종 태풍 및 수해가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타격을 가함에 따라 피해복구를 위해 업무 과중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 여건입니다. 또한 경북도 관내 국도유지 관리기관은 1청 3건설사무소 2출장소, 43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반면 본소의

정원 65명은 대국국도유지건설사업소 정원 66명 수준에 불과하므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리고 북부청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북부지역 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장의 직급 상향조정과 함께 조직의 확대 개편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니며, 교원평가제, 사립학교법, 평준화 문제,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경쟁력 제고 등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교육현안은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와 현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교육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교육의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여건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북의 펜티엄4 이상 PC 1대당 사용하는 학생수는 10.2명으로 충북의 5.2명에 비하여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25년 이상 노후한 학교건물 비중을 보면 우리 경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각각 53%와 47.7%로 노후건물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로 조사되었으며, 고등학교도 28.5%로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교육여건의 실태가 전국적으로 하위권임과 더불어 도내 기초자치단체별로도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

어 교육여건 개선 및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 서비스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장애학생은 1만 1,000여 명에 이르지만 특수교육예산, 특수학급, 통학버스 등 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 서비스는 전국의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06년도 경북도교육청 교육예산 중 특수교육예산은 전국 평균 2.99%에 못 미치는 2.7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이며, 전체 장애학생 1만 1,000여 명 중 3,300여 명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현실은 교육의 혜택이 얼마나 불균형을 이루고 있나를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북도내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손을 꼽을 정도이며, 장애학생의 통학버스 이용률도 전국 평균 63.7%에 미치지 못하는 55%에 지나지 않음에도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마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의 발전을 논하고 지역의 인재양성을 논한다는 것은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는 물론 도농간 교육 및 문화 격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의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심하고 노력하고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지만 신경 쓰고 음지와 그들은 신경을 제대로 쓰지 않는다면 변화와 발전은 담보를 면키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세심한 곳까지 철저한 관찰과 개입, 점검을 통해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먼저 해평 습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해양 산림국장님.

습지보전법 제3조에서 국가 또는 특별시, 광역시·도는 습지를 보존할 책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는 해평 습지 랍사협약 등록 추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줬습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포괄적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단법인 경북환경실천연합회에서 구미시에 랍사협약

등록추진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7월 18일에 접수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에 다시 접수하니까, 구미시에서 보내온 답변서입니다. 이게 처음 보낸 것이고, 두 번째 보낸 것이 이겁니다. 답변 온 것이 뭐라고 왔느냐? 환경실천연합회에서의 답변을 보면 2장까지 이렇게 빼곡하게 보냈습니다. 구미시에서 답변 온 것은 딱 한 줄입니다. 뭐냐? “종합적으로 판단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끝” 이게 다입니다.

그렇게 봐서는 환경단체나 아니면 어제 영남일보에도 났습니다만 박희천 교수 이런 분들이, 제가 전화도 해봤습니다, 직접 만나 뵈고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 지원해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비해서 장점은 뭐니까?

지금 창녕 우포늪의 경우에는 1년 동안 경제적인 효과가 관광객 인원이 1년에 40만 명 옵니다. 대충 추정으로 한 100억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창녕군의 홍보 효과, 우포늪을 이용해서 우포 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상품화 시키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만약에 구미 해평 습지가 람사협약에 등록이 된다면 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현지 주민과 상의하셔가지고 그 창녕 우포의 늪같이 그런 단점에 대한 보완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올해 2006년도에 내륙습지 26곳을 대상으로 자연생태환경을 조사하고 또 생태환경이 우수한 내륙습지 10곳을 습지보전구역으로 정한 바 있는데, 경상북도에는 본 의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만 한 곳도 지금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정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2008년도 경상남도에서 개최하는 세계람사총회 아시죠? 거기에 정부에 2,700억 지원 요청한 것도 알고 계시죠?

창녕 우포에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지금 박희천 교수나 아니면 환경실천연합회 회원들을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구미시나 아니면 도에서 환경에 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이라든지 준비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학계에서는 2008년도 경상남도에서 하는 람사총회 때 구미 해평지역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버스투어를 한답니다. 그런 계획까지 잡고 있는데, 도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상세한 내역을 보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단체나

아니면 어제 영남일보에 난 박희천 교수하고 이런 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그에 따른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지, 단순하게 총회하는 것 보고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에 버스투어 했을 경우 구미나 경상북도에 그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나 아니면 버스투어를 했을 적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구미 시도 지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환경실천연합회에서 보낸 것을 석달만에 답이 왔고, 도에서 내년에 환경단체에 해평 습지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 경상북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조금 능동적인 어떤 자세를 가지시고 경상남도와 같이 좀 연계를 해서 2008년도에는 세계 각국에서 오시는 학자님과 관광객들에게 경상북도로 통해서 구미에 한 번 들러서 해평 습지를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학진흥본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구미에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또 도에서 교통영향 평가하신 것 있죠?

몇 번 했습니까?

구미에서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역 자금이 연간 2,900억 정도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려는 자리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지금 삼성 전자, LG전자가 있는 옆에 공단지원시설 부지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대란, 그리고 재래시장 및 주유소 상인의 몰락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시민단체나 구미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교통영향평가 이외에 다른 것 뭐 한 것 있습니까?

교통영향평가심의회에서 하는 일은 뭐니까?

심의위원은 주로 누굽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원님들이 거기 심의위원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나 이런 것이 전문가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소방위원회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포항출신 장두욱 의원하고 본 의원하고 두 명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점 이냐? 들어갈 때부터 한 명 밖에 들어갈 수 없다, 왜 한 명 밖에 못 들어가느냐? 그거는 도의원 한 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실 알고 보니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25명 중에 도의원이 두 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 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인데, 굳이 지금 심의위원회 위주로 이렇게 도의원들을 배제시키는 이유가 어떤 집행부가 의도대로 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아닙니까?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 몇 년 됐습니까?

아니, 제일 오래 되신 분 모릅니까?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같으면 이렇습니다. 15년 이상 되신 분이 다섯 분이나 계십니다. 도의원한테는 한 명밖에 안 된다, 또 도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아이구, 그거 보안사항이라서 줄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두욱 의원이 호통을 쳐서 그거 받아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교통영향

평가심의위원회도 결국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도의원을 뺀 것이 아닌가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교수님 보면 영남대, 계명대, 경북대 과연 이분들이 구미면 구미, 안동이면 안동, 영천이면 영천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어떤 문제로 고민을 하고, 어떤 문제로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이분들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올라온 그 서류를 가지고 전문가 입장에서 여기에 건물이 들어와야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 가지 등등을 보는 것이지, 그래서 본 의원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심의위원회도 우리 도의원들이 몇 분씩 들어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첫 회의에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전문가 분들이 교수님도 많고 연세 많으신 분도 많지만 그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그 교수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모릅니다.

실제로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건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55명 도의원

중에 어느 분이 들어갔을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이 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료를 줘서 그 의원이 발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참조해 주시고, 내년 몇 월 달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개편할 적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대형마트는 교통영향평가에서 가결, 보류가 있지, 부결이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형마트에서 우습게 보고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보면 앞에서는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고 연간 200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병 주고 약 주는 꼴입니다.

근본적으로 만약에 대형할인마트를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올 것은 들어와야 되겠지만 시와 도가 연계가 되어서 막을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앞에서는 대형마트 들어오는 것 제대로 막지도 못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200억씩 왜 줍니까?

본 의원이 봐서는 정말 이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할인마트 들어오는 것 못 막으면서, 그에 대한 제제도, 아니면 대형할인마트에 대해서 지역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의 농수산물을 50% 아니면 60%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그런 제

제도 못하면서 그냥 교통영향평가라고 해서 그냥 조건부 가결, 어떻게어떻게 하는 조건으로 대형할인마트 허락해 주면 그 할인마트가 들어와서 지역의 경제를 잠식시키고 재래시장 약화시키고, 그러고 나면 도나 시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시킨다고 지금 1년에 200억씩 들어붓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나규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나규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1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0만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관용 도지사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북교육의 미래와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조병인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할까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 내 시외버스 보조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상북도에서는 별도의 조례 제정도 없이 시외버스 사업에 재정보조금을 과다 지원함으로써 문제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한 우리 도의회 동료의원인 장길화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도내 시외버스 보조금사업이 지난 '9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보조금 지원금 배분작업을 일임한 뒤에 이에 대한 사후감사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단체인 경북버스조합 사업에 대한 사후점검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비지원금이 타 도에 비해서 1대 1.88이라는 높은 비율로 책정되어 우리 도의 열악한 운송사업 경영환경에 의한 정책적 판단

이었다고 요지를 말씀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는 교통영향조사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재정규모가 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잘못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재정지원금의 배분과 집행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비 정산 등을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검증받음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집중해소와 자립적인 지방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매우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 국내사업체 수의 46% 종사자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이러한 수도권 집중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이때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은 국가균형발전정책 성공의 시금석이자 지방의 재도약을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7월 건설교통부는 당초 170만 평이던 김천 혁신도시 개발면적을 105만 평으로 축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혁신도시 개발면적이 170만 평에서 하룻밤 사이에 105만 평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해서 건설교통부는 입지선정 당시에 도가 제시한 개발면적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수요분석을 통하여 적정 개발면적이 결정되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도 마무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핵심사업이며 경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쉽게 6만 5,000평도 아닌 65만 평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재정부담을 우려로 개발면적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조기에 착공해서 지방의 경기를 부양하고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할 13개 공공기관을 성장동력으로 해서 하나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170만 평도 부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개발예정지 면적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영어마을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은 글로벌시대에 성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된 지 오래이며, 심지어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기도의 영어마을에 기획경제위원회 전원이 방문한 결과 학생들의 이용률도 그리 높지도 아니했고 경기도 같은 데도 연간 220억이라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효과나 어학연수 대체효과에 있어서 경상북도가

실현하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적자 보조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지사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패가 예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실행과정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원어민 강사채용과 강사의 체계적 관리 곤란 등 운영과정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가의 비용으로 수혜자가 극히 소수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우리 도로 보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여야 할 일로 사료가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폐교 등을 이용해서 영어체험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와 경북교육청 사업의 단일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더 이상의 예산과 인력의 낭비없이 영어마을 조성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기존 공교육의 영어교육법을 전면 개선하는데 투자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영어교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 수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27만 8,000명으로 추산할 때 공무원 1인당 총 인건비는 5,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는 바 이는 공무원 1명을 쓰기 위해서 비용이 약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방만한 조직운동을 경계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경상북도의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경북의 인구가 281만인데 지금 271만으로 3.5%가 감소했는데 공무원 수는 4.7%가 오히려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해결 못하면서 공무원 수를 늘려왔음은 역시 무책임한 행정의 소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함에도 결국 표준정원보다 많은 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시·군은 지원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원과 일용직 등을 많이 채용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어제 우리 권영만 의원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지방 공기업과 관련된 것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경상북도에서는 공석인 경북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한 바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한해 매출액만 400억원이 되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지역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신문 등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번 인사는 형식적으로는 공모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나 보은인사 내지 코드인사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묘시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52.6%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화장이 매장을 앞질러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장묘문화는 매장이 아니라 화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장률이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경북의 화장장은 1989년에 울릉군 화장장건립 이후 한 곳도 늘어나지 못한 채 화장로 1~2기를 갖춘 10여 곳만 운영되고 있어 화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민들은 대구화장장까지 원정한 뒤에 장지로 돌아오는 불편함을 겪고 있고 화장 이 사용료가 대구시민은 5만 2,000원인데 경북도민은 18만원이나 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부산화장장의 경우 화장장을 공원화하여 화장에서 장례식까지 원스톱 시스템의 장례절차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상북도에도 도립화장장을 건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영어마을 조성은 우리 지사님의 7대 공약사업 중에 하나지만 금번 예산에는 포함시킬 수가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절차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을 올리려면 투융자심사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도 거치지 아니했고, 또 타당성 조사를 기획... 우리 뭘니까? 무슨 위원회입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우리 위원 전원이 경기도에 방문을 해 보니까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그 이유가 영어마을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공약은 좋으나 경상북도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당장 추진이 시기상조라고 생각되며,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했고 영어마을 효과 면에서도 경기도 영어마을의 경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수혜자의 숫자는 결국 중학생의 3.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보다도 경기도 재정규모가 6배나 많은...

6배나 큰데도 영어마을로 인해서 연간 220억의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구조조정 내지 적자 보존책에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는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단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당면 민생현안을 외면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추진하지 말고 중장기로 연구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교육청과도 같이 협조를 해서 단일로 해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쪽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해 줬으면 좋겠는데 다음에 또 연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본부장님 잠깐 봅시다.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질문이겠습니다마는, 우리 경북개발공사 사장이 본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라서 또 시민의 여론이 그래서 묻지 않을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부장께서는 개발공사의 임원이시지요?

이사회 임원인데 보통 임원하고는 아마 차원이 틀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임원이지만, 이사지만 실제적으로 위치가 사장 이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컨대는 본부장께서는 개발공사의 직은 이사직입니다마는 그 사장을 채용하는 모든 과정에 워전 지사님을 대신해서 모든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께서는 공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 공고했습니까?

공고도 하기 전에 대개 우리 도민들이 알기로는 윤모씨가 임명 되리라고 전부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혹시 본부장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글쎄 천지에 경북도민들이 글 꽤나 읽는 사람은 전부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역시나”로 끝날 정도로 되었을 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된 위원으로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의 묘한 감정을 가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 사장에 임명할 때는 옛날부터 윗전의 측근이나 정실, 코드 인사로 주로 매김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제 이후는 논공형상의 포상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듯한데 여러 가지로 볼 때 논공형상의 대상이 되거나 코드인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기업 사장을 채용할 시는 그 직에 맞는 전문CEO 출신이 임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께서는 거기에 동감하시지요?

지금 이 시간이 개발공사 사장을 임용하기 전이라면 여러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습시다마는 기이 개발공사

사장을 임용한 마당에 어차피 3년간 임기를 보장해줘야 되고 열심히 일을 시켜야 되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듣기가 민망하고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은 그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부장께서는 윗전을 잘 모시되 Yes-Men이 되지 마시고, 주관이 있고 소관이 있는 그런 공무원으로서 윗전이 잘못이 있으면 좀 고쳐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소신 있는 그런 본부장이 되어 주실 것을 주문 말씀드리면서 그만 들어가십시오.

보충질문이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 록



- 조 례 안 : 16건
- 예 산 안 : 4건
- 결 의 안 : 2건
- 승인·동의안 : 4건
- 기 타 안 : 2건

■ 조례안 : 16건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 조례안
-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파출소 등)”을 “(119안전센터 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파출소”를 각각 “119안전센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산림축산해양국장”을 “농수산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수산과장”을 “수산진흥과장”으로 하고, “수산시설계장”을 “수산시설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 경제통상실장, 자치행정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기획조정본부장, 경제과학진흥본부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③경상북도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도의 관계 실국장”을 “도의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투자유치담당과장”을 “투자유치담당팀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투자유치팀장”을 “투자전략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중 “경제통상실장”을 각각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한다.

④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도분청 관련 실국장”을 “도 분청 관련 본부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제7조중 “예산담당관”을 “예산팀장”으로 하고, “민자유치사업 담당

계장”을 “민자유치사업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해당사업의 과, 계장”을 “해당사업의 팀장,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경상북도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중 “담당국장”을 “담당본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정보화업무 담당과장”을 “정보화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실·과와”를 “실·과·팀과”로 한다.

⑥경상북도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팀장”으로 한다.

제4조·제5조제1항·제2항·제6조제1항·제2항·제18조제1항·제2항·제19조중 “담당과장”을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

⑦경상북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세정담당”을 “세정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고, “평가심사담당”을 “평가심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⑧경상북도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보건환경산림국장, 사회복지여성국장”을 “환경해양산림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

제6조의5제2항의 “가정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여성국장”을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노인복지담당”을 “노인복지총괄책임자”로 한다.

⑨경상북도중소기업근로자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지역경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근로복지과장”을 “고용노사지원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근로복지계장”을 “노동복지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⑩경상북도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담당과장”을 “담당팀장”으로 한다.

⑪경상북도직업교육훈련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과장”을 “팀장”으로 한다.

⑫경상북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체육청소년업무담당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경상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감사실 감사1계장”을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⑭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실·국장급 공무원”을 “본부·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⑮경상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건설도시재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⑯경상북도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담당

국장”을 “담당본부장”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⑰경상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중 “재난업무담당”을 “치수행정총괄책임자”로 한다.

제10조제5항중 “재난담당”을 “방재총괄책임자”로 한다.

⑱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⑲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물가대책담당과장”을 “물가대책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중 “물가대책담당실·국장”을 각각 “물가대책담당본부·국장”으로 한다.

⑳경상북도소비자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소비자보호담당 실·국장”을 “소비자보호담당본부·국장”으로 한다.

㉑경상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대중교통업무담당실·국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본부·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을 “대중교통업무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 ②② 경상북도물류정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보건환경산림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과학진흥본부장, 농수산국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장·팀장”으로 한다.
- ②③ 경상북도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4조중 “예술계장”을 각각 “예술담당사무관”으로 한다.
- ②④ 경상북도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예술산업과장”으로 한다.
- ②⑤ 경상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실·국장”을 “본부·국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중 “의회계장”을 “의회협력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 ②⑥ 경상북도민헌장제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7조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기획계장”을 “기획업무 사무관”으로 한다.
- ②⑦ 경상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주무실국장”을 “주무 본부·국장”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각원·국장과 기획관”을 “각 본부·국·원장과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9호중 “실원국”을 “본부,국,원”으로 한다.

제4조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중 “기획관리실기획계장”을 “정책기획관실 기획업무사무관”으로 하고, “주무과장”을 “주무 팀·과장”으로 한다.

㉘경상북도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무담당관실”을 “정책기획관실”로 한다.

제6조중 “법무담당관실 과계장”을 “정책기획관실 법제소송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제7조중 “법무담당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㉙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중 총괄조정관 란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㉚경상북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중 “국장”을 “본부장, 국장”으로 한다.

㉛경상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9호중 “통상산업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㉜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업무담당실·국장”을 “업무담당본부·실·국장”으로 하고,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중 “업무담당실·국장”을 “업무담당본부·실·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지회장”을 “중소기업중앙회 지회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의 “산업관광위원장-산업관광위원”을 “통상문화위원장-통상문화위원”으로 한다.

㉓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㉔ 경상북도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경제통상실장, 농수산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투자통상본부장, 환경해양산림국장, 건설도시방재국장”으로 한다.

㉕ 경상북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농수산국장”을 “환경해양산림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새마을자원봉사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관리과장”을 “새마을봉사과장, 관광산업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

㉖ 경상북도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㉗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본부장”으로 한다.

㉞ 경상북도공무원주거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실과장 또는 사업소장(이하 “실과장”이라 한다)”을 “실·단·팀·과장 또는 사업소장”으로 하고, “실과장”을 “실·단·팀·과장”으로 한다.

㉟ 경상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3조(파출소 등) 소방서의 소관 사항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두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3조(119안전센터 등) <u>119안전센터</u> <u>119안전센터</u></p>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 급	6 급	7 급	8·9 급
비율	15% 이내	23% 이내	36% 이내	18% 이내	8% 이상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상북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직급별						
합 계		4,133	1,168	98	2,472	395
정 무 직		1	1			
일 반 직	소 계	1,346	961	55	78	252
	2~3급	1		1		
	3 급	8	7		1	
	3~4급	1	1			
	4 급	65	45	7	5	8
	5 급	261	210	8	16	27
	6 급	450	322	18	27	83
	7 급	478	336	20	23	99
별 정 직	8 급	82	40	1	6	35
	소 계	44	28	10	4	2
	1급상당	1	1			
	3급상당	1	1			
	4급상당	3	1	2		
	5급상당	10	4	5	1	
	6급상당	15	10	2	2	1
	7급상당	7	6		1	
연 구 직	8급상당	7	5	1		1
	소 계	198	2		164	32
	연구관	28	1		26	1
지 도 직	연구사	170	1		138	31
	소 계	28			28	
	지도관	7			7	
소 방 직	지도사	21			21	
	소 계	2,108	51		2,057	
	소방정	17	2		15	
	소방령	47	9		38	
	소방경	84	7		77	
	소방위	151	11		140	
	소방장	285	12		273	
	소방교	587	9		578	
소방사	937	1		936		

직급별		기관별		합 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소 계	합 계					
기 능 직	소 계	364	125	33	97	109		
	6 급	17	9	2	3	3		
	7 급	35	19	4	7	5		
	8 급	64	19	5	18	22		
	9 급	117	36	4	35	42		
	10 급	131	42	18	34	37		
교 원	소 계	44			44			
	학 장	1			1			
	교 수	32			32			
	조 교	11			11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기 관 별	정 원		존속기한	비 고
	계	내 역		
합 계	38	일반직 : 4급3, 5급10, 6급11, 7급11, 8급1 기능직 : 10급2		
도정혁신팀	14	일반직 : 4급1, 5급4, 6급5, 7급4	2007. 6. 30	
공공기관이전 지 원 팀	10	일반직 : 4급1, 5급3, 6급3, 7급3	2008. 10. 30	
회 계 과	4	일반직 : 5급1, 6급1, 7급1 기능직 : 10급1	2008. 12. 31	복식 부기업무
전국체전 기 획 단	10	일반직 : 4급1, 5급2, 6급2, 7급3, 8급1 기능직 : 10급1	2007. 12. 31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사무위임조례”를 “경상북도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경상북도내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경상북도의회사무처장(이하 “도의회사무처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표1 내지 별표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 ·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경제과학진흥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과 학 기 술 진 흥 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신고 수리 검사대상기기 조정사의 선임·해임·퇴직신고 접수 및 선임기한 연기승인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동법 제59조</p>	시장·군수
미 래 전 략 산 업 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법정계량단위 표시계량기의 제작 신고, 수입계량기의 신고 수리 및 검정 계량기수리업, 증명업 등록 사무중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리업, 증명업 등록 변경사업 신고수리 동 등록취소, 사업정지 실량 또는 함량표시 검사 계량기 정기검사 (질량계 3톤 이상 제외) 수시검사 및 이와 관련한 처분 (과태료 부과징수권 포함) 	<p>「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p> <p>「계량에 관한 법률」 제5조 동법 시행규칙제3조 내지 제6조 동법 제22조 동법 제11조, 제18조 동법 제16조</p> <p>동법 제18조, 제28조 내지 제33조</p>	시장·군수
생 활 경 제 교 통 지 원 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보고검사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자동차등록판 제작, 교부 및 봉인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의 지정 등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 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1조</p> <p>「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p>	<p>시장·군수</p> <p>시장·군수 철곡군수 (SOFA 자동차 관 할)</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 경제 교통 지원 팀	6.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 운행 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동법 제27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 관 할)
	7.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와 멸실된 경우의 조치	동법 제7조	
	8.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 의 멸실, 훼손 기타 부정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동법 제7조제3항	
	9.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 본의 교부나 열람 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제4항	
	10. 자동차 신규등록 및 등록증 교부 또는 재교부	동법 제8조 및 제18조제2항	
	11. 자동차 신규등록의 거부	동법 제9조	
	12.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부착·봉인 및 재교부	동법 제10조	
	13. 회수(반납)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	동법 제10조제6항	
	14. 자동차의 변경등록	동법 제11조	
	15. 자동차의 이전등록	동법 제12조	
	16. 자동차의 말소등록 처리와 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 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동법 제13조	
	17. 폐차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인정	동법 제13조제1항	
	1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사항 처리	동법 제13조제8항	
	19. 자동차 말소사실 증명서 교부	동법 제13조제9항	
	20. 자동차의 압류등록	동법 제14조	
	21. 자동차 등록번호의 부여	동법 제16조	
	22. 자동차 등록에 관한 이의 신청의 처리	동법 제28조	
	23. 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제작·수불 교부와 봉인 시행 기록관리	동법 시행규칙 제5조	
	24. 교부대행업무의 폐지신고 처리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25. 자동차 정기점검 기간의 조정 등	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생활 경제 교통 지원 팀	26. 검사유효기간의 연장과 유예조치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시장·군수	
	27.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저당법」 제4조		
	28. 계약국 자동차의 정비·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	시장·군수 칠곡군수	
	29. 국제교통자동차 운행표의 반납	동규칙 제8조	(SOFA 자동차 관 할)	
	30. 도로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제원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처리	동규칙 제20조제3항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자동차 사 용정지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등 록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운용계획 수립·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제5항		
	33. 자가용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유상운송허가 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 다.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 영치, 반환 및 봉인 라.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 신청 접수 처리 및 통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 동법 제74조 동법 제74조2항 (동법 제80조 준용) 동법 제85조		시장·군수
	34. 일반·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또는 효력 정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35. 도지사가 개설 명령한 버스노선의 평균승차인원 조사 및 운행 횟수 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6		
	36.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사항 가. 사업면허 나. 공사시행인가, 인가신청 기간 연장, 공사완료시설 확인 다. 사용개시 신고수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7조 동법 제39조 동법 제40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 경제 교통 지원 팀	라. 사용약관 신고수리 마. 시설사용료 인가 바. 사업자 금지행위 중지 명령과 구조·설비의 시정 명령 사.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변경 인가와 변경신고 수리 아. 개선명령 자. 사용명령 차. 공사시행인가 및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확인시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및 통보 카. 양도·양수 및 법인합병 신고 수리 타. 상속신고수리 파. 휴지·폐지허가 하. 보고·검사 등 거. 면허·인가·허가의 취소 및 사업 정지처분 등 너. 청문 더.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러. 과태료 부과·징수와 이의 신청 접수처리 및 통보 37. 자동차의 직권말소 통지 38. 도난차량 말소등록 39. 체약국 자동차관리 업무의 대행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15조 준용) 동법 제50조 (동법 제16조 준용) 동법 제50조 (동법 제17조 준용) 동법 제71조 동법 제76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제77조 동법 제79조 동법 제85조 동법 제13조제3항 내지 제6항 동법 제13조제7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시장·군수 시장·군수 칠곡군수 (SOFA 자동차 관 할)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 경제 교통 지원 팀	<p>40. 석도·궤도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p> <p>나. 준공 및 준공기간 연장</p> <p>다. 준공검사</p> <p>라. 시설변경의 허가</p> <p>마. 허가의 취소 등</p> <p>바. 과징금 처분</p> <p>사. 청문</p> <p>아. 명의변경 신고 등</p> <p>자. 안전검사</p> <p>차. 보고검사</p> <p>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p> <p>4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용신고·변경신고</p> <p>나. 유상운송허가·임대허가</p> <p>42. 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다음 사항</p> <p>가. 채용·해임의 신고수리</p> <p>나. 과징금 부과징수</p> <p>다. 청문</p> <p>라. 과태료 부과징수</p> <p>43.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와 관련한 사무중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의 허가 등</p> <p>나. 허가의 기준</p> <p>다. 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p> <p>라. 사업의 승계</p> <p>마. 허가의 취소 등</p> <p>바.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사. 안전관리규정승인, 변경명령</p> <p>아. 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등</p>	<p>「석도·궤도법」 제4조</p> <p>동법 제8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14조</p> <p>동법 제16조</p> <p>동법 제16조의 2</p> <p>동법 제16조의 3</p> <p>동법 제17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8조</p> <p>「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p>동법 제39조</p> <p>「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p> <p>동법 제10조</p> <p>동법 제43조의3</p> <p>동법 제54조</p> <p>「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 제3항</p> <p>동법 제3조의2제2항</p> <p>동법 제6조</p> <p>동법 제7조제3항</p> <p>동법 제8조제1항</p> <p>동법 제8조의2제1항</p> <p>동법 제10조제1항, 제4항</p> <p>동법 제14조제2항, 제5항, 제6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생활 경제 교통 지원 팀	자. 위해방지조치 차.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카. 보고·조사등 타. 청문 파. 과태료부과·징수 44. 동 타인의 토지 허가 등 45. 타인의 토지의 공간사용 46. 전기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명령 47. 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48.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 대리점 제외)에 관한 사무중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 제품 판매업을 제외한다. 이와같다) 의 등록 및 신고의 수리 나. 석유판매업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석유판매업자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명령 라. 과징금의 부과 마. 보고 및 검사 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사.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49.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50. 승강기 제조업자 등의 검사 51.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52.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자 선정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제1항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제4항 동법 제88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71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30조 동법 제38조제3항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동법 제21조 동법 제28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시장·군수

투자통상분야

소관별	권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기 업 지원팀	<p>1. 지방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p> <p>나.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 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p> <p>다.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p> <p>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아파트형공장 기타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p> <p>마.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p> <p>바.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 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p> <p>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p> <p>아.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p> <p>자.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p> <p>차. 산업단지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p> <p>카. 기타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 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p>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7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8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9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0호</p> <p>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1호</p>	<p>시장·군수 (경상북도 사무 위탁 조례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는 제외)</p>

소관별	권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고 용 노 사 지 원 팀	<p>1. 노동조합의 설립 및 관리·해산에관한 다음의 권한(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제외)</p> <p>가.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수리</p> <p>나.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의 교부·보완 요구 및 반려(시정요구·통보)</p> <p>다. 변경신고의 수리 및 변경 신고증의 교부</p> <p>라. 변경사항 등의 통보의 접수</p> <p>마. 임시총회 등의 소집권자 지명 및 노동위원회 의결 요청</p> <p>바. 규약 또는 결의·처분의 시정 명령</p> <p>사.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의 요구</p> <p>아. 비활동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해산신고의 수리</p> <p>자. 과태료의 부과</p> <p>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단체협약신고의 수리 및 단체협약의 시정명령</p> <p>나. 노동위원회의 의결요청 및 단체 협약의 지역적 확장 작용 결정 및 공고</p>	<p>「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p> <p>동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제3항</p> <p>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3항</p> <p>동법 제13조제2항</p> <p>동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p> <p>동법 제21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p> <p>동법 제96조</p> <p>동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p> <p>동법 제3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고 용 노 사 지 원 팀	3. 노동쟁의행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동관계 지원을 받는 자의 신고의 수리 나.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다. 직장폐쇄 신고의 수리 라. 쟁의행위 신고의 수리 마. 폭력행위 등 신고의 수리	동법 제40조제1항제3호 동법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4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시장·군수
통 상 외교팀	1. 시·군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허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3조제1항	시장·군수

문화체육관광분야

소관별	권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문 화 예 술 산 업 과	1. 지방문화원(사단법인) 사무의 검사 및 지도감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제1항	시장·군수
체 육 진 흥 과	1. 직장운동경기부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시장·군수
관 광 산 업 과	1. 국외여행업 및 국내여행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 나. 지위의 승계·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 다.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명 령, 시설·운영의 개선명령, 관세 감면물품에 관한 세관 장 통보 등록취소 등 처분시 소관행정 기관통보·협의 라.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마. 과징금의 부과·징수 바. 청문의 실시 사. 보고·서류 제출명령, 사업장 등출입 및 검사 아.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자 관할법원 통보 2. 관광숙박업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운영 의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 소관행정기관 통보·협의 나.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 다. 과징금의 부과 징수 라. 청문의 실시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제3항 동법 제8조제3항, 제6항 동법 제33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72조 동법 제73조제2항, 제3항 동법 제81조제2항, 제4항, 제5항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 제4항, 제5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72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관 광 산업과	<p>마. 보고·서류제출 명령 사업장 등 출입 및 검사</p> <p>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자 관할 법원 통보</p> <p>3. 관광객이용 시설업에 관한 다음권한</p> <p>가.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교부(전문·종합휴양업 및 관광공연장업 제외)</p> <p>나. 지위의 승계·휴업·폐업 등 신고의 수리(전문·종합휴양업 및 관광 공연장업 제외)</p> <p>다. 관광객이용시설업등록심의 위원회 설치 및 등록의 심의(전문·종합휴양업 및 관광 공연장업 제외)</p> <p>라. 인·허가 의제 사항 통보 (전문·종합휴양업 및 관광 공연장업 제외)</p> <p>마. 등록의 취소(전문·종합휴양업 및 관광공연장업 제외) 사업의 정지 명령, 시설·운영의 개선 명령, 관세 감면 물품의 관할 세관장통보, 등록 취소등 처분 시 소관 행정기관 통보·협의</p> <p>바.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p> <p>사. 과징금의 부과·징수</p> <p>아. 청문의 실시</p> <p>자. 보고·서류제출명령, 사업장 등 출입 및 검사</p> <p>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이의 제기자 관할법원 통보</p>	<p>동법 제73조제2항, 제3항</p> <p>동법 제81조제2항, 제4항 제5항</p> <p>「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 제3항</p> <p>동법 제8조제3항, 제6항</p> <p>동법 제16조</p> <p>동법 제17조제2항</p> <p>동법 제33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35조</p> <p>동법 제72조</p> <p>동법 제73조제2항, 제3항</p> <p>동법 제81조제2항, 제4항, 제5항</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관 광 산업과	<p>4. 관광지 등의 개발과 관련한 다음 권한</p> <p>가. 관광지(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변경지정 신청</p> <p>나.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 작성 및 변경조성 계획 작성</p> <p>다.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의 고시</p> <p>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p> <p>마. 관광지 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금액</p>	<p>동법 제50조제1항, 제3항</p> <p>동법 제52조제1항</p> <p>동법 제52조제3항</p> <p>동법 제53조제3항</p> <p>동법 제64조제2항</p>	시장·군수

농수산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농업 정책과	1.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지관리 (도지사의 허가·협의 처분건)	「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시장·군수
친환경 농업과	1. 공동방제비용 부담명령서 교부 2. 농약검사공무원증 발급교부	「식물방역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시장·군수
농산물 유통과	1.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수거 또는 조사 2.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2항 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8조 동법 제38조	시장·군수
농촌 개발과	1.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등록시 수원공소재지 시·군에 등록 2.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단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3. 농업기반시설의 용도 폐지 (단 한국농촌공사 구역 내의 시설물은 제외)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1조	시장·군수
축산 경영과	1. 보호가축의 지정·고시 2.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허가 3.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 약사 등 변경신고 수리 4.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휘·감독 5. 가축 전염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 보고서 청구 6.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증 교부 7.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자의 허가, 등록사항 보고 8.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축산법」 제8조제1항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0조 동규칙 제20조제3항 「수의사법」 제21조 동법 제37조 「축산법」 제11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8조 「동물보호법」 제7조제6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 산 진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호수면의 관리 2. 육성수면의 관리 3. 해양수산부의 예산지원으로 도지사가 시설한 수산시설의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4. 지방어항의 사용료 등 징수 5. 어항시설의 사용허가 6. 지방어항의 관리 	<p>「수산업법」 제68조제1항 동법 제71조 「수산시설관리규정」 제6조의별표2</p> <p>「어항법」 제30조 「어항법」 제28조 「어항법」 제4조</p>	시장·군수

환경해양산림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정 책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기오염, 소음·진동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3.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4. 관계기관 협의 5. 대기오염 경보발령·해제 및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조치명령 6. 보고 및 검사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 7.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과태료 부과 징수 등(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대기 환경보전법 제59조 제2항, 제8조, 제9호는 도에서도 병행) 9.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의 금지 및 저황유외의 연료사용의 승인 등 10. 고체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 금지 및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 등 11. 청정연료의 사용 등 12.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수리 및 조치명령 등 13.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 등 14. 배출시설별 배출량 조사대기 	<p>「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제2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제4조제2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5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6조제2항</p> <p>「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p> <p>「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의 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8호의2</p> <p>「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p> <p>「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2</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경 정책과	<p>15. 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업무</p> <p>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 (사업계획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포함)의 허가시장·군수변경허가,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 영업구역 결정시장·군수제한, 허가신청기간 연장, 허가증 교부 등(폐기물의 처리 기준 검토에 대한 인정)</p> <p>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을 정지명령</p> <p>다.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부과·징수 및 금액결정</p> <p>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p> <p>마. 폐기물처리담당자 교육대상자 선발, 통지</p> <p>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수리</p> <p>사. 폐기물재활용신고, 변경신고수리, 신고필증 교부 및 기타 행정처분 등</p> <p>아.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 등</p> <p>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기회부여 및 행정처분의 감경 결정</p> <p>차.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명령, 조치명령,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처리명령의 연기</p> <p>카.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수령, 보험증서 원본 접수, 보험 계약의 갱신 명령</p>	<p>「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제2항제3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11조</p> <p>동법 시행규칙 제23조</p> <p>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제3항</p> <p>동법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43조</p> <p>동법 제44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p> <p>동법 제54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p> <p>동법 제57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p> <p>동법 제43조의2제1항, 2항, 제3항,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p> <p>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 제4항, 제6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환 경 정 책 과</p>	<p>다.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 보증금의 예치, 신청, 접수, 결과통보, 처리 이행보증금정산 통보의 접수, 처리 이행 보증금 반환, 차액반환 이자 가산 등</p> <p>파.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의 거리초과 운반의 경우 폐기물 인계서 접수</p> <p>16.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토양보전 필요지역 토양 정밀조사 실시</p> <p>나. 토지, 건축물 등의 수용 및 사용</p> <p>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p> <p>라. 타인토지에의 출입으로 인한 손실 보상</p> <p>마. 토양오염방지 조치 명령 등</p> <p>17.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 업무</p> <p>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p> <p>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 시설관리</p> <p>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p> <p>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p> <p>마.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 조치</p> <p>바. 공원보호구역의 행위허가</p>	<p>동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제9항</p> <p>「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p> <p>「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4항</p> <p>동법 제7조제1항</p> <p>동법 제8조</p> <p>동법 제9조</p> <p>동법 제15조제1항</p> <p>「자연공원법」 제3조</p> <p>동법 제19조</p> <p>동법 제20조</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4조</p> <p>동법 제25조제3항</p>	<p>시장·군수</p> <p>시장·군수 (팔공산 도립공원 구역은 제외)</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p>환경 정책과</p>	<p>사.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허가 아.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자. 부당이득금의 징수 차. 금지행위의 단속 카.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타. 자연자원의 조사 파.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하.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처분 거. 대집행 너.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더. 허가에 관한 협의 러.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p> <p>18. 건설폐기물처리업 및 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사무</p> <p>가.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허가의 취소 등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승인 다.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라. 과징금의 처분 등 마.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변경승인) 및 신고(변경신고)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완료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개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p>	<p>동법 제37조</p> <p>동법 제38조</p> <p>동법 제38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36조</p> <p>동법 제29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1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71조</p> <p>동법 제72조</p>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25조</p> <p>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p> <p>동법 제23조</p> <p>동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5조</p> <p>동법 제27조</p> <p>동법 제28조</p> <p>동법 제29조</p>	<p>시장·군수</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환 경 정책과	<p>아.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p> <p>자. 권리·의무의 승계 등</p> <p>차. 휴·폐업 등의 신고 및 보고 검사 등</p> <p>카.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p> <p>타. 방치폐기물의 처리</p> <p>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 한 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 이 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p> <p>하. 청문</p> <p>19.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p> <p>나. 단속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p> <p>다. 공회전 단속업무</p> <p>20.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 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선명령</p> <p>나. 보고 및 검사 등</p> <p>다. 과태료 부과징수</p>	<p>동법 제30조 제3항</p> <p>동법 제31조</p> <p>동법 제33조, 제34조</p> <p>동법 제41조</p> <p>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p> <p>동법 제43조</p> <p>동법 제45조, 제46조</p> <p>동법 제57조</p> <p>「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경상북도자동차공회전제함에 관한 조례」 제10조</p> <p>동법 제36조의3, 동조례 제10조</p> <p>동법 제36조의3, 동조례 제10조</p> <p>「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p> <p>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p> <p>동법 제16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수 질 보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수종말처리시설(동시설에 직접 연결된 하수관거 및 펌프장을 포함)이외의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2.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의 설치공사등에 대한 공사중 자변경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3. 오염물질 누출, 투기행위자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대집행 	<p>「하수도법」 제6조제2항</p> <p>동법 제36조</p> <p>「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 제4항</p>	시장·군수
해 양 정책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항만에 대한 시설의 사용 및 이용 허가 2. 동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징수 및 사용료 면제 3. 동 항만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의 시행 명령 4. 동 항만내의 비상재해시의 조치 5. 동 항만내의 인·허가 자에 대한 명령위반시의 처분 6. 동 공익을 위한 처분 	<p>「항만법」 제27조제1항</p> <p>동법 제27조제2항</p> <p>동법 제9조제2항</p> <p>동법 제46조</p> <p>동법 제59조</p> <p>동법 제60조</p>	시장·군수
산림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 2. 영림기술자 배치 3. 학술연구 등을 위한 야생조수 포획허가 4. 청원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단, 도유림의 경우는 제외)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p> <p>「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산림과	<p>5.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직원의 배치</p> <p>나. 직원배치 보류 중지 등</p> <p>6. 조수보호구 설정 및 해제</p> <p>가. 조수보호구 설정</p> <p>나. 조수보호구 설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p> <p>다. 조수보호구 설정으로 인한 손실 보상</p> <p>7. 조수의 수출·입 허가</p> <p>가. 조수의 수출·입 허가</p> <p>나. 수입조수 양도 등의 신고수리</p> <p>8. 시군에 배치하는 조수보호원에 관한 사항</p> <p>가. 조수보호원의 임명 및 해임</p> <p>나. 조수보호원증 발급</p> <p>9. 수렵자에 대한 보험가입</p> <p>10.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에 관한 사무</p> <p>가.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관리</p> <p>나. 산림유전자원보호림내 행위제한</p> <p>11. 보안림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안림안에서의 제한</p> <p>12. 운전면허 등의 취소·정지 및 차량에 대한 처분</p>	<p>「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p> <p>동법 제6조</p>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내지 제6항</p> <p>동법 제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7조</p> <p>동법 제25조제1항</p> <p>동법 제25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52조</p> <p>「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5조의4</p> <p>동법 시행규칙 제12조</p> <p>동법 제3조제6항</p> <p>「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제3항, 제7항,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및 제3항</p> <p>동법 제45조</p> <p>동법 제62조</p> <p>동법 제94조</p>	시장·군수

보건복지여성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건 위생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군전염병예방을 위한 「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권한 2. 제1군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3. 현지 전염병 방역 4. 제3군 전염병 요양비 징수 5. 의약품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6.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 및 변경 허가 등 7. 의약품 등 판매업의 허가증 갱신·재교부, 반납 8. 약종상, 한약종상, 매약상의 허가증 교부, 허가대장 비치 영업소의 이전 허가 9. 마약류 도매업자의 판매 제한자에 대한 판매승인 10.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11. 마약취급자의 명부등재 및 허가증 등의 교부·재교부 12. 동 휴·폐업 신고 및 재개업 신고 13. 마약류의 사고 보고 14. 마약류취급 자격상실자의 양도 승인 15. 마약류취급업무 허가·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 16. 몰수마약류의 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 17.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 등 신고 수리 18. 마약취급자 명부에 관련사항 기재 19. 마약류 소매업자의 판매 보고 처리 	<p>「전염병예방법」 제39조제1항</p> <p>동법 제42조제1항</p> <p>동법 제42조제1항</p> <p>동법 제52조</p> <p>「약사법」 제26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p> <p>「약사법」 제35조제2항</p> <p>「약사법」 제7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93조, 제96조</p> <p>「약사법」 부칙 제4조</p>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p> <p>동법 제6조제2항</p> <p>동법 제7조</p> <p>동법 제8조</p> <p>동법 제12조</p> <p>동법 제13조</p> <p>동법 제44조</p> <p>동법 제53조</p> <p>동법 제8조제3항</p> <p>동법 제8조</p> <p>동법 제29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보 건 위생과	<p>20.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 발행·교부내용 작성·비치</p> <p>21. 간호보조원, 의료유사업자, 안마사 및 안마시술소에 대한 법규위반시 행정처분</p> <p>22. 예방접종약 등의 용도변경 및 폐기처분</p> <p>23.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독업허가 및 변경신고 나. 소독업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수리 다. 소독업영업정지·영업소 폐쇄</p> <p>24. 기증물품의 용도 증명</p> <p>25. 도입물품의 사후 관리</p> <p>26.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와 명령</p> <p>27.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전염성 결핵환자의 의료</p> <p>28.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취소 등</p> <p>2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p> <p>30. 이·미용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다만, 면허증 최초교부 시도와 현 주소지의 시도가 다른 경우에 재교부는 최초 교부 시도에서 교부하고 '83. 7월 이후 교육기관이 수후 면허증을 발급받은 자는 최초교부 당시의 주소지의 시군·구에서 재교부함)</p>	<p>동법 제10조 동법 시행령제7조</p> <p>「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7조</p> <p>「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p> <p>「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동법 제40조의4</p> <p>동법 제40조의8조</p> <p>「관세법」 제28조 및 제28조의5 제1항제2호</p> <p>「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p> <p>「의료법」 제48조제1항</p> <p>「결핵예방법」 제29조</p> <p>「공중위생관리법」 제7조</p> <p>「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2항</p> <p>「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여 성 가족과	1. 윤락행위예방 및 요보호자의 선도 조치 2. 청소년수련시설(민간시설에 한 합)에 관한 다음 권한 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나. 청소년수련시설의 등록 다. 시정명령 라. 허가취소 마. 청문 바. 보험가입 사. 수련시설의 폐지 아.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시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윤락행위등방지법」 제9조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제1항 동법 제31조의2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의2 동법 제38조제3항, 제4항	시장·군수

건설도시방재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획과	<p>1. 전문건설업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p> <p>나.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수첩의 교부·재교부와 기재 사항 변경 신청의 접수</p> <p>다. 건설업의 양도, 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p> <p>라. 보고·조사·검사, 재무관리 상태의 진단 및 자료 제출의 요구</p> <p>마. 시정명령·지시</p> <p>바.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p> <p>사.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p> <p>아. 청문</p> <p>자. 과태료의 부과·징수</p> <p>차.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보관</p> <p>카. 건설업등록증의 교부 등</p> <p>2. 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증 법 제16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관한 다음 권한</p> <p>가. 실시계획 승인</p> <p>나.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p> <p>다.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협의</p> <p>라.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마. 국·공유재산의 용도 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p>	<p>「건설산업기본법」 제9조</p> <p>동법 제9조의2</p> <p>동법 제17조</p> <p>동법 제49조의제1항 내지 제3항</p> <p>동법 제81조</p> <p>동법 제82조</p> <p>동법 제83조</p> <p>동법 제86조</p> <p>동법 제101조,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p> <p>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p> <p>동법 시행규칙 제9조</p> <p>「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p> <p>동법 제19조의제2제1항</p> <p>동법 제21조제2항</p> <p>동법 제26조제3항</p> <p>동법 제27조제2항</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 검사를 위한 검사 의뢰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보완 시공 등 조치명령 아. 사업시행자의 업무에 대한 보 고 지시 및 검사(상기 가호 내지 사호에관한 다음 권한) 자.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 처분 및 청문·고시(상기 가호 내 지 아호에 관한 권한) 3. 도시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 중 다음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및 고시 가. 도로(도시지역내 시는 중로 이하 군 은 소로 이하,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중로 이하 도로법상 시·군도 이하) 나. 학교(고등학교 이하) 다. 공원(어린이공원) 라. 도서관(국가,도단위 제외) 마. 주차장 바. 궤도 사. 삭도 아. 시장 자. 공공청사 차. 수도 카. 하수도(종말처리장 제외) 타. 도축장 파. 방풍설비 하. 사방설비 거. 방화설비	동법 제37조제2항 동법 제37조제5항 동법 제47조제1항 동법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및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획과	너. 방조설비 더. 연구시설 러. 문화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어. 광장(단,교통광장은 시는 중로 및 시도, 군은 소로 및 군도이 하에 접한 광장에 한함) 저. 하천(소하천정비법상 소하천) 처. 공공공지 커. 운동장(종합운동장 제외) 터. 전기공급시설(변전소에 한함) 퍼. 장례식장 허. 저수지 고. 가스공급설비(정압, 배관시설) 노. 방수설비 도. 유수지 로. 폐차장 모.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보. 청소년수련시설 소. 공동묘지 오. 화장장 조. 납골시설 초. 체육시설(9홀 이상 골프장, 스키 장, 승마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코. 폐기물처리시설(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생활폐기물 시설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및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 획 과	<p>4. 경미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의 변경결정 및 고시</p> <p>5.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p> <p>6.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p> <p>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p> <p>8.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고시</p> <p>9.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 계획인가(변경,폐지포함). 고시·협의권 및 서류의공람</p> <p>10.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필증교부, 공사완료 공고와 협의권</p> <p>11. 도시개발구역과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및 고시</p> <p>12.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p> <p>13. 도시개발사업의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는 권한</p> <p>14. 도시개발사업시행의 신탁 개발 승인</p> <p>15. 실시계획 인가 및 변경인가, 인가의 고시, 실시계획의 협의</p> <p>16. 선수금 승인</p> <p>17.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제출 받을 권한</p> <p>18.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및 준공 검사 참여 요청</p> <p>1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 필증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p>	<p>동법 제30조제5항, 제6항</p> <p>동법 제33조</p> <p>동법 제48조</p> <p>동법 제32조</p> <p>동법 제53조</p> <p>동법 제88조, 제90조 내지92조</p> <p>동법 제98조</p> <p>「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p> <p>동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p> <p>동법 제11조 제3항</p> <p>동법 제12조 제4항 동법 제17조, 제18조</p> <p>동법 제24조</p> <p>동법 제25조</p> <p>동법 제49조 제1·2·3항</p> <p>동법 제50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시 계획과	20. 준공검사에 따른 협의 2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2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2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2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25.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 2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조치 27. 청문 실시 28. 도시공원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 및 고시	동법 제51조 제3항 「도시개발법」 제52조 동법 제57조 제1·3·4항 동법 제65조 제3항 동법 제67조 제1항 동법 제72조 제1항 동법 제73조 동법 제7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제90조 내지 제92조	시장·군수
도 로 철도과	1.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 도로 제외) 2. 동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3. 동 권리, 의무의 양도양수 허가 4. 동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처리 5. 회사의 발기인으로 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처리 6.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처리 7. 도로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8. 동 점용허가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9. 지방도가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 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 및 유지조치 10. 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로 인한 도로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 하는 조치	「도로법」 제40조제1항 동법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동법 제74조제1항 동법 제75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로 철도과	11. 지방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공작물의 단속 12. 지방도의 점용자의 점용공사의 준공검사 13. 동 축목의 재식 및 별채허가 1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정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 15. 동 도로의 시설인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색도의 통행료 징수 16. 동 도선장의 설치 허가 17. 동 도로의 순회자에 대한 부담금 징수 18. 지방도의 수선 및 유지업무 19. 동 구조 보전과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통행 제한 20. 동 도로와 관련된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21.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22.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의무 23. 건설기계 등록 24.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25. 등록의 말소 26.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 2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 28. 지방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공사 및 유지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과 사용 및 장애물 제거 나. 연도구역 내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설, 축목 또는 토석의채취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동법 제50조제4항 동법 제25조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 제50조제6항 동법 제35조 동법 제2조제2항 및 제40조 동법 제67조제1항 동법 제24조 동법 제54조 동법 제78조 동법 제49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동법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48조제1항 「도로법」 제51조제3항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로 철도과	<p>다. 연도구역 내에서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건축물 기타 공작물 제거, 변경, 조립 기타 풍치유지상 필요한 조치</p> <p>라. 도로환경 정비</p> <p>마. 지방도 폐도관리, 용도 변경 또는 폐지</p> <p>바. 지방도 폐도에 대한 사용, 수익허가</p> <p>29. 도가 시행하는 지방도로사업 편입용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 중</p> <p>가. 토지, 물건조서 공부대조 확인</p> <p>나. 보상협의회 구성 운영</p> <p>다. 편입토지 분할 측량 및 편입 토지물건의 감정평가 의뢰</p> <p>라. 보상이 사정 및 보상액 산정</p> <p>마. 보상청약, 협의, 계약체결, 보상금의 지급</p> <p>바. 보상계획의 개별통지</p> <p>사. 보상계획의 열람</p> <p>아. 이의신청 접수</p> <p>자. 이의신청 시정</p> <p>차. 편입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p> <p>30. 지방도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업무중</p> <p>가. 체불용지의 소유자 및 보상 여부 확인</p> <p>나. 체불용지의 감정평가 의뢰</p> <p>다. 보상액 산정 및 결정</p> <p>라. 보상금 지급 및 대상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업무</p>	<p>「도로법」 제51조제4항</p> <p>「도로법」 제22조</p> <p>「지방재정법」 제8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87조</p> <p>동법 제82조제1항</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내지 제69조</p> <p>동법 시행령 제7조</p> <p>동법 시행령 제44조</p> <p>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p> <p>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p> <p>동법 제16조, 제17조, 제63조</p> <p>동법 시행령 제8조</p> <p>동법 제15조제1항</p> <p>동법 제15조제3항</p> <p>동법 제15조제4항</p> <p>「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8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p>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도 로 철도과	31.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 지 및 등록번호표 재부착 32. 건설기계 정기점검, 정기점검 연기 33. 건설기계 구조변경 34. 등록번호표 반납 35. 건설기계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및 새김명령 등 36. 건설기계조종사의 면허대상 비치 37.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및 면허증 반납 38. 건설기계 과태료처분 및 의 견진술, 보고검사 등 39.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40.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연결 허가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건설기계관리법」 제10조, 제1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 제36조, 제44조 동법 제34조의 2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시장·군수
치 수 방재과	1.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 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지방 1, 2급 하천) 2. 하천관리 상황의 점검 및 유지 보 수 시정 등 조치(지방 1, 2급 하천) 3. 하천부속물의 관리규정 (지방 1, 2급 하천) 4. 하천유수의 사용·관리 및 기록 보관(지방 1, 2급 하천) 5.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 (지방 1, 2급 하천) 6. 지방 1, 2급 하천의 경미한 보수	「하천법」 제4조제2항 동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28조, 제30조	시장·군수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치 수 방재과	7. 비관리청의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관리(지방 1, 2급 하천)	동법 제30조	시장·군수
	8. 동 하천공사의 착수신고 및 준공유지 (지방 1, 2급 하천)	동법 제30조, 제31조	
	9. 하천의 점용 허가(법제33조제1 항 제4호의 공작물중 교량(세 월교포함) 취입보, 하천 복개제 외) 및 고시(지방 1, 2급 하천)	동법 제33조	
	10. 동 점용하천의 하천점용에 관한 공사의 대행(지방 1, 2급 하천)	동법 제36조	
	11. 동 점용료 등의 징수(국가하천 의 점용료 사용료 징수포함)	동법 제38조	
	12. 지방 1, 2급 하천 예정지 등에 서의 행위 허가	동법 제40조	
	13. 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동법 제58조	
	14.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동법 제64조	
	15. 동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공익을 위 한 처분이나 조치명령	동법 제65조	
	16. 하천감시원 임명, 위반사항 조치명령 권한	동법 제68조 「청원경찰법」 제5조제1항	
	17. 동법에 필요한 보고, 출입, 검사의 권한	동법 제69조제1항	
	18. 동 하천관리를 위한 타인 토지의 출입, 사용, 장애물의 변경, 제거	동법 제70조	
	19. 하천에 관한 금지구역의 지정 및 공고	동법 제71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50조	
	20. 하천의 사용 금지 및 공고	동법 제72조	
	21. 동 원상회복, 면제, 비용의 예치	동법 제73조	
	22. 동법령에 의한 하천구역에 편입 지정된 토지의 조사, 공고 및 협의	동법 제74조 동법 시행령 제53조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치 수 방재과	23. 동법에 의한 폐천부지 등의 고시 (지방 1, 2급 하천) 24. 동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지방 1, 2급 하천) 25. 도유 잡종재산의 처분(하천법 제78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 받은 폐천부지에 한함) 26. 지하수의 개발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등록 등 나.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 다. 등록의 취소 등 라.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마. 지하수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취소 등 바.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27. 하천편입토지보상청구 28. 보상대상자의 결정 29. 보상금액의 산정 30. 보상금 지급의 통지	동법 제7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동법 제81조 「지방재정법」 제83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지하수법」 제22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17조 법률제3782호하천법증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시장·군수
건 축 지적과	1.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승인취소에 관한 권한 (단,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사업과 16층 이상으로서500세대 이상이거나 1,000세대 이상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 2. 감리자의 지정·보고, 감리자 교체 감리업무지정제한 등에 관한 권한 3. 주택건설사업의 착공신고서 처리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24조 「주택법」 제16조	시장·군수

행정지원분야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치행정과	1. 2급 및 3급의 비밀취급의 인가	「보안업무규정」 제7조제2항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10조 제2항	시장·군수
세정과	1. 도 수입증지의 판매인 지정	「경상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시장·군수
회계과	1. 도유재산 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도유잡종재산의 대부 나. 도유재산(행정, 보존, 잡종)의 보존 관리 및 실태조사(도 본청 및 사업소에서 직접 사용 관리하고 있는 행정 및 보존재산은 제외) 2. 은닉된 도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3. 도유재산중 도지사가 매각 승인한 잡종재산의 처분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경상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64조 동조례 제3조	시장·군수

[별표 2]

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자 치 행정과	1.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 회내 전보임용 2.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 급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3.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 기간 연장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동법 제6조제2항 동법 제6조제2항	도 의 회 사 무 처 장

[별표 3]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 및 보직발령권 단, 농업기술원의 본원과 시험장간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2. 연구관 및 지도관의 전보권 단, 농산물원종장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 3. 연구사 및 지도사의 임용권(승진후 보자 명부작성권 포함)단, 농산물원종장 및 잠사곤충 사업장은 제외 4. 연구직공무원의 직속기관내 전보권. 단, 보건환경연구원 본원과 지원간은 제외 	<p>「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p> <p>「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p>	<p>직속기관장 (공무원 교육원 제 외)</p> <p>농 업 기술원장</p> <p>직속기관장</p>
소 방 행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학교 또는 소방서소속 지방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호봉 확정 및 승진 	<p>「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p>	<p>소방학교장, 소방서장</p>
방 호 구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업(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에 관한 권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 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p>「소방시설공사법」 제4조및제6조 동법 제7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4조제3항</p>	<p>소방서장</p>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입기관
방 호 구조과	<p>2.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등에관한 사항</p> <p>가.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나. 시험자의 등록신청, 등록증교부 다. 시험자의 등록취소, 공고, 등록증 회수 라. 시험자의 중요사항 변경신고</p> <p>3. 소방시설관리업에 관한 사항</p> <p>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및 변경</p> <p>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과징금 처분 마.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p> <p>4.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p> <p>가. 방염처리업 등록 및 변경</p> <p>나. 지위승계신고 수리 다.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라.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p>	<p>「위험물안전관리법」 제16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62조 동법 제16조제3항</p> <p>「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 동법 제32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동법 제29조제3항</p> <p>「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6조 동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14조제3항</p>	소방서장

[별표 4]

사업소장 및 지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자 치 행정과	1.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과 연구사 지도사의 본소와 지소(출장소 등 본소의 허부기관 포함)내의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2항	사업소장 및 지소장
축 산 경영과	1. 축산물 작업장의 시설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가축위생 시험소장 (지소장포함)
환 경 정책과	1.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업무 (팔공산도립공원구역에 한함) 가. 공원구역내 산림 기타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나. 도립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다.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허가 및 공원시설 관리허가 라. 공원구역의 행위허가 마.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면제승인, 예치비용관리, 원상회복 조치 바. 공원보호구역의 행위허가 사.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 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 사용료징수 허가 아. 공원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 자. 부당이득금의 징수 차. 금지행위의 단속	「자연공원법」 제3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0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제4항 동법 제37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27조	팔공산 도 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소관별	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환 경 정책과	카. 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타. 자연자원의 조사 파.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하. 법령등 위반에 대한 처분 거. 대집행 너. 공익을 위한 처분 더.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청 러. 허가에 관한 협의 머. 타인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28조 동법 제3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 동법 제31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2조	팔공산 도 립 공원관리 사무소장
도 로 철도과	1. 도로표지 정비 2. 지방도 접도구역내 도로변 휴게소 등 시설물 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3. 지방도 점용허가에 따른 협의 4. 지방도에 따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신설연결허가 협의	「도로법」 제52조 「도로법」 제50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도로법」 제40조제1항 「도로법」 제54조의6제2항	종합건설 사업소장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대구경북연구원 육성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 ①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대구경북연구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경상북도 및 시·군(이하 “도 및 시·군”이라 한다)과 그 외의 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3조(출연금) 도 및 시·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 및 시·군은 연구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조(연구·조사의 위탁) ①기금의 출연자와 그 이외의 자는 연구원에 연구·조사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위탁료를 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도 및 시·군이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적으로 연구원에의 위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3. 2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
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이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 제출) ①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받아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의 추천 및 재산운영·관리) 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경영평가 등)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월 이내에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한다.

1. 경영평가 전문기관
2. 회계법인
3. 기타 도지사가 연구원의 평가와 관련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9조(검사 및 보고) ①도지사는 연구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원에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공) ①연구원은 도 및 시·군에 대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연구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의 의무) 연구원의 임원 및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규정)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대구경북연구원의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수 정 조 서

개 정 안	수 정 안
<u><신설></u>	<u>제3조(출연금)</u> 도 및 시·군은 제2조의 기금 및 연구원의 시설비와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u><제3조 내지 제12조></u>	<u>제4조 내지 제13조</u>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22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의 서비스 제고와 운수업체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중 자동차대여업을 제외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2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법 제37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대상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법에 규정된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가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2.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도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수사업자는 “별지서식”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 ①도지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재정보조를 받은 운수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재정지원으로서의 자금의 보조에 관한 절차·방법·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중단)도지사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5.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와 운수사업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①도지사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정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이라 한다)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 결정
2. 제8조 규정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모범운수사업자의 사기진작 등) 여객자동차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 등에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포상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 청 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체명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사업명칭				
면허종류		면허일자		면허번호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 받고자 하는 사유				
총사업비 원				
지원신청 금 액		원	자기자본 부 담 액	원
사업기간				
<p>「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경상북도지사 귀하</p>				
거래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 			

수 정 조 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생략)</p> <p>②(생략)</p> <p>③위원회의 구성, 임기, 회의 등은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p>	<p>제9조(위원회 운영)①(좌동)</p> <p>②(좌동)</p> <p><삭제></p>
<p>(별지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 사용계획서 3. 법인 등기부등본 4. <신설> 5. <신설> 6. <신설></p>	<p>(별지서식)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 신청서 첨부서류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재무제표(결산서) 5. 연료사용량 6. 차량보유대수</p>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경상북도 노인전문간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창천리 42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운영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센터 시설물의 관리 운영
3. 입소자 단기 요양보호 및 간호·재활 서비스 실시
4. 주간보호시설 운영
5. 간병전문요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운영
6. 기타 입소노인 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입소대상) ①센터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생활보호대상노인
2. 생활보호대상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3. 기타 도지사가 센터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인원이 정원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자를 입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실비입소자가 정원의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운영) 센터의 운영은 경상북도지사의 명을 받아 센터소장이 관장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인력)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공무원 및 시설종사자를 둔다.

①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다.

②시설종사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직원배치기준”에 의한다. 단, 소속공무원이 직원배치기준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종사자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시설종사자의 정원은 간호사 3, 영양사 1, 생활지도원 20, 조리원 2, 위생원 2, 관리인 1, 운전원 1로 한다.

④시설종사자의 복무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며,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제7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기준에 의한다.

제8조(이용료) ①이용료는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 한도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

②제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한다.

②이용료 및 후원금 등 수입금액은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관계법령 등 일반법령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라 함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여성단체”라 함은 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단체를 말한다.
3. “여성관련 시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에 따른 도 소속 행정기관과 동법 제82조에 따른 도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5. “투자기관”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자본금의 2

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도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적 조치)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

제6조(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 계획을 기초로 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 가. 양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지원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그 밖에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제5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시행에 관한 사항

5.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예산정책의 수립) 도지사는 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주요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및 도가 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에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 ①도지사는 관련부서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 중 양성평등 실현 등에 공이 큰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여성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 ①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분리통계의 구축) 도지사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도정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 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2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3조(도정참여의 확대)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자문·의결기관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종 자문·의결기관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4조(공직참여 촉진) ①도지사는 양성의 공직참여 기회를 균등히 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시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도지사는 가정·학교·평생교육 등에서 양성평등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희롱 방지 등 성차별의 개선)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문서·회의·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모성권리의 보장) ①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모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등)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경제활동의 지원) ①도지사는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도지사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가출여성

그 밖에 보호를 요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노인인 여성, 농어촌 거주 여성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영유아 보육 등) ①도지사는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보육시설의 확충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등) ①도지사는 성폭력, 가정폭력 및 성매매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방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의 국제협력) 도지사는 국제기구와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경상북도 여성발전기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자원봉사활동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6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여성정책위원회

제27조(설치)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여성정책 추진 관련 주요사항

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반드시 여성 1인 이상이 포함 되도록 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기획조정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경상북도의회 여성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3.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
4. 기타 도지사가 여성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여성 가족과장이 된다.

제30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

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수당 등) 도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

제37조(기금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제38조(기금의 조성 및 확대)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도지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
3.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사업
4.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5.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6.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기금의 관리·운영) ①기금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그 연도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기타 수익금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전액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2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정책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경상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제45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33조에 따른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6조(설치지역 및 기준) ①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우선 설치한다.

1. 여성인구 다수거주 지역
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
3.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지역

②센터는 82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지역여건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7조(주요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취업·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운영
2. 취업 및 창업지원사업 :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상담·알선
3. 후생복지사업 : 수강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운영, 기타 휴게실, 식당 등 이용자 편의시설 운영
4. 기타 여성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8조(이용대상) 센터는 모든 여성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제49조(비용의 수납) ①센터는 센터 이용자로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②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0조(운영의 위탁) ①도지사는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여성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여성단체는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여성단체를 말한다.

제51조(관리운영규정) ①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인사·복무·보수·회계·물품·비용의 환불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당해 관리운영 규정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비용 등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3조(운영위원회) ①센터에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인원·자격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사항·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5조(관계법령의 적용) ①센터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 시설로 본다.

②센터는 취업 정보의 제공, 상담·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업안정법령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7장 경상북도여성상

제56조(경상북도여성상) 도지사는 양성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하여 경상북도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

제57조(시상부문) 여성상은 올해의 경북여성·양성평등·여성복지등 3개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올해의 경북여성 부문 수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0조(시상시기) ①여성상은 매년 여성주간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61조(공적심사위원회) ①여성상 수상자를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경상북도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은 여성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그 해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된다.

제62조(수상대상자의 선정)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정한다.

제8장 보 칙

제6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여성발전기본법」, 「경상북도사무위탁조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등을 준용한다.

제6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 ③(여성발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 ④(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발전기본법 부칙 제3조에 의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수정안 내용

당초 조례안	수 정 안
<p>제7조(주요정책의 분석·평가)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주요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p> <p>②도지사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p>	<p>제8조(주요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등)</p> <p>①----- ----- -----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 ----- ----- 하며,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 신 설 ></p>	<p>제9조(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등)</p> <p>①도지사는 관련부서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수렴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자 중 양성평등 실현 등에 공이 큰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p>
<p>제8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등)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도와 소속기관에서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제10조(여성관련 정보제공 및 문제의 조사)</p> <p>①도지사는 여성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기초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당초 조례안	수 정 안
<p>< 신 설 ></p>	<p>제11조(성별분리통계의 구축) 도지사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도정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 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p>
<p>제9조(여성주간행사) 도지사는 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p>	<p>제12조(여성주간행사) ----- ----- ----- ----- -----지원하여야 한다.</p>
<p>제11조(공직참여 촉진) ① (생 략) ②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4조(공직참여 촉진) ① (좌 동) ②----- ----- -----양성----- -----보직관리 및 승진임용 시-----</p>
<p>제12조(남녀평등의식 제고) ①도지사는 가정·학교·평생교육 등에서 남녀평등의식의 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경상북도지방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에 관한 교과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5조(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양성----- ----- ----- ②----- -----양성-----</p>

당초 조례안	수정안
<p>제14조(모성보호의 강화) ①도지사 소속기관의 장 및 투자기관의 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u>여 성이 특별히 보호되도록 노력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② (생 략)</p>	<p>제17조(모성권리의 보장) ①----- ----- -----<u>모성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고,</u>----- ----- ----- ② (좌 동)</p>
<p>제17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 ② (생 략) ③<u>노인인 여성과 이주 외국인 여성, 농어촌 거주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 하여야 한다.</u></p>	<p>제20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 ② (좌 동) ③<u>노인인 여성, 농어촌 거주 여성 및 외국에서 이주한 여성의 복지증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21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 남 녀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도내에 소재하 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경상북도 여성발전기 금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 -----<u>양성</u>----- ----- ----- ----- ----- ----- -----</p>
<p>제2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한다. ②<u>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 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u>위원은 기획조정본부장, 보건복지 여성국장과 여성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제2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u>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 장은 반드시 여성 1인 이상이 포함 되도록 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③<u>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 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u></p>

당초 조례안	수 정 안
<p>④ (생 략)</p>	<p>1. 기획조정본부장, 보건복지여성국장 2. 경상북도의회 여성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3.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에서 <u>추천을 받은 자</u> 4. 기타 도지사가 여성정책에 관하 <u>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하다고 인정하는 자</u> ④ (좌 동)</p>
<p>제2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u>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u> ② ~ ③ (생 략)</p>	<p>제32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u>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 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u> ② ~ ③ (좌 동)</p>
<p>제3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u>지득한</u> 기밀 등을 누설한 때 5. (생 략)</p>	<p>제34조(위원의 해촉) ----- ----- ----- 1. ~ 3. (좌 동) 4. -----<u>알게 된</u>----- ----- 5. (좌 동)</p>
<p>제34조(기금의 설치 등) ①도지사는 <u>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u> ② (생 략)</p>	<p>제37조(기금의 설치 등) -----<u>양성</u>----- ----- ----- ----- ----- ② (좌 동)</p>
<p>제3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u>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 3. (생 략)</p>	<p>제38조(기금의 조성 및 확대) 기금은 다음 각 <u>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도지사는 기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1. ~ 3. (좌 동)</p>

당초 조례안	수정안
<p>제3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략) 4. <u>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u> 5. (생략) 6. 기타 여성발전 및 가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제39조(기금의 용도)-----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좌 등) 4. <u>양성</u>----- 5. (좌 등) 6. 기타 <u>여성발전</u>----- -----
<p>제4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p> <p>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u>기금운용 계획서</u>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제4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 ----- -----.</p> <p>②----- <u>기금운용계획안과</u> ----- -----.</p>
<p>제53조(경상북도여성상) 도지사는 남녀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경상북도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p>	<p>제56조(경상북도여성상) -----<u>양성</u>----- ----- -----<u>자</u>를----- ----- -----.</p>
<p>제54조(시상부문) 여성상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여성을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장한여성상</u> 2. <u>남녀평등상</u> 3. <u>여성복지상</u> 	<p>제57조(시상부문) 여성상은 올해의 경북여성·양성평등·여성복지등 3개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5조(수상대상자) 여성상의 수상대상자는 시상 예정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u>여성</u>으로 한다. 다만, <u>장한여성상</u> 수상대상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58조(수상대상자) ----- ----- ----- -----<u>자</u>로----- -----<u>올해의 경북여성 부문</u>----- -----.</p>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

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취득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대상자가 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 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가 제3조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부동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기타 비영리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9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당해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0조(사립학교의 교육용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 및 선박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학교의 실험·실습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4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1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시외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이전등록하거나
할부매입 등의 사유로 저당권설정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버스로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12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자동차관
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
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건설기계 매매업으로
신고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취득
세를 면제한다.

③ 「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가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기계장비·중고선박 및 중고항공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13조(화물자동차의 택배차 전환에 대한 감면) 화물운송사업자가

「용달·택배간 전략적 제휴센터」(이하 “전략적 제휴센터”라 한다)를 통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구조를 소량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인의 책임으로 배달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전략적 제휴센터”를 통해 운송 계약후 당해 차량을 1년 이내 계약해지, 매매 또는 용도변경 시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5장 서민주택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교부일 이전에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하는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당해 공동주택을 건축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②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 [당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증여를 제외한다)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월(보존 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주택을 분양하는 자가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

③제2항에서 “1가구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 및 호주승계인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임대사업자(임대용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주(「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 의무기간을 경과한 후 분양하는 건설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당해 공동주택(「주택법」 제8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내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에 의한 공무원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 취득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된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건축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부터 2월, 법령의 규정이나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주택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6조(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동법 제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최초 시행인 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제17조(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부동산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시장정비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2. 시장정비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

③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6장 농어촌지원을 위한 감면

제19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 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
2.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제20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

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취약지 대책사업에 따른 독립가옥집단화사업
2. 분산농지집단화사업
3.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및 수해상습지마을 대책사업

③소도읍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또는 민간출자분(출연분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2조(관광단지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3조(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광산근로자 및 광산지역 복지사업 추진 대책의 일환으로 자금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광산근로자용 사택, 목욕탕, 독서실, 회관 및 공동화장실(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4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6조(기지촌주변 종합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개발사업 대상자가 정비대상 지역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7조(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 또는 당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3년 이상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31조(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에 대한 감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영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건설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자가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 및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8장 보 칙

제32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3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경상북도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제2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세를 감면 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 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2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경상북도세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성 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주 소				
감면내용	세 목	연도/기분	당 초 세 액	감 면 세 액
감면사유	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00조			
<p>경상북도세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 받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인(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지방세 감면 통지

귀하가 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경상북도 세 감면조례」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①년도	②기분	③세목	④과세번호	⑤당초 결정세액	⑥감면 결정세액	⑦차인납부세액	⑧납기한
결정 사유							

끝.

발신명의(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또는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 제5호 및 제5의2호의 규정에 의한 농작물과 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써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농업인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현장을 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당해 지역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피해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피해농업인의 입회 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내역을 조사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액 산정)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시달하고, 시장·군수는 총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도지사가 시달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후 총 피해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피해면적은 재배면적에 관계없이 실제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당해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5조(피해보상) ①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해 도비로 보상하는 금액은 총 피해액으로 하되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 총 피해금액의 50%에 대하여 매년 11월말까지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도지사에게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시장·군수의 교부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는 도비지원 예산이 부족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상의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총 피해면적이 100m² 미만인 경우
 2. 피해농가의 농외소득이 전체 소득의 80% 이상인 경우
 3. 법령 등에서 경작을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4.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5.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기 보상을 받은 경우
-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시행규칙) 피해보상금의 지급절차와 시기 등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금액)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게 할 수 있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동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5.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의 법령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학교의 수업을 전기 또는 전월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 또는 당해 월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⑤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4조 (징수방법) ①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 에 의하여 4기(방송통
신고등학교는 2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다만, 전입학교 급지가 전출학교 급지보다 상위 급지일
경우 전출학교에서 수업료 분기 전액을 징수하고 전입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징수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⑤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5조 (징수기일) ①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당해기 또는 당해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제6조 (수업료 등의 반환) ①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학생이 설립자가 동일한 하위 급지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급지 차액을 반환한다.

③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

하는 학교에서는 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을 포기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한 경우
4. 재학 중인 자가 휴학한 경우
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 (가산금 등) ①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②퇴학처분을 당한 자 또는 자퇴한 자의 수업료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업료 분할 징수표(제4조제1항 관련)

기 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상반기		하반기	
일 자	3. 1~5. 31	6. 1~8. 31	9. 1~11. 30	12. 1~익년 2월말

[별표 2]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제6조제4항 관련)

반환사유발생일	반 환 액	비 고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까지	수업료 또는 입학금 전액	
1분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 이후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내용

조 례 안	수 정 안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 <u>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 <u>그 금액을 반환한다.</u></p> <p>② ~ ④ <조례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u>2007년 3월 1일부터</u> 시행한다.</p>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감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채 등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②교육감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의 20% 이상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교육감은 기금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①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관리국장
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경리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

- 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1. 본청(소속기관 포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본청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①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수정안 내용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소위원회) <생략>	제5조(소위원회) <삭제>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생략>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 다)는 ----- ③ ~ ④ <생략> ⑤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조례안과 같음> ②위원회의 회의는 ----- ----- ③ ~ ④ <조례안과 같음> ⑤위원회의 ----- -----
제7조(심의요청 등) <생략>	제6조(심의요청 등) <조례안과 같음>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교육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② ~ ③ <생략>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①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 -----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8조 제3항의 ----- -----	제9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7조 제3항의 ----- -----
제11조 ~ 제13조 <생략>	제10조 ~ 제12조 <조례안과 같음>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3. 제1관서 :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

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교육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 : 교육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해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관서의 장에게,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당해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③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당해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④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교육감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 다.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 라.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축의 취득·처분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 나. 교육청과 제2관서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용도변경·폐지
- 다. 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매각,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현물출자
- 라. 교육청의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와 사용·수익허가
- 마. 교육청과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②교육장이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당해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2. 당해 관서에 속하는 잡종재산의 관리 및 대부
- 3.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가 생략되는 재산의 용도변경
- 4. 당해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대장가격 2천만원 이하의 건물과 공작물 및 입목축의 취득·처분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에 관한 사무처리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과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본청의 과장(담당관) 중에서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 ②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교육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청에 심의회를 둔다.
1.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관리과장(관리국장이 있는 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과(재무과) 경리(관재)담

당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심의회의 업무) ①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행정 재산으로의 확정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잡종재산의 용도변경
5.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4제2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
4. 다음 각 목의 행정재산·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가.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또는 대장
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나. 일반 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다. 군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
가액 2천만원 이하의 재산

제7조(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8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
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
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무상사용 기간 및 부당한 조건배제) ①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
로 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교육감은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

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교육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처분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처분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제13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보존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16조(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①행정재산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일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교육 본래의 목적과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조례에서 사용료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정한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시 설 명	사 용 료(원)		비 고
	4시간 까지	4시간 초과	
일 반 교 실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1실당
특 별 교 실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체 육 관, 강 당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대 운 동 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테 니 스 장	30,000원 이상	60,000원 이상	
기 타 사 항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을 기준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③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 시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 외에 실제 소요경비는 이를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국가·지방자치단체·산업체등에서 연수, 시험 등의 목적으로

전체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⑤6개월 이상의 장기 사용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장(교육 행정기관장을 포함한다) 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지역 주민들이 건전한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⑦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지된 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⑧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허가받은 자가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허가받은자가 모든 책임을 지며 재산관리관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7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같음할 수 있다.

제18조(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①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보존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보존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보존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

제19조(잡종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대부

제20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1(대부계약의 해지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4호, 제29조제1항제7호, 제30조, 제32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의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한다)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4조(대부료의 요율) ①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교육감이 교육행정목적,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경우
4. 재산관리관이 위탁하는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는 재산
5. 주거용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목축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학교급식법」에 의한 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교실 등 식사장소로 제공되는 시

설은 대가없이 제공할 수 있다.

4. 영 제29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6.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7.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에 이전하는 때
 8.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 ⑥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으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2. 폐교일 이전 5년 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 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 제25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 제26조(토석채취료 등)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입방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당 반

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 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 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당해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 ④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

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⑤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 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8항 및 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로 이전하는 경우
-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경상북도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1,000분의 70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9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전세금은 교육비 특별회계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0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①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목상 전, 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5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 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45
3. 기타의 경우 : 100분의 40

②제1항에 의한 대부료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전년도 대부료 + (금년도 대부료 - 전년도 대부료) × 감액율

제31조 (대부료등의 납기)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 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액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제33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무상계약 포함)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2절 매 각

제34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2. 교육감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교육감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잔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영 제3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영 제39조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

- 곱미터 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7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 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5.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 자의 공유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36조(매각대금 및 사용료·대부료의 사용) ①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절 신탁

제37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5장 공유임야 관리

제38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립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분수림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 상의 분수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청사관리

제41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피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2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 (청사의 설계) ①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7장 관사관리

제44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소속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45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교육감이 사용하는 관사
2. 2급 관사 : 3급 이상 공무원(부교육감급 장학관 포함)과 교육장·본청 직속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
3. 3급 관사 :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46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 사용 기관장 및 학교장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5.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렌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48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49조(사용허가의 취소) 당해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0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2급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단, 1급·2급관사에 한함.)

5. 전기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6. 전화요금(단, 1급·2급관사에 한함.)
7. 수도요금(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9. 취사용 가스 사용료(단, 1급 관사에 한함.)

제51조(사용료의 면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2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인계 인수 등) ①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 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4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 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5(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56조 (실태조사) ①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5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

능한 한 집단화합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6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의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61조(변상금의 부과)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원 이상 : 2년 4회 분납
3. 300만원 이상 : 3년 4회 분납

②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4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 (공유토지의 분필)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

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제66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사용료, 대부료 등의 규정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사용·수익허가, 대부 중인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사용·수익 허가, 대부료(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 산출시 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수정안 내용

조 례 안	수 정 안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생략> ① ~ ③ <생략> ④-----소속 <u>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u>-----</p>	<p>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조례안과 같음>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소속 <u>공무원 중에서 총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등 재산관리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u>-----</p>
<p>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u>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u> <u>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u>----- -----</p> <p>② <생략></p>	<p>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 -----<u>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u> <u>경상북도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u>----- -----</p> <p>② <조례안과 같음></p>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경상북도교육청”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중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여유기구·한시기구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으로 한다.

제3조중 “본청의 과·담당관”을 “본청의 과·담당관, 여유기구·한시기구”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혁신·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중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며, 제7조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8조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10호중 “의료보험”을 “건강·산재·고용보험”으로 하며, 동조제14호 내지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교육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16. 공무원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17. 기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29조제3항중 “제24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경상북도교육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②경상북도교육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한다.

③경상북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④경상북도교육 · 학예에관한중 · 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고, “교육국”을 “교육정책국”으로 한다.

⑤경상북도과학교육심의회구성 · 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⑥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내지 제36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u>경상북도교육청</u>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u>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 <u>본청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실)·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본 청</p> <p>제5조(부교육감)① 생략 ②부교육감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 5. 생략 <u><신설></u></p> <p>제6조(국의 설치) <u>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과 기획관리국을 둔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 칙</p> <p>제1조(목적) ----- ----- ----- ----- -----<u>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u>----- ----- -----.</p> <p>제2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u>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여유기구·한시기구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u>----- -----.</p> <p>제3조(과·담당관의 설치 등)<u>본청의 과·담당관, 여유기구·한시기구</u>-----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 2 장 본 청</p> <p>제5조 (부교육감)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u>6. 혁신·복지에 관한 사항</u></p> <p>제6조(국의 설치) ----- -----<u>교육정책국</u>----- -----</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략 <신설> <신설></p> <p>제8조(기획관리국) 기획관리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p> <p>1. - 4. 생략 5. <u>교육시책, 주요업무계획, 평가, 교육 개혁, 제도개선 업무</u> 6. - 9. 생략 10. <u>예산, 결산, 경리, 용도, 재산, 물품, 방재, 교육시설, 연금, 의료보험 업무</u> 11.- 13.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p> <p>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p> <p>제29조(공공도서관) ①-② 생략 ③ 관장은 제24조 제 1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생략</p>	<p>제7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 -----.</p> <p>1. - 15. (현행과 같음) 16. <u>교육정책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17. <u>기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u></p> <p>제8조(기획관리국) ----- -----.</p> <p>1. - 4. (현행과 같음) 5. <u>삭제</u></p> <p>6. - 9. 생략 10. ----- -----<건강·고용·산재보험>----- ---</p> <p>11.- 13. (현행과 같음) 14. <u>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u> 15. <u>교육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u> 16. <u>공무원 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u> 17. <u>기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u></p> <p>제 4 장 지역교육청 소속기관</p> <p>제29조(공공도서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7조----- -----.</p> <p>④ (현행과 같음)</p>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동조제3호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12조 및 제113조”를 “제57조 및 제58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4항 중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장부의 조제”를 “표준서식의 작성”으로 하고, 동조 중

“조제”를 “작성”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157조”를 “영 제90조”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본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 및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말한다.</p> <p>2. (생략)</p> <p>3. 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p> <p>4.~5.(생략)</p> <p>제9조(물품매입요구등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p> <p>제11조(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2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한다.</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2조(정의)----- -----</p> <p>1. 본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p> <p>2. (현행과 같음)</p> <p>3. 교육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p> <p>4.~5.(현행과 같음)</p> <p>제9조(물품매입요구등의 심사) 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 -----</p> <p>제11조 <삭 제></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④----- ----- -----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장부의 조제)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별로 조제하여야 한다.</p> <p>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의 장부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물품출납원은 그에 속하는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및 제1관서에 있어서는 재무관리과장을, 교육청 및 제2관서에 있어서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p>	<p>제25조(표준서식의 작성) ----- -----작성-----.</p> <p>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90조----- -----.</p> <p>제30조 <삭 제></p>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별표 1] 유치원의 『명칭 및 위치』란중 “구룡포초등학교구남분교장병설유치원, 구룡포동부초등학교병설유치원, 기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신광초등학교비학분교장병설유치원, 죽장초등학교죽북분교장병설유치원,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병설유치원, 어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영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자천초등학교상송분교장병설유치원, 화달초등학교병설유치원, 중동초등학교신동분교장병설유치원, 함창초등학교영동분교장병설유치원, 안평초등학교중률분교장병설유치원, 입암초등학교청일분교장병설유치원, 용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관하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우곡초등학교도진분교장병설유치원, 백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감천초등학교덕울분교장병설유치원, 화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각각 삭제하고, “양

학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대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대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16-2

“구미사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천생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천생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구미시 구평동 431-2

“안평초등학교병설유치원”란 다음에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병설유치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271

『명칭』란중 “영북초등학교화남분교장병설유치원”을 “영천중앙초등학교화남분교장병설유치원”으로, “속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단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석적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612”를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612-1”로, “장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칠곡군 석적면 중리 119”를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5”로, “대교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위치』란중 “칠곡군 석적면 남울리 산 18-1”을 “칠곡군 석적읍 남울리 산 18-1”로 한다.

[별표 2] 초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 란중 “대보초등학교대동배분 교장, 신광초등학교비학분교장, 양북초등학교용동분교장, 어모초등학교, 선산초등학교봉천분교장, 평은초등학교용혈분교장, 장수초등학교성곡분교장, 영북초등학교, 자천초등학교상송분교장, 화달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신동분교장, 함창초등학교영동분교장, 안평초등학교중률분교장, 입암초등학교청일분교장, 용산초등학교, 관하초등학교, 화남초등학교, 죽변초등학교화성분교장”란을 각각 삭제하고, “이동초등학교”란 다음에 “대이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대이초등학교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16-2

“구미오산초등학교”란 다음에 “천생초등학교, 구미왕산초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명 칭	위 치
천생초등학교	구미시 구평동 431-2
구미왕산초등학교	구미시 임은동 207

『명칭』 란중 “영북초등학교화남분교장”을 “영천중앙초등학교화남분교장”으로, “속암초등학교”를 “단밀초등학교”로, “석적초등학교”의 『위치』 란중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612”를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612-1”로, “장곡초등학교”의 『위치』 란중 “칠곡군 석적면 중리 119”를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5”로, “대교초등학교”의

『위치』란중 “칠곡군 석적면 남울리 산 18-1”을 “칠곡군 석적읍 남울리 산 18-1”로 한다.

[별표 3] 중학교의 『명칭 및 위치』란중 “사벌중학교, 안평중학교 신평분교장, 유천중학교, 봉화여자중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선주중학교”란 다음에 “천생중학교, 오태중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천생중학교	구미시 구평동 474-2
오태중학교	구미시 오태동 613-2

“대흥중학교”의 『위치』란중 “포항시 북구 용흥 1동 산 91-2”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60-7”로, “장곡중학교”의 『위치』란중 “칠곡군 석적면 중리 150”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46”으로 한다.

[별표 4] 고등학교의 『명칭 및 위치』란중 “사벌고등학교, 봉화여자고등학교”란을 각각 삭제하고, “경북체육고등학교”란 다음에 “경산과학고등학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명 칭	위 치
경산과학고등학교	경산시 갑제동 440-6

『명칭』란중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를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유치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개
				설					
구룡포초등학교 구남분교장명실유치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46						
구룡포초등학교 명실유치원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 381-1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16-2
기부초등학교명실유치원			포항시 북구 기북면 용기리 115						삭
신광초등학교비학분교장 명실유치원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273						삭
죽장초등학교죽분교장 명실유치원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합덕리 276						삭
천북초등학교물천분교장 명실유치원			경주시 천북면 물천리 624						삭
어모초등학교명실유치원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619						삭
			신						친생초등학교명실유치원
영북초등학교명실유치원			영천시 녹전동 116						삭
자천초등학교상분교장 명실유치원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42						삭
영부초등학교화남분교장 명실유치원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1238						삭
화달초등학교명실유치원			상주시 사벌면 삼덕리 761						삭
중동초등학교신동분교장 명실유치원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886						삭
									친생초등학교명실유치원
									구미시 구평동 431-2
									삭
									삭
									영천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장명실유치원
									삭
									삭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유치원		【별표 1】 유치원		명		명		명	
명	칭	위	치	칭	칭	위	치	칭	치
합창초등학교영동분교장 병설유치원	상주시 함창읍 태봉리 300			삭				제	
속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181			단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안평초등학교중률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군 신평면 중률리 135			삭				제	
신	설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 병설유치원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 271				
임안초등학교청일분교장 병설유치원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521			삭				제	
용산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 375			삭				제	
관하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226-1			삭				제	
우곡초등학교도진분교장 병설유치원	고령군 우곡면 도진리 270			삭				제	
백산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고령군 쌍림면 백산리 163			삭				제	
석적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면 포남리 612			석적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포남1리 612-1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5	
장곡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면 중리 119			장곡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읍 중리 235				
대교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석적면 남울리 산 18-1			대교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칠곡군 남울리 산 18-1				
감천초등학교덕울분교장 병설유치원	예천군 감천면 덕울리 143			삭				제	
화남초등학교교병설유치원	예천군 유천면 중평리 18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위 치		
신	설				
대보초등학교대동배분교장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동배리 410	대이초등학교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16-2		
신광초등학교비학분교장	포항시 북구 신광면 만석리 273	삭	제		
양부초등학교용동분교장	경주시 양북면 용동리 1148-3	삭	제		
어모초등학교	김천시 어모면 동좌리 619	삭	제		
선산초등학교봉천분교장	구미시 선산읍 생곡리 767	삭	제		
신	설				
신	설	천생초등학교	구미시 구평동 431-2		
평은초등학교용혈분교장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474	구미왕산초등학교	구미시 임은동 207		
장수초등학교성곡분교장	영주시 장수면 성곡리 246-1	삭	제		
영부초등학교	영천시 녹전동 116	삭	제		
가천초등학교상송분교장	영천시 화북면 상송리 42	삭	제		
영부초등학교화남분교장	영천시 화남면 사천리 1238	영침중앙초등학교	화남분교장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초등학교		【별표 2】 초등학교			
명	칭	위	치	명	칭
	<u>화달초등학교</u>	상주시 사별면 삼덕리 761		삭	제
	<u>중동초등학교신동분교장</u>	상주시 중동면 신암리 886		삭	제
	<u>합창초등학교영동분교장</u>	상주시 합창읍 태봉리 300		삭	제
	<u>안평초등학교중물분교장</u>	의성군 신평면 중물리 135		삭	제
	<u>수암초등학교</u>	의성군 단밀면 수암리 181		단밀초등학교	-----
	<u>임암초등학교청일분교장</u>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521		삭	제
	<u>용산초등학교</u>	청도군 청도읍 무등리 375		삭	제
	<u>관하초등학교</u>	청도군 매전면 관하리 1226-1		삭	제
	<u>서적초등학교</u>	칠곡군 서적면 포남리 612		서적초등학교	칠곡군 서적읍 포남1리 612-1
	<u>장곡초등학교</u>	칠곡군 서적면 중리 119		장곡초등학교	칠곡군 서적읍 중리 235
	<u>대교초등학교</u>	칠곡군 서적면 남울리 산 18-1		대교초등학교	칠곡군 남울리 산 18-1
	<u>화남초등학교</u>	예천군 유천면 중평리 18		삭	제
	<u>죽변초등학교화성분교장</u>	울진군 죽변면 화성리 369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중학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th> <th style="width: 30%;">칭</th> <th style="width: 20%;">위</th> <th style="width: 30%;">치</th> </tr> </thead> <tbody> <tr> <td>대흥중학교</td> <td>포항시 북구 용흥 1동 산 91-2</td> <td></td> <td></td> </tr> <tr> <td>신</td> <td></td> <td>설</td> <td></td> </tr> <tr> <td>신</td> <td></td> <td>설</td> <td></td> </tr> <tr> <td>사벌중학교</td> <td>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24-1</td> <td></td> <td></td> </tr> <tr> <td>안평중학교신평분교장</td> <td>의성군 신평면 중틀리 550</td> <td></td> <td></td> </tr> <tr> <td>장곡중학교</td> <td>칠곡군 석적면 중리 150</td> <td></td> <td></td> </tr> <tr> <td>유천중학교</td> <td>예천군 유천면 가리 746</td> <td></td> <td></td> </tr> <tr> <td>봉화여자중학교</td> <td>봉화군 봉화읍 혜서2리 36</td> <td></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대흥중학교	포항시 북구 용흥 1동 산 91-2			신		설		신		설		사벌중학교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24-1			안평중학교신평분교장	의성군 신평면 중틀리 550			장곡중학교	칠곡군 석적면 중리 150			유천중학교	예천군 유천면 가리 746			봉화여자중학교	봉화군 봉화읍 혜서2리 36			<p>【별표 3】 중학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0%;">명</th> <th style="width: 30%;">칭</th> <th style="width: 20%;">위</th> <th style="width: 30%;">치</th> </tr> </thead> <tbody> <tr> <td>대흥중학교</td> <td>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60-7</td> <td></td> <td></td> </tr> <tr> <td>천생중학교</td> <td>구미시 구평동 474-2</td> <td></td> <td></td> </tr> <tr> <td>오태중학교</td> <td>구미시 오태동 613-2</td> <td></td> <td></td> </tr> <tr> <td>삭</td> <td></td> <td>제</td> <td></td> </tr> <tr> <td>삭</td> <td></td> <td>제</td> <td></td> </tr> <tr> <td>장곡중학교</td> <td>칠곡군 석적읍 중리 246</td> <td></td> <td></td> </tr> <tr> <td>삭</td> <td></td> <td>제</td> <td></td> </tr> <tr> <td>삭</td> <td></td> <td>제</td> <td></td> </tr> </tbody> </table>	명	칭	위	치	대흥중학교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60-7			천생중학교	구미시 구평동 474-2			오태중학교	구미시 오태동 613-2			삭		제		삭		제		장곡중학교	칠곡군 석적읍 중리 246			삭		제		삭		제	
명	칭	위	치																																																																						
대흥중학교	포항시 북구 용흥 1동 산 91-2																																																																								
신		설																																																																							
신		설																																																																							
사벌중학교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24-1																																																																								
안평중학교신평분교장	의성군 신평면 중틀리 550																																																																								
장곡중학교	칠곡군 석적면 중리 150																																																																								
유천중학교	예천군 유천면 가리 746																																																																								
봉화여자중학교	봉화군 봉화읍 혜서2리 36																																																																								
명	칭	위	치																																																																						
대흥중학교	포항시 북구 용흥동 산 60-7																																																																								
천생중학교	구미시 구평동 474-2																																																																								
오태중학교	구미시 오태동 613-2																																																																								
삭		제																																																																							
삭		제																																																																							
장곡중학교	칠곡군 석적읍 중리 246																																																																								
삭		제																																																																							
삭		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고등학교	【별표 4】 고등학교
명 칭	명 칭
인동생명과학고등학교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사벌고등학교	삭
신	삭
봉화여자고등학교	삭
위치	위 치
인동시 옥동 1202	-----
상주시 사벌면 엄암리 24-1	-----
설	제
봉화군 봉화읍 혜저2리 36	경산시 김계동 440-6

■ 예산안 : 4건

-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2007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정의결조서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계		41건	△ 25,174,600	
56	새 경 북 기 획 단	인재육성사례등해외연수	△ 20,000	
57		영어마을조성	△ 10,000,000	
58		낙동강프로젝트시범사업	△ 3,200,000	
75	기 획 조 정 본 부	대구경북연구원운영비	△ 900,000	
78		지역균형발전활동지원	△ 100,000	
163	경 제 과 학 진 흥 본 부	시외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 1,600,000	
1005	투 자 통 상 본 부	투자유치설명회 및 타깃기업조사유치활동	△ 100,000	
1014		경북투자펀드조성	△ 5,000,000	
481	환 경 해 양 산 립 국	기업살리기환경지원	△ 20,000	
486		초등학생낙동강생태탐방	△ 20,000	
488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확충	△ 250,000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513		각종산림문화행사	△ 10,000	
519		산림녹화숲개장행사	△ 20,000	
520		산림부산물생산지도	△ 30,000	
526		소나무재선충병긴급방제비	△ 100,000	
597		야생동물생태공원조성마무리공사	△ 50,000	
486	환경해양 산 립 국	포항죽도시장내화장실환경개선	△ 200,000	
289	보건복지 여 성 국	중증장애인가립지원센터운영	△ 142,000	
306		여성백일장	△ 10,000	
293		고령정책모니터링요원간담회비	△ 6,600	
301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경영평가	△ 7,000	
324		청소년교화사업	△ 30,000	
1065	문화체육 관 광 국	테마파크조성사업업무추진	△ 5,000	
1070		제88회전국체전참가및훈련비등지원	△ 669,000	
1091		관광안내통역자원봉사대운영지원	△ 50,000	
1052		의상화업사상연구지원	△ 15,000	
685	농수산국	농지관리위원업무연찬회	△ 15,000	
695		FTA대비과수대체작목개발시범단지조성	△ 320,000	
780		관리사신축(가축위생서부지소)	△ 100,000	
704		미곡종합처리장노후화시설현대화지원	△ 180,000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375	행정지원국	제5회전국자원봉사자경진대회	△ 50,000	
403		2급관사구입	△ 720,000	
355		종합연수원건립설계용역비	△ 950,000	
364		도민의 날행사	△ 20,000	
374	행정지원국	21세기새마을명장지도자육성	△ 5,000	
375		전국자원봉사관리자대회개최	△ 60,000	
895	농업기술원	소비자농촌웰빙시범사업	△ 100,000	
894		농촌여성신문보급우송료지원	△ 23,000	
896		아롱다롱오색쌀브랜드화시범	△ 12,000	
856		청사청소용역(8개동)	△ 15,000	
893		농촌여성농산물가공상품홍보박람회	△ 5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32건	1,798,900	
35	의회사무처	본회의장 내부보수 및 난방배관공사	100,000	
77	기획조정 본부	수도권규제완화대응부담금	100,000	
131	경제과학 진흥본부	채래시장마케팅투어체험단 차량임차	10,800	
146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지원	30,000	
1005	투자통상 본부	투자유치유공자시상	8,500	
1009		노조간부연수 지원	20,000	
1009		모범노조간부 및 근로자 산업시찰 지원	40,000	
1024		동북아자치연합사무국 운영비	80,000	
1059	문화체육 관광국	관광문화재사업 업무추진	5,000	
1072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지원	18,000	
1073		지방체육시설 확충보강	80,000	
1090		관광홍보설명회	100,000	
1053		원효학연구 지원	15,000	
678	농수산국	WTO/FTA관련 해외농업현지실태 조사	20,000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724	농수산국	TAC제도 한일협의회 지원	2,000	
724		해외어장개발비 지원	2,000	
696		새소득작목 육성	119,000	
488	환경해양 산 립 국	마을상수도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	500,000	
486		공중화장실개선	200,000	
584		생태숲소득근본원 관람 도우미	50,000	
239	보건복지 여 성 국	저출산관련교육 참석자 급식 및 실비보상	10,000	
306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창출	10,000	
289		정신지체장애인지원센터운영 (이양)	42,000	
296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지원	13,600	
286		정신지체인멘토링연계사업	20,000	
865	농업기술원	선진 첨단농업기술 연수	15,000	
897		사과초밀식재배 시범	75,000	
897		경북 최고과실생산시범단지 육성	45,000	
894	농업기술원	생활개선회 우수회원 해외연수	15,000	
195	공 무 원 교 육 원	OA사무실설치	43,000	
422	자연환경 연 수 원	연수원업무추진여비	10,000	
97	예 비 비	예비비	20,247,200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계	21건	3,128,500	
	의회사무처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22,500	
		본회의장 발언보조대 설치공사	72,000	
		본회의장 내부보수 및 난방배관공사 감리비	5,000	
	새경북기획단	영어마을 타당성조사용역	200,000	
	경제과학 진흥본부	운수종사자 및 공무원해외여비	30,000	
		영천 천문과학관 건립	200,000	
	투자통상본부	버스및택시근로자 수련대회 지원	12,000	
	보건복지 여성국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30,000	
	문화체육 관광국	청소년 교화사업	30,000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지원	200,000	
		각종 체육대회 등 지원	200,000	
		해외입양동포와 함께하는 문화 교류	130,000	
	농수산국	착유실 및 젖소우사 개축	230,000	
		우수농산물 포장재 지원	200,000	
		연안어선 저온저장 시설	180,000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42,000	
		약초산업지원	80,000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 기)	증 액	비 고
	행정지원국	2급관사 임차료	300,000	
	소방본부	경상북도의용소방대 연합회 지원	50,000	
		고가사다리차 구입(2대)	900,000	
	자연환경연수원	자연관찰지도교사 여비보상	15,000	

<부기조정>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 기)	예산액	비 고
계		2건	140,000	
611	환경해양 산 립 국	수목원 순찰차량(수목장림운영차량)	40,000	
694	농수산국	전국 우수농자재 시연평가회 지원 (전국 농업기계 전시회 지원)	100,000	

□□ 이외의 사항 수정내용 없음

2007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 □ 세입예산 : 수정내용 없음

□ □ 세출예산

○ 감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		당초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합계		5건	1,785,600	100,000	△1,685,600	
학교증개축 (729p)	401-02 (시설비)	다목적 강당	1,069,600	0	△1,069,600	
교육환경 개선등(822p)	308-03 (학교환경 개선사업)	시설관리서포터 즈제 운영비지원	200,000	0	△200,000	
교육환경 개선등(822p)	401-02 (시설비)	운동장정지 (경주디자인고)	356,000	100,000	△256,000	
(207P)		경주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사무실 집기구입	10,000	0	△10,000	
(46p)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 운영지원비	150,000	0	△150,000	

○ 증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조정내역			비고
세항	목		당초예산액	수정예산액	증감액	
예비비 (1493p)	801-02 예비비	예비비	5,000,000	6,685,600	1,685,600	

2006년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세입 :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총 계	1 건	3,000,000	
	건설도시방재국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000,000	

<세출 : 삭감>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감 액	비고
	총 계	3 건	800,000	
139	행정지원국	도 및 시군공무원 합동작업실 임차	250,000	
262	투자통상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사무실임차	200,000	
264	"	동북아 자치단체연합 홈페이지 보강사업	350,000	

<세출 : 증액>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총 계	1 건	800,000	
	기획조정본부	예비비	800,000	

<세출 : 부기신설>

(단위 : 천원)

쪽	소 관 부 서	내 용(부기)	증 액	비고
	총 계	1 건	3,000,000	
	건설도시방재국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3,000,000	

2006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상북도의회 의결내역)

<삭감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감 액	비 고
	총 계	7 건	6,265,000	
192	초등학교	학교장 사택구입(안강제일초외1)	100,000	
456	지역교육청	경주교육청 사택구입	130,000	
456	"	김천교육청 학교장 관사매입	395,000	
459	"	고령교육청 학무과장 관사매입	80,000	
474	교육지원기관	영어체험학습원건립 설계용역	360,000	
474	"	영어체험학습원 건립	5,000,000	
314	고등학교	학교장 사택구입(2교)	200,000	

<증액조서>

(단위 : 천원)

쪽	소관부서	내 용(부기)	증 액	비 고
	총 계	건	6,265,000	
		예비비	6,265,000	

■ 결의안 : 2건

-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지 결의안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정 축 구 결 의 안

의안 번호	51
----------	----

제안년월일 : 2006. 11. 13

제 안 자 : 통상문화위원장

1. 제안이유

- 경주는 신라 천년 고도로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가지정 불교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임.
 - 경주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자원화하여 세계적 역사 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함.
- ※ 광주는 지난 8월 29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2. 주요내용

- 경주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지역민들의 고통해소 및 지역 발전과 우수한 문화유산을 인프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

-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위해서도 광주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같이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

3. 건의내용 : 별 첨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정 축 구 결 의 안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고도로서 우리민족의 정체성이 깃들여 있고,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문화유산과 전국에서 국가지정 불교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살아 숨쉬는 노천 박물관으로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명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문화를 테마로 하는 『경주세계문화EXPO』를 개최하여 문화엑스포 종주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금년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앙코르-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06』을 개최하는 등 경주는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지역이다.

미래는 지역문화가 국가 경쟁력으로 경주는 역사문화도시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문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경주지역만이 간직한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는 것이 지역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며, 조상의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여 후대에 물려주는 것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개발제한으로 경주 지역민들이 받아오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경주경마장 건설 등 그동안 각종 정부 주도 사업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참여정부는 국정과제를 지역균형발전에 두고 지역만이 갖고 있는 문화를 개발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주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경주 역시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역사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자원화 하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러한 특별법은 경주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민의 여망으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각종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경주 지역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라.
1. 경주의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과 인프라의 우수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므로 정부 주도 문화 사업은 당연히 경주 역사도시 조성 사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자원화할 수 있는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22일 국회에 제출된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2006년 11월 13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 지 결 의 안

의안 번호	57
----------	----

제안년월일 : 2006. 12. 6
제 안 자 : 통상문화위원장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대하여 대구·경북 공동발전 및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대회의 적극 유치를 위한 지지 결의안을 채택코자 함.

2. 주요내용

-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유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
-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로 대회 유치로 인한 경북의 홍보, 관광 등 그 부가가치는 크게 증대될 것임.
-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구와 경북의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300만 도민과 더불어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를 적극 지지함.

3. 결의내용 : 별 첨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 유치 지 지 결 의 안

경상북도의회는 대구광역시와 250만 대구시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 중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를 전 도민과 더불어 적극 지지한다.

경북과 대구는 역사·문화적으로 한 뿌리이며, 특히 민선 4기 출범을 맞아 상생발전을 위한 시·도 경제통합이 지역사회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는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공동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대구광역시는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2003년 하계 U대회를 훌륭히 치러 낸 값진 경험과 세계적인 경기장 시설,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를 통한 검증된 국제대회 개최 능력 등 경쟁도시와 견주어 월등한 체육인프라와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 준비된 도시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1월 30일 여야대표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구유치 지원을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과 경주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격 합의한 것은 대구와 경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

이는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것으로

대구와 경북의 시·도민들은 크게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추진 중인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월드컵, 하계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이벤트로서 지구촌 45억명이 TV를 시청할 정도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으며, 대회 유치로 인한 우리 경북의 홍보, 관광 등 그 경제적 부가가치는 크게 증대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대구 유치가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구와 경북의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300만 도민과 더불어 대구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

2006년 12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승인 · 동의안 : 4건

-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승인의 건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승인건

- 하이브리드 소재의 고도화된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설계 기술을 개발하여, 부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형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부품산업 집적지로의 기반구축 및 기술경쟁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 경상북도 첨단산업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8조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설립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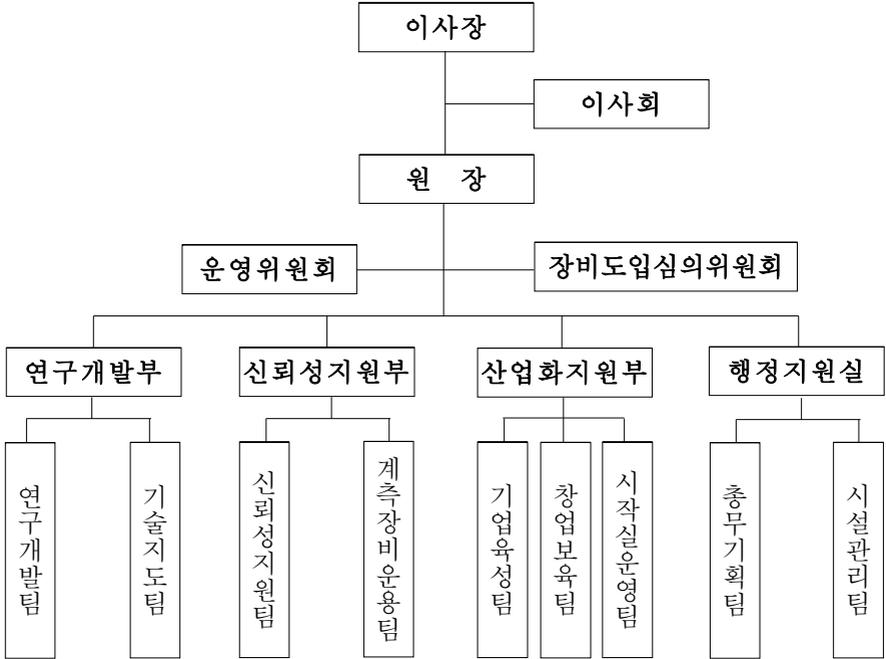
□ 의결사항

- 법인 명칭 : 재단법인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 법인소재지 : 경북 영천시 괴연동 36번지

- 설립자본금 : 2억원(도 1, 영천시 1)
- 임 원 : 14명(이사 12, 감사 2)
- 법인사업
 - 하이브리드 부품산업 관련 인프라구축 및 지원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 하이브리드 부품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보육지원사업
 - 정보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
 - 하이브리드 부품산업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경북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조직도

□ 조직도



□ 인 원

구 분	계	센터장	연구원	기능직	행정
인원(명)	16 (1)	1	8	4	3 (1)

() : 파견 공무원

□ 부서별 정원

구분 부서명	계	연구원			파견공무원	일반직		
		학사	석사	박사	5,6,7급	팀원	팀장	기능
총계	16 (1)		3	6	1 (1)	1	1	4
원 장	1			1				
연구개발부	4		1	3				
신뢰성지원부	4		1	1				2
산업화지원부	3		1	1				1
행정지원실	4 (1)				1 (1)	1	1	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 안 사 유

- 재정과 소관

 - 학교법인기능대학 한국폴리텍VI 구미대학 부지 매각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처분

 - 토 지 : 2필 32,068m² 중 16,034m²

4. 매각재산내용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건명	면적	추정액	비고
계	합계 토지 건물	16,034 16,034	4,710 4,710	
취득				
처분	토지	16,034	4,710	한국폴리텍VI 구미대학 부지 · 총계 : 32,068 · 한국산업단지공단 : 16,034 · 우리도 : 16,034 (무상임대중)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서

2006년도 관리계획 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계	토지			1	16,034	4,710	1	16,034	4,710		
		건물 기타										
득	계	토지			1	16,034	4,710	1	16,034	4,710		
		건물										
		기타										
분	계	1. 매입										
		2. 교환 으로 취득										
		3. 기타 취득										
		4. 매각			1	16,034	4,710	1	16,034	4,710		
분	계	5. 양여										
		6. 교환 으로 처분										

200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 액	매각 시기	매수희망자 성 명	비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구미시 공단동 112외 1	32,068	16,034	4,710	10월	학교법인 기능대학 한 국 폴리텍VI 구미대학	
1	대지	구미시 공단동 112 " 112-1	32,040 28	16,020 14	4,710	10월	학교법인 기능대학 한 국 폴리텍VI 구미대학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 안 사 유

○ 산림과 소관

- 국유지상 분수림 계약기간 만료시기 도래 및 산림청의 매도 요청에 의한 입목 매각
- 국유지상 분수림 입목매각에 따른 대체 취득으로써 산림소득 개발을 위한 연구포지 확대조성

○ 소방본부 소관

-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한 부지 매입·교환 및 청사 신축

○ 농업기술원 소관

- 대구경북 경제통합 공동추진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재활 전문 산재병원의 건립부지로 농업기술원 시험포장 일부 매각

2. 근 거 법 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1항

3. 주 요 골 자

- 재산의 취득
 - 토 지 : 4건 (439,141m²)
 - 건 물 : 3건 (4,622m²)

- 재산의 교환
 - 취 득
 - 토 지 : 1건 (4,470m²)
 - 처 분
 - 토 지 : 1건 (13,899m²)

- 재산의 처분
 - 토 지 : 1건 (33,058m²)
 - 기 타(입 목) : 1건 (300,097m²)

4. 재산의 취득·처분내용

(단위 : m², 천원)

구분	건명	면적	추정액	용도 및 필요성
취득	소계 토지 건물	443,763 439,141 4,622	10,706,600 4,506,600 6,200,000	
	영천소방서 이전신축 부지 매입	7,472	1,700,000	소방력 보강
	영천소방서 이전 건물 신축	3,300	4,600,000	"
	구미원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1,322	1,500,000	"
	구미원평119안전센터 이전 건물 신축	661	800,000	"
	울진죽변119안전센터 이전신축부지매입	1,653	200,000	"
	울진죽변119안전센터 이전 건물 신축	661	800,000	"
	산림소득개발원 연구 포지 조성	428,694	1,106,600	입목매각후 대체 취득
처분	분수림 입목 매각	300,097	4,113,466	국유지상 분수림 매각(계약기간만료)
	산재병원 건립부지 매각	33,058	4,231,504	대구경북 경제통합 공동추진과제

5. 재산의 교환내용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건명	구분	교환수량(m ²)	추정액	교환대 상자	용도 및 필요성
1	영천소방서 각 파출소 소유권 일원화	처분	토지 : 13,899	96,087	영천시	금호파출소 신녕파출소 화남대기소
		취득	토지 : 4,470	102,376		

[별지 제14호 서식]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07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 고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기타	4	14,917	3,502,376	1 3	428,694 4,622	1,106,600 6,200,000	5 3	443,611 4,622	4,608,976 6,200,000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3	10,447	3,400,000	1	428,694	1,106,600	4	439,141	4,506,600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4,470	102,376				1	4,470	102,376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4,622	6,200,000	3	4,622	6,200,000	
처 분	계	토지	2	46,957	4,327,591				2	46,957	4,327,591	
		건물 기타	1	300,097	4,113,466				1	300,097	4,113,466	
	4. 매각	토지	1	33,058	4,231,504				1	33,058	4,231,504	
		건물 기타	1	300,097	4,113,466				1	300,097	4,113,466	입찰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1	13,899	96,087				1	13,899	96,087	
사-용 및 대부허가												

2007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계 토지 건물			443,763 439,141 4,622	10,706,600 4,506,600 6,200,000			
1	대지	영천시 망정동 417-14외 2필지	7,472	1,700,000	2007. 3	영천소방서 이전 신축	부지 매입
2	건물	영천시 망정동 417-14 외 2필지	3,300	4,600,000	2008. 10	"	건물 신축
3	답	구미시 도량동 451-5	1,322	1,500,000	2007. 3	구미 원평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4	건물	구미시 도량동 451-5	661	800,000	2007. 12	"	건물 신축
5	전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381-6	1,653	200,000	2007. 12	울진죽변 119안전센터 이전신축	부지 매입
6	건물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381-6	661	800,000	2008. 2	"	건물 신축
7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43-1	19,141	34,071	2007 하반기	산림소득 개발원 연구포지 조성, 목 재 각 후 매대취득	부지 매입
8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49	26,975	48,016			
9	답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90	2,225	41,163			
10	답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91	744	13,764			
11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98-1	1,471	13,975			
12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99-1	248	2,356			
13	하천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203	155	1,473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14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5	89,484	159,282	2007 하반기	산림소득 개발원지 연구포성, 조입목, 후 매각 후 대체취득	부지 매입
15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81	2,777	4,943			
16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87-1	14,678	26,127			
17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90-1	4,463	7,944			
18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91-1	7,736	13,770			
19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92-2	7,835	13,946			
20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93-1	27,372	48,722			
21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93-2	3,669	6,531			
22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109-1	12,496	22,243			
23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6	397	707			
24	과수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2-2	109	2,017			
25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1	1,213	11,524			
26	답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5-2	2,652	49,062			
27	답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4-2	2,816	52,096			
28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2-3	2,564	24,358			
29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7-3	2,335	22,183			
30	과수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88	1,190	22,015			
31	천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93	182	1,729			
32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23	397	707			
33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03	555	5,273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비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34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73	45,600	81,168	2007 하반기	산림소득 개발원지 연구조성, 목 조입대 매각후 대체취득	부지 매입
35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110	795	7,553			
36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58	397	707			
37	임야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산59	496	883			
38	전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19	1,266	12,027			
39	전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20-5	1,236	11,742			
40	답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21	1,927	35,650			
41	답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22	1,243	22,996			
42	답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23	1,231	22,774			
43	답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324	446	8,251			
44	임야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산20-1	136,888	243,661			
45	임야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 산21	397	707			
46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26	440	4,180			
47	전	안동시 도산면 동부리 38	453	4,304			

2007년도 교환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교환대 상수량	추 정 가 액	교 환 기	교 환 사 유	교환 대상자	비 고				
	구분	지목	소재지	일단의 수량										
1	처분	과	영천시 청 통면 계지 리 927-15	6,679	6,679	13,224	2007 상반기	정부합 동감사 지적사 항 및 소유권 일원화 로 효 용가치 증대	영 천 시	금호 파출 소 신녕 파출 소 화남 대기 소				
		전	영천시 청 통면 계지 리 948-98	3,331	3,331	39,306								
		과	영천시 청 통면 계포 리 406-36	3,889	3,889	43,557								
		소계	토지 3필지	13,899	13,899	96,087								
	취득	대	영천시 금 호읍 오계 리 49	1,613	1,613	56,616								
		대	영천시 신 녕면 매양 리 424	1,535	1,535	24,253								
		대	영천시 화 남면 금호 리 1060-1	400	400	7,040								
		대	영천시 화 남면 금호 리 1061-1	121	121	2,372								
		대	영천시 화 남면 금호 리 1063-2	801	801	12,095								
		소계	토지 5필지	4,470	4,470	102,376								
	계	토지	처분 취득	3 필지	13,899	13,899					96,087 102,376			
		건물	취득	5 필지	4,470	4,470								
		카타	취득											

2007년도 매각대상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대 상수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각 시기	매각사유	매 수 희망자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1	답	대구 북구 학정동 533	21,957	16,509	2,080,134	'07.3	산재병원 건립부지 매각	노동부			
2	"	대구 북구 학정동 545	22,009	16,549	2,151,370						
3	입목	문경·동로·석항리 산44-1	30,730	30,730	427,919	'07. 02	계약기간 만료시기 도래 및 산림청의 매도요청	산림청			
4	"	문경·동로·석항리 산7-1	7,873	7,873	109,631						
5	"	문경·동로·석항리 산7-2	9,829	9,829	136,874						
6	"	문경·동로·석항리 산7-3	85	85	1,176						
7	"	문경·동로·명전리 산29-1	117,337	117,337	1,633,915						
8	"	문경·동로·산29-2	118,309	118,309	1,647,456						
9	"	문경·동로·산29-3	54	54	757						
10	"	문경·동로·산29-85	537	537	7,479						
11	"	영덕·달산·용전리 산22-1	9,523	9,523	112,252						
12	"	영덕·달산·봉산리 산38	203	203	2,388						
13	"	영덕·달산·봉산리 산38-2	13	13	150						
14	"	영덕·달산·봉산리 산48	1,264	1,264	14,901						
15	"	영덕·달산·봉산리 산50	3,946	3,946	46,519						
16	"	영덕·달산·봉산리 산60	17,139	17,139	202,030						
17	"	영덕·달산·봉산리 산60-2	982	982	11,571						
18	"	영덕·달산·덕산리 산61	1,621	1,621	19,104						
19	"	영덕·달산·덕산리 산64	61	61	723						
20	"	영덕·달산·덕산리 산68-1	1,139	1,139	13,427						
21	"	영덕·달산·주흥리 산29	6,426	6,426	75,749						
계	토지		43,966	33,058	4,231,504						
	기 타 (입목)	합 계	327,071	327,071	4,464,021						
		산림청 귀속(차감)	26,974	26,974	350,555						
		도 세입액	300,097	300,097	4,113,466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6년 12월 15일

2007년도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2000년 이전 보급된 노후 컴퓨터 교체
- e-러닝을 통한 교육기회 확충
- 학교현장의 e-러닝 인프라 개선

II.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Ⅲ. 지방채 발행 계획

- 사 업 명 : 학교 노후 컴퓨터 교체
- 발행계획 : 25,888백만원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연리 5.5%, 변동금리)
- 상환부담
 - 원금 : 우리도교육청 · 이자 : 교육인적자원부
- 차입시기 : 2007년도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시기 적의 조정

※. 학교급별 컴퓨터 보유 현황

(단위 : 대)

구분	구입 연도							
	'00년 이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현재	계
초등학교	15,117	10,108	7,441	4,625	2,561	1,531	1,796	43,179
중 학교	10,115	2,529	1,805	5,335	1,819	442	551	22,596
고등학교	5,903	5,220	4,180	5,817	1,357	1,856	1,552	25,885
특수학교	221	71	189	119	22	162	117	901
계	31,356	17,928	13,615	15,896	5,759	3,991	4,016	92,561

※. 2007년도 교체 대상 노후 컴퓨터 현황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용도별 PC 수량					소요 예산액
	학생 실습용	교원 업무용	교단 선진화용	행정 업무용	계	
초등학교	7,353	4,839			12,192	12,192
중 학교	6,186	1,571	1,339		9,096	9,096
고등학교	958	1,878	1,446	118	4,400	4,400
특수학교	32	118	40	10	200	200
합 계	14,529	8,406	2,825	128	25,888	25,888

※. PC 단가 : 1백만원

■ 기타안 : 2건

-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안 번호	50
----------	----

제출일자 : 2006. 11.
제 출 자 : 경상북도지사

1. 보 고 사 유

-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기적으로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의 제약성을 보완하고 장기예측적·미래지향적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연동화계획에 의거 수정·보완하여 수립한 「2006~2010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본 안을 제출함

2. 주 요 내 용

- 계획기간 : 2006~2010년(5년간)
- 계획대상 :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 계획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투자사업 범위 :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단위사업
- 계획의 주요내용
 - 연도별 재정전망분석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연도별, 분야별, 자원별 투자계획 수립
 -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3. 계획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4. 세부계획내용 : 별도책자



2006~201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요약)



1.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계획수립의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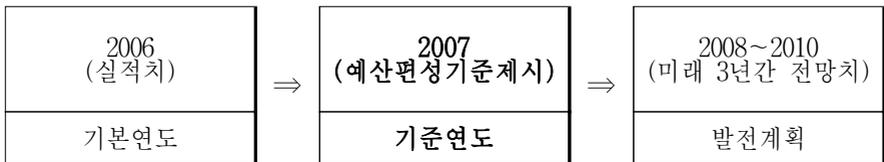
- 지방재정법 제33조(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5조(예산안의 첨부서류) 11호

계획수립의 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투자사업의 기준제시
-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지향적 행·재정지표 제공으로 지역 미래 발전상 제시

계획범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획기간 : 2006~2010년(5년간)



투자사업 범위 :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세부사업

계획의 주요내용

- 연도별 재정전망분석 및 투자가용재원 판단
-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 수립
-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강구 등

2. 지방재정여건과 도정역점시책

지방재정의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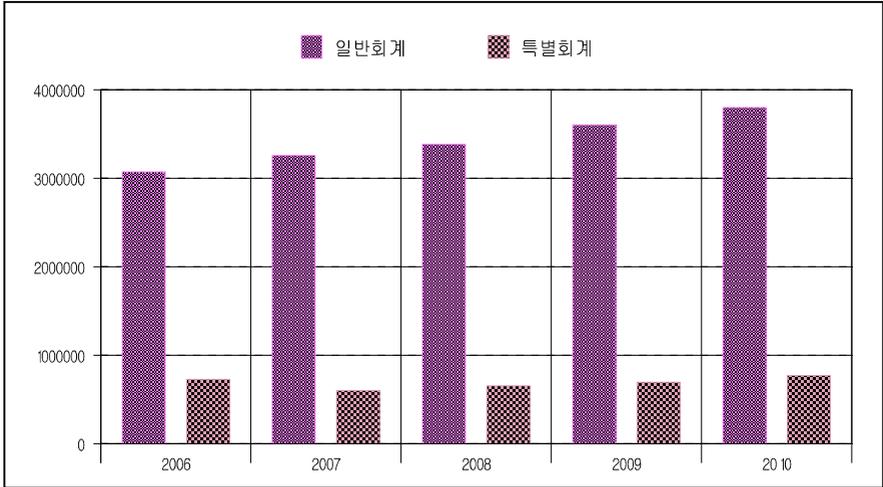
- 지방재정 기반취약·지역경기침체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한계
-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다양한 지역개발수요 충당 미흡
- 한정된 지방재원의 합리적 균형배분 애로
- 지방자치시대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요청

도정역점시책

-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살리기
-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적극 전개
- 미래 성장동력산업 중점 육성
- 살맛나는 부자 농촌, 다시 찾는 환경농촌 건설
-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 경북 만들기
- 문화가 꽃피는 감성 경북 실현
- SOC 지속적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3. 재정규모 전망

□ 총규모 : 20조 5,67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 장 율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05,673	38,025	38,577	40,396	42,960	45,715	4.7%
일반 회계	171,145	30,739	32,571	33,831	36,020	37,984	5.4%
특별 회계	34,528	7,286	6,006	6,565	6,940	7,731	2.2%

※ 계획기간 중 일반 및 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20조 5,673억원으로 연평균 신장율이 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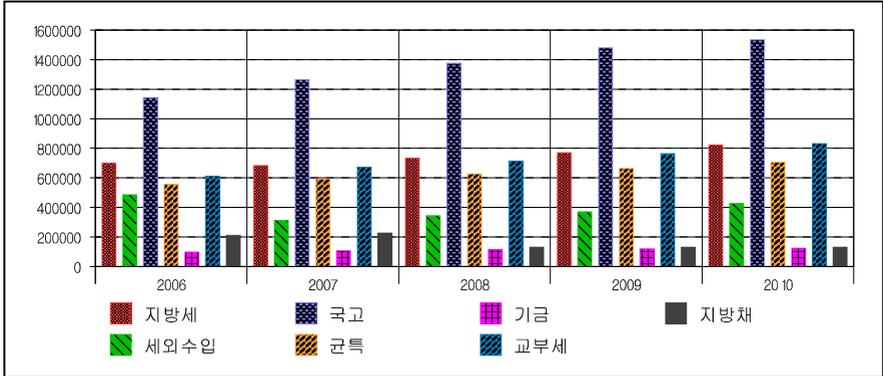
4. 세입 전망

□ 세입 총규모 : 20조 5,67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 균 신 장 율
	계	구성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20,567,301	100%	3,802,480	3,857,721	4,039,563	4,296,052	4,571,485	4.7%
지방세	3,708,056	18.0	698,000	684,378	733,690	770,170	821,818	4.2%
세 외 수입	1,937,417	9.4	484,987	311,781	343,359	370,307	426,983	-0.6%
국 고 보조금	6,800,588	33.1	1,143,793	1,264,949	1,377,177	1,479,953	1,534,716	7.7%
균 특 보조금	3,144,304	15.3	557,700	591,162	626,632	664,230	704,580	6.0%
기 금	559,885	2.7	96,672	107,000	115,271	118,457	122,485	6.1%
지 방 교부세	3,590,651	17.5	610,328	673,051	713,434	762,935	830,903	8.0%
지방채	826,400	4.0	211,000	225,400	130,000	130,000	130,000	-8.9%

- 계획기간중 지방세수입은 전체 세입의 18%인 3조 7,080억원으로서 연평균 4.2% 신장 전망(주택거래세 인하(취득세 0.5%, 등록세 1.0%)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세수전망을 나타냄)
- 세외수입은 세원이 취약하고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월금 감소로 인하여 전체 세외수입 규모 감소
-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68.6%로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나타냄.



5. 경상지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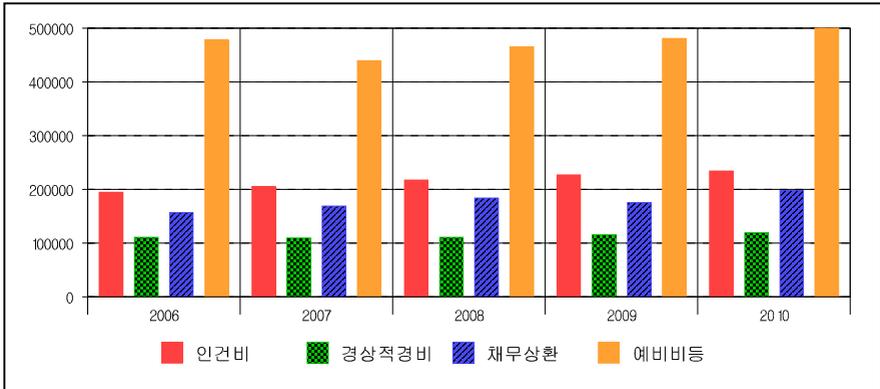
□ 총규모 : 4조 8,963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균 신장율
	계	구성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896,298	100%	940,787	923,155	977,622	998,423	1,056,311	3.0%
경상예산	1,643,881	36.6	305,461	314,625	328,126	342,539	353,130	3.7%
인건비	1,078,292	22.0	194,688	205,165	217,325	227,078	234,036	4.7%
경상적경비	555,589	11.6	110,773	109,460	110,801	115,461	119,094	1.9%
채무상환	883,109	18.0	157,034	169,167	184,129	175,395	197,384	6.1%
예비등	2,369,308	48.4	478,292	439,363	465,367	480,489	505,797	1.6%

○ 경상지출 규모는 4조 8,963억원으로서 재정규모 신장율 5.4%보다 낮은 연평균 3.0% 정도 신장 예상

- 인건비는 4.7%, 경상적경비는 1.9%로 다소 낮은 신장 예상
- 채무상환 경비는 일반회계 1,682억원과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 공채상환금) 7,149억원으로 연도별 실제상환액으로 반영
- 예비비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각각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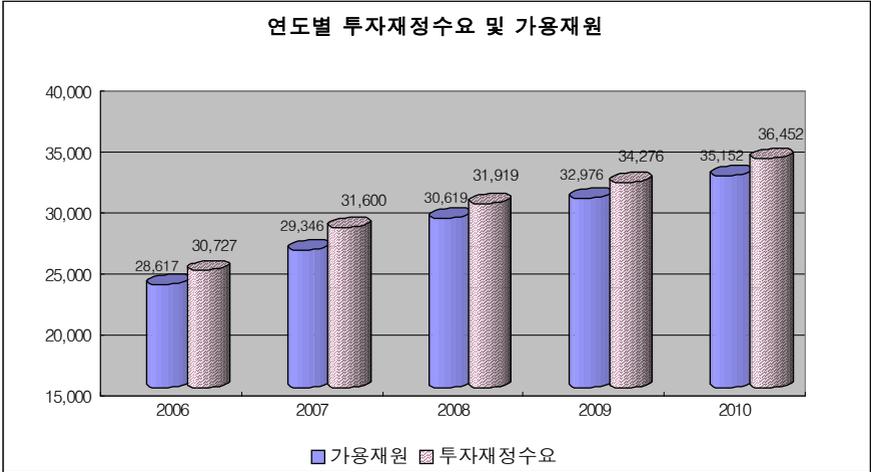
6. 투자가용재원 전망

□ 가용재원 규모 : 15조 6,710억원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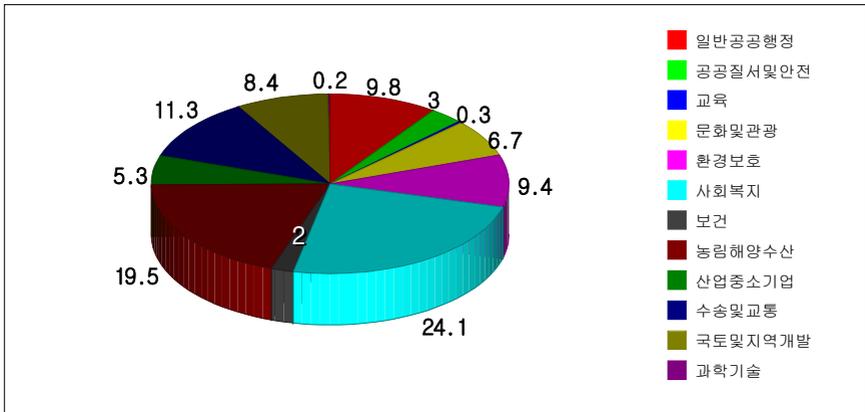
구 분	중 기 계 획 기 간						평균 신장율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세입 전망(A)	20,567,301	3,802,480	3,857,721	4,039,563	4,296,052	4,571,485	4.7%
경상지출전망(B)	4,896,298	940,787	923,155	977,622	998,423	1,056,311	3.0%
가용재원 (A-B)	15,671,003	2,861,693	2,934,566	3,061,941	3,297,629	3,515,174	5.3%
투자재정수요(D)	16,497,403	3,072,693	3,159,966	3,191,941	3,427,629	3,645,174	4.4%
부족재원 (D-C)	826,400	211,000	225,400	130,000	130,000	130,000	-8.9%

- 계획기간중 투자재정수요는 16조 4,973억원이나 가용재원은 투자재정수요 보다 적은 15조 6,710억원으로서 부족재원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지방채발행 등으로 충당할 계획임.



7.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

□ 투자사업비 총규모 : 16조 4,974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구성비	중 기 계 획 기 간						평균 신장율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100%	16,497,403	3,072,693	3,159,966	3,191,941	3,427,629	3,645,174	4.4%
일공 반 공 행 정	9.8	1,597,890	439,491	280,400	274,985	289,751	313,263	-6.5
공공 질서 및 안전	3.0	486,033	85,103	105,222	113,004	112,931	69,773	-1.8
교 육	0.3	56,390	2,827	12,792	13,395	13,429	13,947	90.3
문 화 및 관 광	6.7	1,098,288	172,227	232,274	217,047	225,599	251,141	10.9
환 경 보 호	9.4	1,556,495	327,985	297,360	262,289	334,064	334,797	1.6
사 회 복 지	24.1	4,006,658	677,741	685,888	766,160	892,648	984,221	10.1
보 건	2.0	338,907	56,944	54,930	86,657	74,510	65,866	7.2
농 립 해 양 수 산	19.5	3,220,664	516,012	601,117	609,848	694,950	798,737	11.7
산 업 · 중 소 기 업	5.3	869,129	206,385	205,013	128,608	158,916	170,207	-1.8
수 송 및 교 통	11.3	1,848,235	322,335	365,767	441,427	358,172	360,534	4.4
국 토 및 지 역 개 발	8.4	1,385,714	259,443	312,503	271,821	265,959	275,988	2.3
과 학 기 술	0.2	33,000	6,200	6,700	6,700	6,700	6,700	2.0

○ 투자사업 총 규모는 16조 4,974억원으로 연평균 4.4%의 신장이 전망되며 분야별 구성비는 사회복지 24.1, 농림해양수산 19.5%, 수송 및 교통 11.3% 등으로 나타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총괄

1. 감사기간 : 2006. 11. 14 ~ 11. 23 (10일간)
2. 대상실시기관 : 75개 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 54, 도교육청 21)
 - ※ 사업장 현지확인 5개소
3. 감사결과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의·촉구 사 항
합 계		215	90	125
의회운영	의회사무처	6	2	4
기획경제	소 계	34	13	21
	공보관실	2	1	1
	새경북기획단	2	1	1
	기획조정본부	6	3	3
	경제과학진흥본부	13	5	8
	공무원교육원	8	3	5
	경북개발공사	3		3
행정 보건복지	소 계	46	13	33
	감 사 관 실	4		4
	보건복지여성국	8	3	5
	행정지원국	9	3	6
	경도대학	4	2	2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의·촉구 사 항
행 정 보건복지	자연환경연수원	4	1	3
	포항의료원	7	2	5
	김천의료원	6	1	5
	안동의료원	4	1	3
농 수 산	소 계	21	9	12
	농수산국	8	4	4
	농업기술원	4	1	3
	축산기술연구소	2	1	1
	가축위생시험소 서부지소	1	1	
	수산자원개발연구소	2	1	1
	성주과채류시험장	2	1	1
	농산물원종장	1		1
	상주 감시험장	1		1
교육환경	소 계	24	12	12
	환경해양산림국	9	5	4
	보건환경연구원	2		2
	도교육청 (직속기관포함)	9	5	5
	지역교육청(공통)	4	2	2

감사위원회	부 서 별	계	시정처리 요 구	건의·촉구 사 항
통상문화	소 계	56	25	31
	투자통상본부	14	7	7
	문화체육관광국	12	6	6
	경북통상(주)	7	1	6
	경북신용보증재단	5	1	4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8	5	3
	한국국학진흥원	10	5	5
건설소방	소 계	28	16	12
	건설도시방재국	9	6	3
	종합건설사업소	7	4	3
	소방본부및소방서	12	6	6

의정활동보고서

(제211회 정례회)



2007. 1 인쇄 / 2007. 2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955-9185



<비매품>